

목 차

요약	13
I. 연구개요	29
1. 연구목적	29
2. 연구방법	30
II. '07년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일반현황	35
1.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참여현황	35
2. 노인일자리사업 담당인력 현황	40
3. 사업량 조정방식 및 사업관련 협의구조	47
4. 지자체 노인일자리 기타 지원	50
5. 민간기관 외부지원 활용 및 모집인, 지자체 지원	51
III. '07년 노인일자리사업 일반현황	57
1.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일반현황	57
2. 지자체 주요업무 수행주체	60
3. 사업 운영 역사	62
4. 참여자 모집 및 선정 현황	63
5. 사업운영상 애로사항	71
6. 사업 효과성	75
7. 비예산기간 사업지속 노력	76
IV. '07년 노인일자리사업 유형별 현황	89
1. 공익형 사업 현황	89
2. 교육형 사업 현황	95
3. 복지형 사업 현황	108
4. 시장형 사업 현황	121
5. 인력파견형 사업 현황	130
V. 기타 실무자 견해	141
1. 노인일자리사업 필요성	141
2. 사업량 증감 희망여부	142
3. 노인일자리사업 수행 시 지역적 장단점	146
4. 개선 및 지원 요구사항	151

Ⅵ. 정책 건의 사항	157
1. 유형별 노인일자리사업 정책 건의사항	157
2. 노인일자리사업 수행환경 개선	159
3. 노년기 노동의 가치발견을 통한 노인일자리사업의 성과 제시	162
4. 노인일자리사업 중장기 전략 마련	163
부록 1. 노인일자리사업 유형별 실태조사 설문지(지자체용)	167
부록 2. 노인일자리사업 유형별 실태조사 설문지(민간 수행기관용)	187

표 목 차

〈표 1-1〉 노인일자리사업 유형별 실태조사 조사대상 기관 및 응답기관 현황	31
〈표 1-2〉 노인일자리사업 유형별 실태조사 문항 구성	32
〈표 2-1〉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광역 분포	35
〈표 2-2〉 지역규모별 수행기관 분포	36
〈표 2-3〉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수행기관 현황	36
〈표 2-4〉 지역규모별 수행기관 참여 현황	37
〈표 2-5〉 민간수행기관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년 수	38
〈표 2-6〉 민간수행기관별 노인일자리사업 평균 참여년 수	39
〈표 2-7〉 년도별 기관 참여현황	39
〈표 2-8〉 기관유형별 참여중단기관 현황	39
〈표 2-9〉 기초지자체별 수행기관 수	40
〈표 2-10〉 민간 수행기관 내 노인일자리사업 담당직원 수	41
〈표 2-11〉 민간수행기관 내 노인일자리사업 전담직원 유무	42
〈표 2-12〉 수행기관별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전담인력 유무	43
〈표 2-13〉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전담인력 수에 따른 사업량(민간 수행기관)	43
〈표 2-14〉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전담인력유무별 사업량 비교	44
〈표 2-15〉 노인일자리사업 업무비중	44
〈표 2-16〉 노인일자리사업 담당자 종사개월 수	46

〈표 2-17〉 민간 수행기관별 노인일자리사업 담당자 평균 종사개월 수	46
〈표 2-18〉 2007년 노인일자리사업 사업량 결정방식	47
〈표 2-19〉 민간 수행기관 노인일자리사업 사업량 조정결과 만족도	48
〈표 2-20〉 지역 내 협의구조 유무	49
〈표 2-21〉 협의구조 개최 방식	49
〈표 2-22〉 2007년 협의구조 개최건수(8월말 기준)	50
〈표 2-23〉 노인일자리사업 별도예산 추가 투입 여부	50
〈표 2-24〉 노인일자리 관련 별도사업 수행여부	50
〈표 2-25〉 외부자원 활용 기관	51
〈표 2-26〉 외부자원 활용 지원사업 및 지원처	51
〈표 2-27〉 모법인 지원 항목	52
〈표 2-28〉 모법인 지원 항목 수	52
〈표 2-29〉 수행기관별 모법인 지원 여부	53
〈표 2-30〉 지자체 지원 항목	53
〈표 2-31〉 지자체 지원 항목 수	54
〈표 3-1〉 2007년 전국 노인일자리사업 참여현황	57
〈표 3-2〉 2007년 노인일자리사업 유형별 실태조사 응답기관 참여현황	58
〈표 3-3〉 수행기관별 사업 참여자 비율	59
〈표 3-4〉 지역규모별 사업 참여자 수	60
〈표 3-5〉 주요업무 수행주체	61
〈표 3-5〉 주요업무 수행주체(계속)	61
〈표 3-6〉 사업단 운영 년차(조정 후)	62
〈표 3-7〉 중단사업 현황(2004~2005)	63
〈표 3-8〉 미달사업 사업유형별 분포	64
〈표 3-9〉 사업유형별 사업 목표량 미달 사유	64
〈표 3-10〉 2007년 신규사업 참여자 모집 경쟁률	65
〈표 3-11〉 2007년 신규사업 유형별 참여자 모집 경쟁률	66
〈표 3-12〉 2007년 신규사업 참여자 모집 경쟁률 급간	66
〈표 3-13〉 참여자 공개모집 방식	67
〈표 3-14〉 참여자 모집방식 가지 수	68

〈표 3-15〉 사업유형별 참여자 선정기준 1순위(전체사업)	69
〈표 3-16〉 사업유형별 참여자 선정기준 2순위(전체사업)	70
〈표 3-17〉 경제수준 파악방식 가지 수	70
〈표 3-18〉 경제수준 파악방식	71
〈표 3-19〉 유형별 사업운영상 애로사항 1순위	72
〈표 3-20〉 유형별 사업운영상 애로사항 2순위	73
〈표 3-21〉 노인일자리사업 효과성 인식	75
〈표 3-22〉 사업 유형별 노인일자리사업 효과성 인식	76
〈표 3-23〉 2006년 사업 연장운영 여부	76
〈표 3-24〉 2006년 사업유형별 사업연장 사업단수	77
〈표 3-25〉 2006년 유형별 평균 연장개월 수	77
〈표 3-26〉 2006년 사업 연장 방식	78
〈표 3-27〉 2006년 수행기관별 사업연장 사업단 수	79
〈표 3-28〉 2006년 예산기간 대비 비예산기간 참여자 비율	79
〈표 3-29〉 유형별 2007년 사업 연장운영 계획	80
〈표 3-30〉 2007년 사업 연장 방식	81
〈표 3-31〉 2007년 비예산기간 자원봉사 현황	82
〈표 3-32〉 2007년 유형별 평균 운영개월 수	83
〈표 3-33〉 시장형 사업 년차별 운영개월 수	84
〈표 3-34〉 2007년 유형별 운영개월 수	84
〈표 3-35〉 2007년 유형별 평균 참여기간	85
〈표 3-36〉 8개월 이상 운영 사업단 지속 참여자 비율(목표량 대비)	85
〈표 4-1〉 공익형 사업 대분류	90
〈표 4-2〉 환경개선 사업 세부분류	90
〈표 4-3〉 복합운영 사업 구성	90
〈표 4-4〉 교통질서 확립사업 세부분류	90
〈표 4-5〉 수행기관별 공익형 대표사업 비교	91
〈표 4-6〉 공익형 대표사업별 사업 관리방식	92
〈표 4-7〉 지역규모별 사업 관리방식 가지 수	93
〈표 4-8〉 수행기관별 사업 관리방식 가지 수	93

〈표 4-9〉 공익형 사업 건의사항	95
〈표 4-10〉 교육형 주요사업	96
〈표 4-11〉 교육강사사업 교육대상 분류	96
〈표 4-12〉 해설사 사업 세부 분류	96
〈표 4-13〉 지역규모별 교육형 주요사업	97
〈표 4-14〉 지역규모별 교육강사 대상	97
〈표 4-15〉 수행기관별 교육형 사업내용	98
〈표 4-16〉 타 유형 업무내용 포함 여부	98
〈표 4-17〉 지역규모별 타 유형 업무내용 포함 여부	99
〈표 4-18〉 타 유형 업무 내용	99
〈표 4-19〉 지역규모별 수요처 종류	100
〈표 4-20〉 교육강사 사업 총 수요처 수	102
〈표 4-21〉 지역규모별 교육강사 사업 평균 수요처 수	102
〈표 4-22〉 수요처 강사료 지급 추진 사항(8월말 기준)	103
〈표 4-23〉 사업 년차별 수요처 강사료 지급 추진 사항	104
〈표 4-24〉 지역규모별 수요처 강사료 지급 추진 사항	104
〈표 4-25〉 수행기관별 수요처 강사료 지급 추진 사항	105
〈표 4-26〉 강사료 지급 수요처 개수	105
〈표 4-27〉 해설사 운영방식	106
〈표 4-28〉 지역규모별 해설사 운영방식	106
〈표 4-29〉 전문해설사업 유료화 지급 추진 사항	107
〈표 4-30〉 교육형 사업 건의사항	108
〈표 4-31〉 노인일자리 복지형 주요사업	109
〈표 4-32〉 노인복지지원 세부분류	109
〈표 4-33〉 재가 노노케어 사업구성	110
〈표 4-34〉 재가 노노케어 주요 제공 서비스 내용	111
〈표 4-35〉 수혜자(기관) 발굴 방식	112
〈표 4-36〉 사업운영방식	113
〈표 4-37〉 재가 노노케어 참여자 1인당 평균 수혜자 수 급간	114
〈표 4-38〉 재가 노노케어 참여자 1인당 평균 수혜자 수	115
〈표 4-39〉 노인일자리 복지형 사업 수혜자 실인원(2007년 8월말 기준)	115

〈표 4-40〉 노인일자리 복지형 사업 수혜기관 수	115
〈표 4-41〉 재가 노노케어 수혜자 구성	115
〈표 4-42〉 기초 수급자 비율	116
〈표 4-43〉 서비스 중복 여부 확인	116
〈표 4-44〉 타 서비스 이용자 수혜대상 선정 여부	116
〈표 4-45〉 노노케어 의미	117
〈표 4-46〉 주거환경개선 사업 주력 서비스	117
〈표 4-47〉 주거환경개선사업 외부재원 활용 여부	118
〈표 4-48〉 주거환경개선사업 재료비 외부재원 확보처	118
〈표 4-49〉 이동 수단	119
〈표 4-50〉 타 유형 업무내용 포함 여부	120
〈표 4-51〉 타 유형 업무 내용	120
〈표 4-52〉 복지형 사업 건의사항	121
〈표 4-53〉 시장형 사업 주요 업종 분류	122
〈표 4-54〉 지역규모별 업종분류	123
〈표 4-55〉 사업단별 평균 참여자 수	124
〈표 4-56〉 업종별 1인당 월평균 매출	125
〈표 4-57〉 1인당 월평균 매출 급간	125
〈표 4-58〉 년차별 1인당 월평균 매출	126
〈표 4-59〉 지역규모별 1인당 월평균 매출	126
〈표 4-60〉 업종별 월평균 급여(사업단 기준)	127
〈표 4-61〉 시장형 사업 업종별 운영개월 수(사업단 기준)	127
〈표 4-62〉 시장형 사업 업종별 참여개월 수(참여자 기준)	128
〈표 4-63〉 시장형 사업 업종별 월평균 급여(참여자 기준)	128
〈표 4-64〉 업종별 총사업비 지출비율	129
〈표 4-65〉 광역별 인력파견형 참여현황	131
〈표 4-66〉 지역규모별 참여현황	132
〈표 4-67〉 수행기관별 참여현황	132
〈표 4-68〉 인력파견형 사업 분류별 참여현황	133
〈표 4-69〉 인력파견형 사업 운영방식	134
〈표 4-70〉 사후관리 여부	134

〈표 4-71〉 사후관리 방식	134
〈표 4-72〉 인력파견형 평균 참여개월 수	135
〈표 4-73〉 인력파견형 참여개월 수	135
〈표 4-74〉 인력파견형 고용(파견)유지 여부(2007년 취업시점~2007년 12월말)	136
〈표 4-75〉 고용(파견)유지자 평균 참여개월 수	136
〈표 4-76〉 고용유지 참여자 참여개월 수	136
〈표 4-77〉 인력파견형 월평균 급여	137
〈표 4-78〉 인력파견형 급간별 월평균 급여	137
〈표 4-79〉 종합일반직 급간별 월평균 급여	137
〈표 4-80〉 단독특수직 업종별 월평균 급여	138
〈표 4-81〉 지역규모별 월평균 급여	138
〈표 5-1〉 노인일자리사업 필요성 인식	141
〈표 5-2〉 2008년 사업량 증감 희망여부	143
〈표 5-3〉 지역규모별 적정 사업량	144
〈표 5-4〉 수행기관별 적정 사업량	144
〈표 5-5〉 응답별 적정 사업량	145
〈표 5-6〉 노인일자리사업 수행 시 지역적 장점(지자체 응답)	147
〈표 5-7〉 노인일자리사업 수행 시 지역적 장점(민간 수행기관 응답)	148
〈표 5-8〉 노인일자리사업 수행 시 지역적 단점(지자체 응답)	149
〈표 5-9〉 노인일자리사업 수행 시 지역적 단점(민간 수행기관 응답)	150
〈표 5-10〉 노인일자리사업 개선 요구사항(지자체)	151
〈표 5-11〉 노인일자리사업 교육 우선순위(지자체)	152
〈표 5-12〉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교육 요구사항(지자체)	152
〈표 5-13〉 노인일자리사업 교육 우선순위(민간 수행기관)	153
〈표 5-14〉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교육 요구사항(민간 수행기관)	153

요약





요 약

1. 연구개요

1) 연구목적

- 현재 노인일자리사업 전반의 운영현황 및 실태 파악, 유형별 현안 총정리를 통한 향후 사업추진 방향 구상 기초자료 확보
- 노인일자리사업의 현 위치를 파악하여, 본 사업의 근본적인 한계와 기회 요인들을 명확히 인식하고, 노인의 인적자원 활용과 일자리 제공이라는 큰 틀에서 본 사업의 중장기 추진방향 재정비

2) 연구방법

- 현장조사
 - 설문조사표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하여 2007년 5월~2007년 6월까지 총 35개 기관을 대상으로 현장조사 실시
 - 사업유형별, 기관유형별, 지역별 기본 쟁점사항을 확인하고 사업운영상의 장애요인 분석 및 개선방안 등을 조사

- 개발원 전산자료 및 실적보고 자료(2004년~2007년) 분석
 - 년도별 변화 추이, 사업단별 운영기간 및 급여수준 등을 파악하기 위해 개발원 내부 전산자료와 실적보고 자료 활용
 - 단 2004년~2006년 자료는 시도별로 제출된 실적보고 자료를 중심으로 분석
- '07년 노인일자리사업 유형별 실태조사 분석
 - 2007년 8월말 현재, 노인일자리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총 963개 민간 수행기관 및 기초지자체의 노인일자리사업 담당자 대상 조사 실시
 - 미제출 기관 및 부실 응답기관을 제외한 863개 기관(약 89.6%)의 응답 내용 분석

2. '07년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일반현황

- 2007년 8월말 기준, 전국적으로 총 914개 수행기관이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고, 전체 참여기관 중 지자체가 20.6%, 대한노인회 18.6%, 노인복지관 14.4%, 종합사회복지관 및 장애인복지관 13.0%, 노인복지센터 12.6%, 시니어클럽이 5.4%를 차지하고 있음.
-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의 사업 참여경력은 평균 약 2.3년으로, 사업량이 대폭 확대된 2006년 이후 신규로 참여한 기관의 비중이 높으며, 지자체를 제외한 4년차 이상 기관은 약 23.3%에 이룸.
- 노인일자리사업 담당 인력은 시니어클럽과 같은 노인일자리관련 전문 조직을 제외하면 대부분 타업무를 겸직하는 실무자 1인이 담당하고 있으며, 전담 직원을 두고 있는 기관은 약 21.0%인 것으로 나타남. 한편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전담인력은 약 34%가 지원받고 있고, 유형을 불문하고 총 사업량에 따라 우선 배정하고 있어 주요 사업수행기관인 지자체와 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의 지원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노인일자리사업이 차지하는 업무 비중은 지자체가 17.9%, 노인복지관 17.4%, 종합사회복지관 13.9%, 시니어클럽 72.1%, 대한노인회 42.9%로 나타나, 노인일자리 이외의 별도의 고유업무를 갖고 있는 기관은 20% 미만으로 나타남.
- 노인일자리사업 담당자 평균 종사기간은 민간 수행기관 응답자가 약 16.9개월로 지자체의 9.8개월 보다 대략 2배 정도 높게 나타나는데, 지자체 담당자의 경우, 3개월 미만자가 23.4%에 달하고 2년 이상자는 7.5%에 불과해 업무의 연속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수행기관별로는 사업초기부터 일자리사업에 참여해왔던 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 노인복지관 등의 종사개월 수가 타 기관에 비해 높게 나타남.
- 2007년 사업량 결정 및 조정방식에 대해 지자체와 수행기관 응답내용 모두에서 수행기관이 원하는 사업량을 제출한 후에 조정한다는 방식이 54.0%, 52.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조정결과에 대한 수행기관의 만족도도 평균 3.61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사업량에 대한 불만은 예상보다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지자체를 대상으로 노인일자리사업을 위한 별도의 예산을 추가로 투입하였거나 또는 추경계획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약 23.8%가 '있다'고 응답하였고, 노인일자리사업 이외에 노인에게 인건비 또는 실비 등을 제공하는 별도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가에 대해 38.8%가 '있다'고 응답함.
- 민간수행기관 중 모법인의 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은 33.6%, 219개 기관, 지자체로부터 지원을 받은 기관은 32%, 208개 기관으로 수행기관별로는 시니어클럽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음. 한편 전체 민간수행기관 중 51개 기관, 7.8%가 외부 자원 활용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대부분은 로또공익기금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재료비 지원으로 나타남.
- 소속 지역 내에서 지자체,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및 관련 기관들과의 지역협의체를 갖추고 있는가에 대해 약 13% 정도는 지역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중이라 응답함. 그러나 지자체와 수행기관들의 응답이 일치하는 지역은 실제 유의미한 응답은 40개 지역, 18%에 불과하여 해석에 유의할 필요 있으나, 지역협의체 구조는 아니더라도 간담회와 같은 최소한의 논의구조를 통해 지역 내 노인일자리사업 관련 현안을 다루고 있는 지자체는 약 60% 정도인 것으로 유추할 수 있음.

3. '07년 노인일자리사업 일반현황

- 2007년 8월말 현재, 전국적으로 기초지자체 포함 914개 수행기관에서 2,472개 사업 참여현황 분석결과, 공익형 사업량이 약 50%, 복지형이 약 28%로 전체 사업량의 약 78%가 공익복지형에 집중된 반면 교육형, 자립지원형은 각각 11%~12%에 머물고 있음. 수행기관별로는 지자체와 대한노인회가 공익형을, 노인복지관이 교육형 사업과 복지형 사업을, 시니어클럽은 교육형 사업과 자립지원형 사업을 다수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지자체가 직접사업 수행기관인 경우, 시군구 단위는 사업계획과 급여지급 및 전산입력을, 직접적인 사업운영은 대체로 읍면동이 담당하는 가운데 사업 자체가 특정 시설을 기점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활동처에서 사업을 관리하고 있음.
- 사업단의 운영 년차수 분석 결과, 4년차 이상 사업은 19.5%에 불과한 반면, 2007년 신규사업은 34.4%, 2년차는 33.2%로, 사업목표량이 큰 폭으로 올랐던 2006년과 2007년의 신규기관 참여 및 신규사업 수행에 따른 결과로 보임. 또한 과거 운영되었다가 중단된 사업은 총 525개로, 사업단의 명칭 변경 및 고유사업으로의 전환 등을 고려하면 실제 중단사업 수치는 이보다 낮을 것으로 추정됨.
- 사업목표량 대비 8월말 현재 사업 참여자수가 목표량 대비 80%미만인 184개 사업을 대상으로 목표량 미달 사유를 분석한 결과, 적합 참여자

미발굴 및 신청자 부족, 수요처 및 수혜자 미발굴 등이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유형별로는 시장형이 전체 미달사업의 28.8%, 인력 파견형이 26.1%로 자립지원형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복지형도 20%로 비교적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음.

- 참여자 모집경쟁률의 경우, 2:1 이상의 사업은 12.4%에 불과하고, 1:1에서 1.5:1 사이가 65%로, 전반적인 경쟁률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8월말 기준으로 모집정원 수가 채워지지 않은 사업은 약 8.7%인 것으로 나타남. 선착순 마감의 모집방식, 기관 이용자 중심의 참여자 모집, 사업 유형과 노인 욕구 및 능력의 불일치도 원인일 수 있음. 한편 참여자 모집 방식으로는 지역소식지 및 구정신문과 노인관련 기관 공문을 통한 모집 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연령과 건강을 제외한 참여자 선정기준 분석결과, 공익형의 경우, 선정 1순위는 경제수준이 63.5%로 압도적 우위를 보이고 있고, 2순위로는 신규참여자가 37.1%로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고, 복지형 또한 경제수준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 자원봉사 경력이 20.1%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교육형의 선정기준 1순위는 자격증 유무가 40.3%, 기존 참여자가 27.3%, 시장형 1순위로는 기존 참여자 우선이 38.5%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한편 경제수준 파악 방식으로는 신청자 면담과 신청서상 기재내용이 각각 70.3%, 55.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사업운영상 애로사항 분석결과, 전반적으로 적정참여자 발굴과 참여자 관리, 수요처 및 판로의 확보·관리, 교통문제 등이 주요 애로사항인 것으로 나타남. 공익형의 경우 참여자 선정과 아이템 개발, 참여자 관리가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고 교육형의 경우, 적정 참여자의 발굴과 수요처의 확보 및 관리가 높게 나타나고 있음. 복지형 사업은 수혜자 발굴 및 관리와 적정 참여자발굴, 참여자 관리 문제및 교통문제가 주요 애로사항으로 나타났고 시장형 사업의 경우 판로의 확보 및 관리와 적정 참여자 발굴, 사업비 부족 및 아이템 개발로 나타났으며, 인력파견형 사업의 장애요인은 절대적으로 수요처의 확보 및 관리로 나타남.

- 인력파견형을 제외한 2년차 이상 사업, 총 1,333개 사업을 대상으로, 비예산기간의 사업지속여부 분석결과, 약 32%가 비예산기간에 사업을 연장 운영했다고 응답함. 유형별로는 시장형이 54.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교육형이 46.7%, 복지형이 29.5%로 나타났음. 사업 연장 개월 수를 살펴보면, 시장형 사업이 약 4개월, 교육형과 복지형이 약 3개월로 나타났는데, 시장형 사업의 기본 개월 수를 5개월로 설정한 점을 고려하면, 실제 전체 운영개월 수는 교육복지형이 더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2006년 사업연장 방식으로는 공익형 사업은 지자체의 별도예산 지원이 55.2%로 가장 높고, 교육형은 자원봉사가 67.6%로 가장 높고, 수요처의 급여 지급은 30.9%로 나타남. 복지형 사업은 자원봉사가 84.0%로 가장 높고, 수요처로부터의 급여지급도 6.9%정도 차지하고 있음. 시장형은 사업매출을 통한 임금지급이 85.8%로 가장 높고, 예산 기간동안의 적립금 활용을 통한 기간 연장도 22.5%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남.
- 2007년 사업운영 계획에 대해 본 비예산기간동안 사업을 연장 운영할 계획이 있는 사업은 49.3%로, 유형별로는 시장형이 76.8%, 교육형이 62.0%, 복지형이 55.6%로, 공익형을 제외한 모든 유형에서 현재 운영중인 사업단의 50% 이상이 연장운영의 계획이 있다고 응답함. 연장계획이 있는 사업단의 60.9%가 별도의 예산 조달이 수반되지 않는 무급 자원봉사를 연장방식으로 활용할 계획이라 응답하였는데, 특히 교육형과 복지형에서 각각 74.0%, 87.4%의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음.
- 조사표상의 응답과는 별개로, 인력파견형을 제외한 2,135개 사업단의 실제 2007년 한해 운영된 사업개월 수를 산출해 본 결과, 평균적으로 약 8개월 간 사업이 운영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년초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 운영이라기보다는 잔여예산의 활용 등으로 사업이 연장된 경우가 다수인 것으로 보임. 시장형 사업은 평균 8.3 개월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공익형 사업단은 평균 7.6개월, 교육형과 복지형 사업은 약 8개월로 나타나고 있는데, 전산에서 파악되지 않는 수요처의 임금 지급이나 자원 봉사를 통한 사업운영까지 포함시킬 경우, 비공식적인 사업운영개월 수는 훨씬 높아질 것으로 추측됨.

4. '07년 노인일자리사업 유형별 현황

1) 공익형

- 공익형 사업의 주요사업으로는 환경개선사업이 전체 사업의 52.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교통질서확립 사업이 15.3%, 공공기관 및 시설관리사업과 복지 및 보육시설 관리지원 사업 13.5% 순으로 나타남. 사업관리 방식으로는 참여자 활동일지 점검 및 팀장제 활용, 현장방문 등, 실무자의 업무부담이 비교적 낮은 방식이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음.
- 공익형 사업 건의사항으로는 부대경비 증액이 1순위로, 높은 산재보험료로 인한 부대경비 부족이 가장 큰 원인으로 나타났고, 저소득 노인 참여에 따라 인건비 증액 및 사업기간 연장 또한 각각 13.3%, 12.5%의 높은 비율을 보임. 또한 공익형 사업의 비교적 높은 경쟁률로 인해 일자리 수의 확대 및 참여자 선발의 합리적 기준 마련 등도 12.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2) 교육형

- 교육형 주요사업으로는 교육 강사 사업이 전체 사업의 72.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해설사 사업이 20.2%를 차지하고 있음. 교육강사 사업의 교육대상자 분석 결과, 아동 및 청소년만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전체 사업단의 32.9%,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단은 22.4%로 나타났으며, 이 두 계층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단은 39.9%로 나타남.
- 지역규모별로는 농어촌 지역에서 교육강사사업이 85.9%로, 전문해설사 사업은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을 차지하며, 교육대상으로는 노인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교육 서비스 이외의 타 유형 업무를 포함하여 실시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약 10.4%가 환경관리, 기타 업무지원 등의 타 유형의 업무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교육강사 사업의 수요처 분석 결과, 전체 사업단의 53.5%가 어린이집을 수요처로 확보하고 있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뒤를 이어 복지기관이 51.3%로 나타나고 있음. 2007년 8월말 기준, 무응답사업 및 미제출 사업단 58개를 포함한 전국 노인일자리사업 350여개 교육강사 사업단의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수요처는 대략 7,000여개에 이를 것으로 예측됨.
- 교육강사 사업 강사료 지급 추진 사항 분석 결과, 약 70%는 수요처로부터 강사료 지급 요청을 추진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예산기간 동안에도 지속적으로 강사료를 지급받고 있는 사업은 9.3%, 비예산기간에 지급하기로 한 수요처는 7.3%로, 전체 교육강사 사업의 16.6%가 강사료 지급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전문 해설사 운영 방식으로는 수요처 의뢰접수로 수요가 확보되는 경우 해설 제공이 31.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활동 장소측과 협약 후 해설제공이 26.5%, 별도의 협약이나 수요처 확보 없이 활동장소에 대기 후 해설을 제공하는 경우는 16.9%이며, 수요처로부터 강사료를 지급받는 사업단은 약 10%정도인 것으로 나타남.
- 교육형 건의사항으로는 참여자 교육체계의 확충 및 지원이 31.5%로 가장 높게 나타나는데, 교육비 지원 사항까지 포함시킬 경우, 약 40%가 참여자의 교육관련 지원을 요청하고 있고, 사업기간 연장 및 기간의 탄력적 운영이 그 뒤를 이어 15.3%로 나타남.

3) 복지형

- 복지형 주요사업 분류 결과, 전체 사업 중 재가 노노케어가 53.5%, 시설 노노케어가 9%로 약 60%가 노노케어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고, 참여자 기준으로는 약 74%가 노노케어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노인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11.5%, 기타 노인복지지원사업이 7.7%로 약 80%가 주로 노인을 대상으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음.

- 재가 노노케어사업에서 일반 노노케어가 88.3%, 단순안전지킴이가 11.7%를 차지하고 있고, 일반 노노케어사업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가사지원과 정서지원이 90% 이상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위생 지원과 행정업무 및 병원 동행 등이 주요 제공 서비스인 것으로 나타났고, 치료지원과 같은 전문적인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단은 9% 정도인 것으로 나타남.
- 사업의 수혜자(기관) 발굴방식 및 사업관리 방식으로, 한 가지 방법보다 여러 가지 방법을 활용하고 있는 가운데, 대표적으로 재가 노노케어 사업의 수혜자 발굴은 기관 내 타 부서의 협조와 읍면동의 협조 방식이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이고 있고, 지역민 추천과 참여자의 직접 발굴도 40% 이상의 적지 않은 사업단에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사업관리 방식으로는 참여자 활동일지와 월례회의 및 간담회 활용 방식이 각각 92.4%, 77.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수혜자 전화 및 방문도 71.1%의 높은 빈도를 보이고 있음.
- 한편 일반 노노케어 사업 참여자 1인이 담당하는 평균 수혜자(실인원) 수는 약 1.4명으로 2007년 8월말 기준, 조사에 응답한 392개 재가 노노케어 사업의 총 수혜자는 35,179명이며, 무응답 사업 및 미제출 기관을 포함하면, 전국적으로 대략 40,000여명이 노인일자리사업의 재가 노노케어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 일반 재가 노노케어 사업단의 수혜자 구성은 기초수급자 비율이 평균 68.1%로 가장 높고, 기초 수급자 100%로만 이루어진 사업단도 16.6%로 노인일자리사업 복지형 사업단의 수혜자 대부분은 타 기관 또는 타 사업의 케어 서비스를 중복으로 제공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수혜자 선정방식 관련하여 응답자의 약 90%가 중복여부를 확인한다고 응답하였는데, 다수의 응답자는 추가적 서비스의 제공의 필요한 경우, 노인일자리사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응답함.
- 주거환경개선사업 내용으로는 도배장판 교체가 43.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형광등이나 방충망 교체처럼 단순 작업도 약 28.7%정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업단의 약 64.3%는 재료비를 부대경비 이외의 다른 재원을 통해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복지형 사업의 약 8.3%가 타 유형의 업무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교통안전지원사업이나 기타로 분류된 사업 중 일부는 사업 내용 자체가 복지관련 서비스와 거리가 있는 사업단들로, 이 모두를 포함하면, 약 14% 정도가 타 유형의 업무가 포함된 사업으로 볼 수 있음. 실제 시설로 파견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필요에 의해 시설 내 환경관리 업무도 함께 병행하는 경우, 또는 재가 서비스 중 가사지원을 하면서 재가 환경관리를 지원하는 경우 등 서비스 내용 중 부수적으로 환경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경우가 포함되어 있음.
- 복지형 사업 건의사항으로는 부대경비 증액 및 사용 유연화가 16.8%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재료비 부족에 인한 것으로 보이며, 그 뒤를 이어 사업기간 연장은 15.9%로, 참여자 교육지원 11.5%, 참여자 이동문제 개선 10.3%로 나타남.

4) 시장형

- 참여자 기준으로 영농사업이 22.7%, 공동작업장이 21.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음식조리 및 판매사업과 인력파견식 서비스업도 각각 약 10%의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시장형 사업단의 평균 운영개월수는 약 8개월, 참여자의 평균 참여개월수는 약 6개월, 월평균 급여는 약 17만원으로 나타났고, 세차/세탁/청소업 및 인력파견식 서비스업을 제외하면 매출과 무관하게 급여차이나 참여개월 수 모두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음.

5) 인력파견형

- 지역규모별로는 대도시 지역 참여자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고, 농어촌 지역은 전체 참여자의 4.9%로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수행기관별로는 노인복지관과 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 등의 주요 사업 참여기관이 절대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음.

- 단일 업종으로는 개발원을 중심으로 특화되어 운영되고 있는 주유원과 시험감독관 사업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참여자규모로는 시험감독관이 32.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종합일반직은 전체 인력파견형 사업의 50%를 차지하고 있음.
- 인력파견형 사업운영 방식과 관련하여, 67%는 단일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나머지의 33%는 복합적인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기관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약 45%인 반면, 일반 용역업체와 연계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도 29%로 나타남. 한편 사후관리 실시여부와 관련하여 전체 사업단의 92.9%는 취업 및 파견 후, 사후관리를 실시하며 대체로 수요처 방문이나 전화, 참여자 전화 등의 방식이 모두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함.
- 인력파견형 사업 참여자(취업자)의 2007년 한해 평균 참여개월 수는 약 3.8개월로, 3개월 미만자가 39.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3개월 ~ 6개월이 33.8%, 6개월 이상자는 17.7%로 나타남.
- 2007년 한해 월평균 급여 수준 분석 결과, 전 참여자의 월평균 급여는 약 37만원으로 나타났으나, 단독 특수직의 단일업종 월평균 급여는, 경비원이 약 81만원, 주유원이 80만원으로 나타났고, 1회성 파견업종인 시험감독관과 주례사 등은 7만원~10만원선 인 것으로 나타남.

5. 기타 실무자 견해

- 노인일자리사업 필요성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분석한 결과, 5점 만점에 지자체는 평균 3.89, 민간 수행기관은 평균 4.33으로, 지자체는 응답기관의 71.8%가, 민간 수행기관은 90.2%가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08년도 노인일자리사업 사업량의 증감 희망 여부에 대해, 전체 사업단의 약 63.5%는 현재 사업량을 적정수준이라 응답하여 대체로 현재 사업량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21.3%는 사업량 증가를, 10.7%는 사업량 축소를, 그리고 사업중단을 원하는 사업단도 4.5%인 것으로 나타남. 유형별로는 공익형과 복지형이 사업량 증가를 희망하는 비율이 높은 반면, 시장형과 인력파견형이 사업량 축소 및 중단희망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실무자가 제시한 걱정 희망 사업량에 대한 분석결과 공익형은 평균 89.3명, 교육형은 28.4명, 복지형 37.5명, 시장형은 20.2명, 인력파견형은 32.1명으로, 지역규모별 편차가 크게 나타나는 유형은 교육형과 인력파견형으로 각각 10명에서 20명 사이 정도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 노인일자리사업 수행 시 소속 지역이 갖는 장점에 대해 지역규모의 차이를 불문하고 노인들의 높은 참여욕구(일자리 수요가 많음)가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대도시와 중소도시는 주로 사업 인프라 및 지역자원의 풍부함과 교통의 편리함을 장점이라 응답한 반면, 농어촌 지역은 공원, 휴양지 관리 등 공익형 사업 운영이 가능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거나(지자체), 지역 공동체성이 높다는 점(민간 수행기관) 등으로 나타남. 한편 노인일자리사업 수행 시 소속 지역이 갖는 애로사항에 대해 지역규모를 불문하고 대체로 자립지원형의 운영 어려움과 다수 노인 인구층의 능력 열약과 이동거리(교통 불편) 문제 등이 높게 나타남.
- 지자체를 대상으로 노인일자리사업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 질문한 결과, 지역실정에 맞는 탄력적 사업운영이 19.4%로 가장 높고, 사업의 내실화도 14.0%의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노인일자리사업 교육관련 문항에 대해, 지자체는 노인의 인적자원 개발 교육을, 민간기관은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교육이라 응답함.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교육관련 구체적인 지원요구사항에 있어서는 지자체와 민간 수행기관 모두에서 교육내용의 기획(커리큘럼 구성)과 외부 전문강사의 섭외를 우선순위로 꼽았고, 지역별 통합교육체계 마련도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6. 정책 건의사항

1) 유형별 노인일자리사업 정책 건의사항

- 공익형은 관리와 참여자 교육 강화를 통해 사업의 차별성을 확보하고, 신규 프로그램 개발을 유도하여 전국적으로 확대·보급할 필요 있음.
- 교육형은 수요처 강사로 지급 문제를 인성교육 측면에서 노인 교사 활용이 갖는 효과성 검증과 함께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 있으며, 지역통합교육체계 등을 통해 기본교육 이외의 전문교육 또한 지원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함.
- 복지형은 중복서비스 제공 방지를 위해 지역사회 내의 통합적 서비스제공 체계 내에 편입하여 운영하는 방안 검토 필요. 동시에 동년배에 의한 정서적 지지에 대한 가치 측정을 통해 노노케어 사업의 효과성 검증 작업이 필요.
- 시장형은 노동강도가 높은 공동창업방식보다는 인력파견식 사업 위주로 통합,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인력파견형은 현재 개발원의 방침대로 중앙 단위의 수요처 개발을 통해 현장에 보급하는 방식이 적합함.

2) 노인일자리사업 수행환경의 개선

- 인프라 문제는 중앙차원에서 효과적인 표준 아이템 발굴과 보급, 실무자의 교육 및 기관 간 교류 확대를 통해 기관 간 편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과 함께 ‘전문복지기관’의 참여확대와 신규확충 노력 등이 병행되어야 할 것임.
- 농어촌 지역을 위해서는 공익복지형 확대와 자립지원형의 축소가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며, 농촌지역사회문제 해결을 중심으로 하는 아이템 개발 노력이 필요함.

- 관리 및 평가시스템은 일자리사업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를 통해 최소한의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 실무자 및 참여자를 위한 교육체계가 보다 강화되어야 하며, 참여자 모집·선정의 공정성 및 합리성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함.

3) 노년기 노동의 가치 발견을 통한 노인일자리사업의 성과 제시

- 노년기 ‘일’에 대한 새로운 가치 정립을 통해 여타 사회적일자리와는 다른 노인일자리사업의 의미와 성과를 제시함으로써 사업을 활성화시킬 필요 있으며, 노년기 노동의 의미와 가치, 효과 등에 대한 연구와 다각적 홍보 노력이 필요함

4) 노인일자리사업 중장기 전략 마련

- 환경분석에 따른 세부적인 노인일자리사업의 단기, 중장기 전략 마련이 요구되며, 그 객관적 근거와 효율적 추진방안 제시를 위해서는 조사연구 기능이 강화 될 필요 있음.

I . 연구개요





I

연구개요

1. 연구목적

- 노인일자리사업은 2004년 25,000자리 목표를 시작으로 지속적인 양적 성장을 거듭하여, 2007년 현재, 전국적으로 약 900여개 기관에서 총 11만 자리를 목표로 다양한 성격의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음.
- 본 사업은 저학력에서 고학력까지, 생계유지에서 사회참여까지, 매우 다양한 인적 특성과 욕구를 지닌 노인집단 전체를 대상으로 함에 따라, 그에 맞는 다양한 유형과 업종들이 개발·운영되어 왔고, 매년 목표치의 상향 조정에 따라 지역 내 다양한 인프라가 사업수행기관으로 참여하는 특징을 갖고 있음.
- 그 간의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는 급여와 참여기간 등에 있어서 참여노인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지역사회 측면에서 기여도가 떨어지는 사업들이 일부 있으나, 무엇보다 건강증진 효과를 비롯, 참여노인들의 전반적인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고, 이와 더불어 참여노인들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수혜자와 지역사회의 만족도 또한 높은 효과적인 아이টে이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것임.
- 사업시행 4년차를 맞이하는 상황에서, 양적성장에 부응하는 질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노인일자리사업의 현 위치를 파악하여, 본 사업의 근본적인 한계와 기회요인들을 명확히 인식하고, 노인의 인적자원 활용과 일자리 제공이라는 큰 틀에서 본 사업의 중장기 추진방향을 재정비하는 것임.
-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 노인일자리사업 전반의 운영현황 및 실태를 파악, 유형별 현안들을 총 정리하여 향후 사업추진 방향을 구상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고자 함.



II. 연구방법

- 본 연구는 현장조사를 토대로 개발원 내부 전산자료와 「'07년 노인일자리사업 유형별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기술되었음.

① 현장조사

설문조사표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2007년 5월~2007년 6월까지 총 35개 기관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함. 지역별로 서울, 경기, 인천 권역의 17개 기관 및 강원, 전남 권역의 10개 기관, 대구, 경북 권역의 5개 기관 등이며, 수행기관별로 광역지자체 및 기초지자체 9개 기관, 노인복지관 및 시니어클럽 각 6개 기관, 노인복지센터 4개 기관,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 3개 기관 등임. 담당 실무자 면담, 사업장 방문 및 참여노인 면담을 통하여 사업유형별, 기관유형별, 지역별 기본 쟁점사항을 확인하고 사업운영상의 장애요인 분석 및 개선방안 등을 조사함.

② 개발원 전산자료 및 실적보고 자료(2004년~2007년)

년도별 변화 추이, 사업단별 운영기간 및 급여수준 등을 파악하기 위해 개발원 내부 전산자료와 실적보고 자료를 활용함. 단, 2006년 도입된 전산시스템은 2007년 들어 안정화됨에 따라 2004년~2006년 자료는 시도별로 제출된 실적보고 자료를 중심으로 분석함.

③ '07년 노인일자리사업 유형별 실태조사

「'07년 노인일자리사업 유형별 실태조사」는 2007년 8월말 현재, 노인일자리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총 963개 민간 수행기관 및 기초지자체의 노인일자리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되었고¹⁾, 미제출 기관 및 부실 응답기관을 제외한 863개 기관(약 89.6%)의 응답내용을 분석함<표 1-1>.

1) 노인일자리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참여자 모집 및 교육, 근무관리 등의 실질적인 업무를 지자체가 직접 수행하는 '직접사업수행' 지자체와 직접 사업을 수행하지 않고, 민간 기관에 모두 위탁하여 실시하는 '직접사업 미수행' 지자체로 분류하며, 본 조사대상에는 직접사업 미수행 49개 지자체가 포함되어 있음.

〈표 1-1〉 노인일자리사업 유형별 실태조사 조사대상 기관 및 응답기관 현황

		조사대상 기관 수	응답기관 수	응답률(%)
지자체	직접사업 수행	188	160	85.1
	직접사업 미수행	49	46	93.9
	계	237	206	86.9
민간 수행기관		726	657	90.5
전체		963	863	89.6

* 지자체의 직접사업수행 여부는 전산상의 입력주체를 기준으로 하며, 일부 문항은 행정구 단위로 분석함.

* 조사에 응답한 민간 기관 중에서 6개 기관은 기관관련 문항을 제외한 사업관련 문항에만 응답하여, 기관현황 분석에서는 651개가 전체 응답 기관임

- 사업관련 문항의 경우, 27개 시장형 초기투자 시범사업²⁾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였고, 2007년 8월 현재 실제로 사업이 운영되고 있거나, 사업 종료된 총 2,471개 사업단(프로그램)을 조사대상으로 함³⁾.

- 조사표는 기관일반현황 및 사업관련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일부 문항은 지자체와 민간수행기관에 별도 적용되며, 시장형 사업은 2006년 조사가 실시된 관계로 본 조사에서는 생략함〈표 1-2〉.

○ 한편 담당 실무자의 사업에 대한 인식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 평균적인 수치를 통해 일반적인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문항과 질문에 대한 정확한 이해 부족으로 잘못 응답된 문항들에 대해서는 전화 재조사 및 전산자료 대조를 통해 수정하되, 일부 문항은 분석에서 제외함.

2) '시장형 초기투자 시범사업'은 자립형사업단 확산을 위하여 시장형 사업의 초기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7년부터 운영됨. 수익성과 일자리 창출 효과가 뛰어나다고 예측되는 신규사업 및 추가설비 확충으로 일자리 또는 수익이 현저히 증가될 것이라 예측되는 기존사업을 지원함. 조사기간 당시 운영 초기단계였기 때문에 조사대상에서 제외함.

3) 사업의 운영여부 판단기준은 인력파견형 이외 사업단의 경우 참여자의 인건비 지급 여부를 기준으로 하고, 인력파견형의 경우, 일반현황 분석에서는 취업 및 파견 실적이 없어도 참여자 모집과 교육이 이뤄진 사업단을 모두 포함하고, 유형별 분석에서는 급여를 단 1회라도 지급받은 참여자 실적이 있는 경우에만 포함시킴.



〈표 1-2〉 노인일자리사업 유형별 실태조사 문항 구성

영역	항 목	내 용	
I. 기관 일반 문항	(1) 인력운용현황	① 노인일자리 담당 실무자수 / ②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전담인력 수 ③ 유형별 담당 프로그램 수	
	(2) 업무비중	전체 업무 중 노인일자리사업 업무비중	
	(3) 협의구조 유무	① 지역협의체 또는 간담회 운영 여부	
		② 운영주기 및 개최횟수	
	(4) 노인 일자리 지원노력(지자체)	① 노인일자리사업 별도예산 지원여부 및 지원액	
		② 노인일자리 제공 관련 별도 사업 시행 여부	
	(5) 노인일자리사업 지원 체계(민간기관)	① 모법인 및 지자체 지원 여부	
		② 외부자원 활용 여부	
(6) 예산교부방식(민간기관)	예산교부방식		
(7) 연계부서(민간기관)	기관 내 담당부서명 및 연계부서명		
(8) 사업량 결정방식	사업량 조정 및 결정 방식(민간기관 조정결과 만족도 포함)		
II. 사업 일반 문항	(1) 사업추진 현황	① 사업유형 및 최초 시행년도	
		② 사업목표량 및 사업신청자수, 참여자수	
		③ 목표량 미달 사유	
	(2) 사업추진체계(지자체)	주요업무별 수행주체	
	(3) 참여자 모집 및 선정방식	① 참여자 모집방식	
		② 참여자 선정기준	
③ 소득수준 파악방식			
(4) 사업운영상 문제점	사업운영상 애로사항		
(5) 사업효과성	사업효과성에 대한 실무자의 주관적 인식 정도		
	① 사업연장 개월 수		
	② 사업연장 방식		
(6) 사업지속성	③ 예산기간 대비 비예산기간 참여자 수		
	III. 유형별 문항	(1) 공통	주요사업 내용
		(2) 공익형	사업관리방식(민간기관)
(3) 교육형		① 파견수요처 유형별 개수	
		② 수요처 강사로 지급 추진 여부	
		③ 강사로 지급 수요처 개수	
	④ 타 유형 사업 혼합운영 여부 및 이유		
	⑤ 해설사 사업 운영 방식		
(4) 복지형	① 수혜자수 및 수혜가구 수		
	② 노노케어의 수혜자 구성 및 수혜자 발굴 기준(수혜자 발굴방식)		
	③ 노노케어 사업의 의미		
	④ 주거환경개선사업 주력사업 내용, 재료비 총당방식 및 참여자 이동방식		
	⑤ 타 유형 사업 혼합운영 여부 및 이유		
(5) 인력파견형	① 취업자 수(실인원 및 연인원)		
	② 사업운영방식		
	③ 사후관리 실시여부		
	④ 사후관리방식 및 주기		
IV. 기타	(1) '07년 비예산 기간 사업지속 계획		
	(2) 사업량 증감 희망여부 및 희망 사업량		
	(3) 교육관련 요구사항		
	(4) 지역규모 및 지역특성에 따른 사업수행 장단점		
	(5) 기타 지원요구사항(지자체)		

Ⅱ. '07년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일반현황





Ⅱ '07년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일반현황⁴⁾

1.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참여현황

2007년 전국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및 조사응답기관의 지역 분포는 <표 2-1>~<표 2-2>와 같음. 지역별 수행기관 수는 전반적으로 참여노인 수에 비례하여, 광역별로는 경기, 서울, 전남 지역에서 가장 많은 수행기관이 참여하고 있고, 지역규모별로는 대도시와 중소도시가 농어촌 지역보다 약 10% 정도 더 높게 나타나고 있음⁵⁾.

<표 2-1>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광역 분포

	조사대상기관		응답기관	
	빈도	%	빈도	%
강원	52	5.7	44	5.4
경기	132	14.4	123	15.1
경남	75	8.2	63	7.7
경북	55	6.0	48	5.9
광주	22	2.4	21	2.6
대구	38	4.2	36	4.4
대전	31	3.4	23	2.8
부산	73	8.0	70	8.6
서울	113	12.4	109	13.3
울산	16	1.8	13	1.6
인천	42	4.6	32	3.9
전남	88	9.6	76	9.3
전북	85	9.3	73	8.9
제주	6	.7	1	.1
충남	50	5.5	50	6.1
충북	36	3.9	35	4.3
전체	914	100.0	817	100.0

* 조사대상 기관 : 2007년 8월말 기준

- 4) 수행기관 일반현황은 내부 전산자료를 활용하여 무응답 기관을 포함한 전국현황을 기재함(2007년 8월말 기준)
- 5) 기초지자체를 기준으로 특별시 및 광역시 포함 기초 지자체는 대도시, 일반시는 중소도시, 군 단위는 농어촌으로 재분류함



〈표 2-2〉 지역규모별 수행기관 분포

	조사대상 기관		응답기관	
	빈도	%	빈도	%
대도시	323	35.3	292	35.7
중소도시	341	37.3	309	37.8
농어촌	250	27.4	216	26.4
전 체	914	100.0	817	100.0

수행기관별로는 (기초)지자체가 20.6%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고, 마찬가지로 전 지역에 가장 보편적으로 확충되어 있는 노인관련 민간기관인 대한노인회와 노인복지관이 각각 18.6%, 14.4%를 차지하고 있음〈표 2-3〉. 종합사회복지관 및 장애인복지관의 경우, 부산과 서울에서 특히 높은 비중으로 참여하고 있고, 농어촌 지역은 복지관련 인프라가 부족한 관계로 지자체와 대한노인회, 노인복지센터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표 2-4〉. 한편 고령화 시대, 노인의 일자리 문제가 부각되면서 최근 들어 경기지역의 실버인력뱅크, 인천지역의 노인인력관리센터처럼 지역적인 노인일자리 관련 전문조직들도 생겨나고 있는 추세임.

〈표 2-3〉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수행기관 현황

	조사대상		응답기관	
	빈도	%	빈도	%
지자체(직접 사업수행)	188	20.6	160	19.6
노인복지관	132	14.4	126	15.4
종합사회복지관/장애인복지관	119	13.0	114	14.0
시니어클럽	49	5.4	47	5.8
대한노인회	170	18.6	148	18.1
노인복지센터	115	12.6	101	12.4
자활후견기관	12	1.3	9	1.1
노인보호전문기관	10	1.1	9	1.1
실버인력뱅크	20	2.2	19	2.3
지방문화원 ⁶⁾	23	2.5	22	2.7
기타	76	8.3	62	7.6
전체	914	100.0	817	100.0

* 기타 : 노인인력관리센터, 사회복지협의회, 복지재단, 시민단체, 도서관 등

6) 수행기관의 다양화 및 인프라 확충을 위해 2007년부터 지방문화원을 수행기관으로 공식 인정함

〈표 2-4〉 지역규모별 수행기관 참여 현황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전체
지자체	53	58	77	188
	16.4%	17.0%	30.8%	20.6%
	28.2%	30.9%	41.0%	100.0%
노인복지관	62	56	14	132
	19.2%	16.4%	5.6%	14.4%
	47.0%	42.4%	10.6%	100.0%
종합사회복지관/장애인복지관	67	41	11	119
	20.7%	12.0%	4.4%	13.0%
	56.3%	34.5%	9.2%	100.0%
시니어클럽	18	28	3	49
	5.6%	8.2%	1.2%	5.4%
	36.7%	57.1%	6.1%	100.0%
대한노인회	49	63	58	170
	15.2%	18.5%	23.2%	18.6%
	28.8%	37.1%	34.1%	100.0%
노인복지센터	39	31	45	115
	12.1%	9.1%	18.0%	12.6%
	33.9%	27.0%	39.1%	100.0%
자활후견기관	1	5	6	12
	.3%	1.5%	2.4%	1.3%
	8.3%	41.7%	50.0%	100.0%
노인보호전문기관	4	6	0	10
	1.2%	1.8%	.0%	1.1%
	40.0%	60.0%	.0%	100.0%
실버인력뱅크	0	19	1	20
	.0%	5.6%	.4%	2.2%
	.0%	95.0%	5.0%	100.0%
지방문화원	7	4	12	23
	2.2%	1.2%	4.8%	2.5%
	30.4%	17.4%	52.2%	100.0%
기타	23	30	23	76
	7.1%	8.8%	9.2%	8.3%
	30.3%	39.5%	30.3%	100.0%
전체	323	341	250	914
	100.0%	100.0%	100.0%	100.0%
	35.3%	37.3%	27.4%	100.0%



아래 <표 2-5>~<표 2-6>은 민간 수행기관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년수로⁷⁾, 지자체를 제외한 수행기관은 평균 약 2년 정도의 노인일자리사업 운영 경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노인복지관이나 시니어클럽의 경우, 타 기관에 비해 4년차가 많으나, 그 이외 기관은 사업량이 대폭 확대되었던 2006년 이후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함에 따라 2년차 비중이 높게 나타남.

<표 2-5> 민간수행기관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년 수

	1년	2년	3년	4년	전체
노인복지관	9	22	12	85	128
	7.0%	17.2%	9.4%	66.4%	100.0%
	5.3%	8.4%	17.9%	55.9%	19.7%
종합사회복지관/장애인복지관	37	46	11	20	114
	32.5%	40.4%	9.6%	17.5%	100.0%
	21.8%	17.6%	16.4%	13.2%	17.5%
시니어클럽	8	8	4	26	46
	17.4%	17.4%	8.7%	56.5%	100.0%
	4.7%	3.1%	6.0%	17.1%	7.1%
대한노인회	17	91	26	13	147
	11.6%	61.9%	17.7%	8.8%	100.0%
	10.0%	34.7%	38.8%	8.6%	22.6%
노인복지센터	34	56	9	0	99
	34.3%	56.6%	9.1%	.0%	100.0%
	20.0%	21.4%	13.4%	.0%	15.2%
자활후견기관	2	6	1	0	9
	22.2%	66.7%	11.1%	.0%	100.0%
	1.2%	2.3%	1.5%	.0%	1.4%
노인보호전문기관	2	6	0	0	8
	25.0%	75.0%	.0%	.0%	100.0%
	1.2%	2.3%	.0%	.0%	1.2%
실버인력뱅크	13	4	0	0	17
	76.5%	23.5%	.0%	.0%	100.0%
	7.6%	1.5%	.0%	.0%	2.6%
지방문화원	20	2	0	0	22
	90.9%	9.1%	.0%	.0%	100.0%
	11.8%	.8%	.0%	.0%	3.4%
기타	28	21	4	8	61
	45.9%	34.4%	6.6%	13.1%	100.0%
	16.5%	8.0%	6.0%	5.3%	9.4%
전체	170	262	67	152	651
	26.1%	40.2%	10.3%	23.3%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7) 지자체의 경우, 대부분이 노인일자리사업 시작년도인 2004부터 참여하고 있어 본 분석에서는 제외함.

〈표 2-6〉 민간수행기관별 노인일자리사업 평균 참여년 수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노인복지관	128	3.35	1,001	1	4
종합사회복지관/장애인복지관	114	2.12	1,057	1	4
시니어클럽	46	3.04	1,210	1	4
대한노인회	147	2.24	.770	1	4
노인복지센터	99	1.75	.612	1	3
자활후견기관	9	1.89	.601	1	3
노인보호전문기관	8	1.75	.463	1	2
실버인력뱅크	17	1.24	.437	1	2
지방문화원	22	1.09	.294	1	2
기타	61	1.87	1,024	1	4
전체	651	2.31	1,098	1	4

〈표 2-7〉~〈표 2-8〉은 년도별 기관 참여현황 및 신규·중단 기관 현황으로, 2004년 335개 기관을 시작으로 2005년 419개, 2006년 743개, 2007년 8월 현재 914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음. 사업량 목표가 8만 자리를 넘어서기 시작한 2006년도부터 신규참여 기관의 수가 대폭 증가하고 있고, 참여중단 기관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표 2-7〉 년도별 기관 참여현황

년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기관수	신규 참여	참여 중단	총참여 기관	신규 참여	참여 중단	총참여 기관	신규 참여	참여 중단	총참여 기관
	335	92	8	419	337	13	743	206	35	914

* 직접사업수행 지자체 포함

* 과거 참여 기관이 참여 중단이후 재참여하게 된 경우도 소수 포함.

* 2007년 8월말 기준

〈표 2-8〉 기관유형별 참여중단기관 현황

	지자체	노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대한노인회	노인복지센터	기타	전체
빈도	15	4	8	9	4	13	53
%	28.3	7.5	15.1	17.0	7.5	24.5	100.0



한편 <표 2-9>는 기초지자체별 수행기관 수를 나타낸 것으로 기초 지자체 당 평균 4개 기관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가운데 19개 지역(8.2%)은 민간기관 참여 없이 지자체가 단독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232개 기초 지자체 중, 지자체와 민간 수행기관을 불문하고 1개 기관에서 사업을 전담하는 경우도 약 10.8%로, 이 중 60%는 농어촌, 32%는 중소도시 지자체임.

<표 2-9> 기초지자체별 수행기관 수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총 사업수행기관수 (지자체 포함)	대도시	69	4.64	1,970	1	10
	중소도시	77	4.36	2,570	1	13
	농어촌	86	2.91	1,832	1	10
	전체	232	3.91	2,270	1	13

* 기초 지자체 단위, 행정구 제외 수치

2. 담당인력 및 업무 비중

1) 노인일자리사업 담당인력 현황

노인일자리사업 담당인력은 크게 기관 내 담당직원과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전담인력⁸⁾으로 나누어 분석함. 먼저 기관 내 노인일자리사업 담당직원 수는 시니어클럽 이외 기관에서 보통 1~2명 사이이며, 기관 내 담당직원의 수가 0명이라고 응답한 기관은 사실상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전담인력이 대부분의 사업을 담당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남<표 2-10>. 먼저 노인일자리 관련 사업을 기관 고유업무로 하는 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 실버인력뱅크, 노인인력관리센터를 제외한 기관들을 대상으로 기관 내 담당직원 중, 타 업무를 겸직하지 않고 노인일자리사업 업무만 전담하는 직원의 유무를 분석한 결과⁹⁾, 약 21%, 총 82개

8)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전담인력이란 지자체 및 민간수행기관에서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별도의 인건비를 지원하여 노인일자리사업 업무만을 수행하는 상근인력을 의미함.

9) 기관 고유업무 자체가 예산, 비예산 노인일자리사업인 경우에는 타 업무 겸직 또는 전담 등의 구분이 무의미하며, 대한노인회의 경우, 보통 실무자 1인 조직으로 실제로 취업지원 고유업무를 제외한 전담자를 별도 채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음.

기관에서 전담직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기관들은 모두 타 업무 겸직으로 노인일자리사업을 담당하고 있음<표 2-11>.

그러나 전담직원을 두고 있다고 응답한 노인복지관의 경우 기관 내 고령자 취업알선센터 업무처럼 노인 취업 관련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노인 일자리를 함께 담당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엄밀한 의미에서 정부지원 노인일자리사업의 전담직원으로 보기 어려운 사례도 다수 포함되어 있음. 또한 노인복지센터나 기타 기관처럼 기관의 규모나 사업량 등이 매우 적음에도 불구하고, 전담직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응답한 일부 기관들은 타 업무 겸직을 하고 있더라도 노인일자리사업의 업무량이 개인 업무의 대부분을 차지하여 사실상 전담직원과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응답한 것으로 보여, 이러한 점 등을 모두 고려하면 실제 정부지원 노인일자리사업 전담을 위한 직원을 별도로 채용하고 있는 기관은 훨씬 낮을 것으로 판단됨. 한편 전담직원이 있는 기관의 비중이 가장 높은 노인복지관의 경우 전담직원 미채용 노인복지관에 비해 사업참여 년차 및 사업단수, 사업량 등이 약간 높은 것으로는 나타났으나 T검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음.

<표 2-10> 민간 수행기관 내 노인일자리사업 담당직원 수

	사례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노인복지관	127	0	6	1.46	.906
종합사회복지관/장애인복지관	111	0	4	1.20	.519
시니어클럽	46	3	9	5.48	1.130
대한노인회	144	0	3	1.02	.450
노인복지센터	97	0	3	1.14	.540
자활후견기관	9	0	1	.78	.441
노인보호전문기관	8	1	2	1.13	.354
실버인력뱅크	17	1	3	1.29	.588
지방문화원	20	0	2	.95	.510
기타	60	0	3	1.18	.537
전체	639	0	9	1.50	1.301

* 수행기관 전담인력 제외



〈표 2-11〉 민간수행기관 내 노인일자리사업 전담직원 유무

	있음	없음	전체
노인복지관	63	65	128
	49.2%	50.8%	100.0%
	76.8%	20.2%	31.8%
종합사회복지관/장애인복지관	8	106	114
	7.1%	92.9%	100.0%
	9.8%	33.0%	28.3%
노인복지센터	6	95	101
	5.9%	94.1%	100.0%
	7.3%	29.6%	25.1%
기타 기관	5	55	60
	8.3%	91.7%	100.0%
	6.1%	17.1%	14.9%
전체	82	321	403
	21.0%	79.0%	100.0%
	100.0%	100.0%	100.0%

한편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전담인력 현황 분석결과, 약 34%가 전담인력을 지원받고 있고, 이 중 20%는 2명 이상을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표 2-12). 아래 〈표 2-13〉~〈표 2-14〉는 전담인력 지원 유무 및 지원 수에 따른 사업량 분포로 지자체의 경우 지원인력 유무에 따른 사업량의 차이가 크지 않으나, 민간 수행기관의 경우 지원 기관이 미지원 기관보다 평균 3배의 사업량을 보이고 있음. 수행기관 전담인력은 지역실정에 따라 지자체에서 배정하도록 하였으나 전반적으로 담당 사업량이 지원인력 배분의 우선 기준으로 적용되었으며, 이와 같은 이유에서 노인일자리 창출 전문기관인 시니어클럽과 실버인력뱅크가 동일기관 내에서 지원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음.

〈표 2-12〉 수행기관별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전담인력 유무

	있음	없음	전체
지자체 ¹⁰⁾	72	88	160
	45.0%	55.0%	100.0%
	27.0%	16.5%	20.0%
노인복지관	62	65	127
	48.8%	51.2%	100.0%
	23.2%	12.2%	15.9%
종합사회복지관/장애인복지관	21	90	111
	18.9%	81.1%	100.0%
	7.9%	16.9	13.9%
시니어클럽	31	15	46
	67.4%	32.6%	100.0%
	11.6%	2.8%	5.8%
대한노인회	37	107	144
	25.7%	74.3%	100.0%
	13.9%	20.1%	18.0%
노인복지센터	16	81	97
	16.5%	83.5%	100.0%
	6.0	15.2	12.1
실버인력뱅크	13	4	17
	76.5%	23.5%	100.0%
	4.9	0.8	2.1
기타	15	82	97
	15.5%	84.5%	100.0%
	5.6	15.4	12.1
전체	267	571	799
	34.0%	66.0%	100.0%
	100.0%	100.0%	100.0%

〈표 2-13〉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전담인력 수에 따른 사업량(민간 수행기관)

	사례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지원 없음	444	5	553	60.07	67.076
1명	156	5	1,030	145.26	129.124
2명	33	64	615	244.33	131.590
3명 이상	6	246	630	457.20	161.991
전체	639	5	1,030	93.90	109.245

10) 직접사업을 수행하지 않는 지자체도 일부 전담인력을 지원받고 있으나, 본 분석에서는 직접사업 수행 지자체만 포함함



〈표 2-14〉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전담인력유무별 사업량 비교

		사업단수			사업량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민간 수행기관	없음	444	2.07	1,727	444	60.07	67,076
	있음	195	4.35	3,026	195	170.92	142,798
지자체	없음	88	2.33	1,522	88	208.69	132,295
	있음	72	3.22	2,541	72	249.67	143,571

2) 노인일자리사업 업무비중

노인일자리사업 관련 업무가 지자체 내 담당부서(계) 및 민간수행기관 전체 업무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대한 응답은 아래 〈표 2-15〉와 같음. 업무비중 산출 기준은 지자체의 경우 투입되는 시간을, 수행기관은 투입되는 인력 및 시간을 기준으로 하였고, 정부 인건비 지원 노인일자리사업만을 대상으로 함.

〈표 2-15〉 노인일자리사업 업무비중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지자체	202	17.92	9.955
노인복지관	117	17.44	10.454
종합사회복지관/장애인복지관	99	13.86	11.566
시니어클럽	45	72.18	17.603
대한노인회	146	42.94	22.772
노인복지센터	94	30.96	17.166
자활후견기관	9	16.00	7.433
노인보호전문기관	8	25.75	16.482
실버인력뱅크	17	39.12	23.667
지방문화원	22	17.65	8.487
기타	59	34.45	24.700
전체	818	24.605	16.835

지자체의 노인일자리사업 업무비중은 평균 17.9%로, 직접 사업을 수행하는 지자체(17.9%)와 직접 사업을 수행하지 않고 민간기관에 위탁한 지자체(17.8%)의 업무비중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직접사업수행 지자체라 하더라도 실제 업무는 대체로 읍면동 단위에서 수행하기 때문으로 보임.

주요 민간 수행기관의 업무비중을 살펴보면 기관 고유사업으로 노인일자리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시니어클럽(72.1%)과 실무자 1인 중심으로 사업이 운영되어 기관 고유 업무가 상대적으로 적은 대한노인회(42.9%), 노인자원봉사와 노인일자리사업 관련 업무를 위해 설립된 경기실버인력뱅크(39%)가 비교적 높게 나타난 반면, 다수 기관이 참여하고 있는 노인복지관의 경우, 기관 전체 업무 중 일자리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7%인 것으로 나타남.

3) 노인일자리사업 담당자 종사기간

조사표 작성 담당자 1인에 한해 조사한 지자체 및 민간 수행기관 실무자의 노인일자리사업 종사기간 응답결과는 <표 2-16>과 같음. 평균 종사기간은 민간 수행기관 응답자가 약 16.9개월로 지자체의 9.8개월 보다 대략 2배 정도 높게 나타났는데, 급간별로 살펴보면 지자체 담당자의 경우, 3개월 미만자가 23.4%에 달하고 2년 이상자는 7.5%에 불과해 업무의 연속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지자체 담당자의 업무연속성은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민간 수행기관과의 유대감 및 안정적인 의사소통 구조 속에서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노인일자리사업 발전을 위한 필수요소이나, 잦은 교체로 인한 업무단절은 특히 자립지원형 사업에서 사업능률을 저하시킬 수 있어, 일자리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자체 담당자의 최소근무기간의 보장 및 인센티브 제공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 있음.

수행기관별로 살펴본 종사개월 수는 기관 고유사업의 특성 및 정부지원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년도에 따라 명확히 구분됨<표 2-17>. 사업초기부터 일자리사업에 참여해왔던 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 노인복지관 등의 종사개월 수가 타 기관에 비해 높게는 나타났으나, 기관이 본 사업에 참여한 최초 참여년도 등을 고려할 때 민간수행기관 담당 실무자의 이직 또한 적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음. 한편 본 문항은 조사표 작성 담당자 1인의 노인일자리사업 종사개월 수를 조사한 것으로 5명 이상의 전 직원이 노인일자리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시니어클럽의 응답결과에 대한 분석에 유의할 필요 있음.



〈표 2-16〉 노인일자리사업 담당자 종사개월 수

		지자체		민간 수행기관	
		빈도	%	빈도	%
유효	3개월 미만	47	23.4	30	4.7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26	12.9	97	15.2
	6개월 이상 ~ 9개월 미만	51	25.4	139	21.7
	9개월 이상 ~ 1년 미만	16	8.0	29	4.5
	1년 이상 ~ 1년 6개월 미만	24	11.9	78	12.2
	1년 6개월 이상 ~ 2년 미만	22	10.9	102	15.9
	2년 이상 ~ 2년 6개월 미만	6	3.0	29	4.5
	2년 6개월 이상 ~ 3년 미만	2	1.0	34	5.3
	3년 이상	7	3.5	102	15.9
	전체	201	100.0	640	100.0
	결측값	5		11	
	전체	206		651	

〈표 2-17〉 민간 수행기관별 노인일자리사업 담당자 평균 종사개월 수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지자체		201	9.80	9.313	0	44
민 간 수 행 기 관	노인복지관	124	19.41	13.645	1	46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113	11.74	9.376	0	44
	시니어클럽	45	29.44	20.285	2	102
	대한노인회	145	22.66	12.835	0	50
	노인복지센터	98	12.32	8.448	1	44
	자활후견기관	9	13.33	10.977	5	36
	노인보호전문기관	8	8.63	5.805	2	18
	실버인력뱅크	17	8.06	6.230	1	20
	지방문화원	21	6.19	3.386	3	20
	기타	60	13.75	13.035	2	80
	전체	640	16.93	13.491	0	102

3. 사업량 조정방식 및 사업관련 협의구조

1) 사업량 조정 방식

2007년 사업량 결정 및 조정방식에 대한 응답결과는 아래 <표 2-18>과 같음. 지자체와 수행기관 응답내용 모두에서 수행기관이 원하는 사업량을 제출한 후에 조정한다는 방식이 54.0%, 52.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시군구 담당자와 수행기관 실무자들의 회의를 통해 결정한다는 응답도 24.3%, 26.8%로 높게 나타남.

<표 2-18> 2007년 노인일자리사업 사업량 결정방식

		지자체		민간 수행기관	
		빈도	%	빈도	%
유 효	시군구 일자리사업 담당 공무원 및 사업수행기관 실무자 회의를 통해 결정	49	24.3	171	26.8
	수행기관이 원하는 유형별 사업량을 시군구에 제출한 뒤 조정작업 거쳐 결정	109	54.0	334	52.4
	시군구에서 각 수행기관별 사업량을 선배정한 뒤 수행기관과 조정작업 거쳐 결정	40	19.8	91	14.3
	기타	4	2.0	11	1.7
	당시 담당자의 이직 또는 인사이동으로 알 수 없음	0	0.0	31	4.9
	전체	202	100.0	638	100.0
결측값		4		13	
전 체		206		651	

조정결과에 대한 수행기관의 만족도는 5점 만점에 평균 3.61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사업량에 대한 불만은 예상보다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표 2-19>. 실제 년도별 사업량 추이 자료 분석 결과에서도 참여자 수가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익년도에는 목표치가 하향 조정되는 경우가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고, 본 조사 결과에서도 현재 사업량에 대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표 2-19〉 민간 수행기관 노인일자리사업 사업량 조정결과 만족도

		빈도	%
유효	매우 낮다	8	1.9
	낮은 편이다	35	8.3
	보통이다	118	27.9
	높은 편이다	217	51.3
	매우 높다	45	10.6
	전체	423	100.0
결측	해당 없음	213	
	무응답	15	
	전체	228	
전체		651	

2) 협의구조 유무

소속 지역 내에서 지자체,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및 관련 기관들과의 지역협의체를 갖추고 있는가에 대한 응답결과는 아래 〈표 2-20〉과 같음. 전체적으로 지자체와 민간 수행기관의 항목별 응답비율은 유사한 양상이나, 실제 같은 지역(기초 지자체 단위)에 소속된 민간기관들과 지자체의 응답들을 대조해본 결과 모든 기관의 응답이 일치하는 지자체는 68개이고, 이 중에서 28개는 응답 사업수행기관이 1개인 지자체여서 실제 유의미한 응답은 40개 지역, 18%에 불과함¹¹⁾. 이와 같은 결과에 대해 지자체와 수행기관 모두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민관이 함께 참여하여 구성, 운영되는 노인일자리사업 지역협의체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갖고 있지 못하거나, 협의 내용과 범위에 따라 다양한 논의구조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 기관에 따라 다양한 응답이 나왔을 가능성이 높음. 그러나 지역협의체 구조는 아니더라도 간담회와 같은 최소한의 논의구조를 통해 지역 내 노인일자리사업 관련 현안을 다루고 있는 지역은 약 60%정도인 것으로 유추할 수 있음.

11) 노인일자리사업 지역협의체의 경우, 기초지자체 단위에서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운영되는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및 관련 유관기관들의 공식적인 협의체이기 때문에 동일 지역 내에 소속 되어 있는 지자체 및 수행기관들의 응답내용이 일치하여야 하나 본 조사결과 모든 응답이 일치하는 지역은 1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표 2-20〉 지역 내 협의구조 유무

		지자체		민간수행기관	
		빈도	%	빈도	%
유효	노인일자리사업 지역협의체 구성하여 운영 중	25	12.3	85	13.2
	노인일자리사업 지역협의체가 별도로 구성되지는 않았으나 관련 기관들의 간담회 형식으로 협의 진행	72	35.5	155	24.0
	노인일자리 지역협의체가 별도로 구성되지는 않았으나 지역복지 협의체를 통해 협의 진행	27	13.3	116	18.0
	노인일자리사업 지역협의체가 구성되었으나 미운영	8	3.9	18	2.8
	협의체계 없음	71	35.0	271	42.0
	전체	203	100.0	645	100.0
결측값		3		6	
전체		206		651	

아래 〈표 2-21〉, 〈표 2-22〉는 협의체 및 간담회의 개최 방식 및 8월말 기준 2007년 총 개최건수임. 응답 지자체 및 민간기관의 약 80% 정도가 현안발생시 개최하는 것으로 응답하였고 정기적 개최는 약 15% 이내인 것으로 나타남. 또한 개최건수는 2건이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고 3건 이내가 약 70%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남. 전반적으로 노인일자리사업 필요성에 대한 주관적 인식과 별개로 민관협력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일부는 공익·복지형에 치중되어 있는 현재 사업 특성에 기인하기도 함.

〈표 2-21〉 협의구조 개최 방식

		지자체		민간 수행기관	
		빈도	%	빈도	%
유효	정기적으로 개최	9	7.3	46	13.1
	현안발생시 개최	108	87.8	277	79.1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현안 발생시에도 개최	6	4.9	27	7.7
	전체	123	100.0	350	100.0
결측	해당 없음	79		289	
	무응답	4		12	
	전체	83		301	
전체		206		651	



〈표 2-22〉 2007년 협의구조 개최건수(8월말 기준)

		지자체		민간 수행기관	
		빈도	%	빈도	%
유 호	없음	6	5.5	6	1.8
	1건	25	22.9	68	20.3
	2건	36	33.0	101	30.1
	3건	20	18.3	59	17.6
	4건	9	8.3	30	9.0
	5건	6	5.5	33	9.9
	6건 이상	7	6.3	38	11.4
	전체	109	100.0	335	100.0
결측값		97		316	
전체		206		651	

4. 지자체 노인일자리 기타 지원

지자체를 대상으로 2007년 8월말 기준으로 노인일자리사업을 위한 별도의 예산을 추가로 투입하였거나 또는 추경계획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약 23.8%가 '있다'고 응답하였고〈표 2-23〉, 노인일자리사업 이외에 노인에게 인건비 또는 실비 등을 제공하는 별도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가에 대해 38.8%가 '있다'고 응답함〈표 2-24〉. 후자의 경우, 주로 노인자원봉사지원관련 사업이나 노인일거리마련사업 등으로 대부분의 시도에서 노인에게 소일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들임.

〈표 2-23〉 노인일자리사업 별도예산 추가 투입 여부

	빈도	%
별도예산 추가투입 내용 및 계획 있음	49	23.8
별도예산 추가투입 내용 및 계획 없음	157	76.2
전체	206	100.0

〈표 2-24〉 노인일자리 관련 별도사업 수행여부

	빈도	%
있음	80	38.8
없음	126	61.2
전체	206	100.0

5. 민간기관 외부자원 활용 및 모법인, 지자체 지원

1) 민간기관 외부자원 활용여부

노인일자리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51개 기관(7.8%), 65개 사업이 복지부 이외의 타 부처 일자리사업 또는 외부기금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지원 사업으로는 로또공익기금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재료비 지원을 받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노동부 사회적 일자리의 경우, 주로 시장형과 노노케어 중심의 복지형 사업 운영을 위한 인력지원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남<표 2-25, 2-26>.

외부자원의 활용은 인력 또는 재원의 확보를 통해 사업의 내실화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나 활용기관이 7.8%에 불과하여 매우 낮은 수준에 그치고 있고, 그나마 개발원 연계 로또 공익기금을 통한 외부자원 활용이 50%를 차지하고 있어 그 활용도는 더욱 낮다고 볼 수 있음. 한편 수행기관별로는 노인복지관의 경우 15개 기관이 외부기금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기관수로 볼 때 13개 기관이 외부기금을 활용하고 있는 시니어클럽이 외부기금 활용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볼 수 있음.

<표 2-25> 외부자원 활용 기관

	빈도	%
있음	51	7.8
없음	600	92.2
전체	651	100.0

<표 2-26> 외부자원 활용 지원사업 및 지원처

지원사업			지원처		
	빈도	%		빈도	%
주거환경개선사업	31	47.7	로또공익재단	21	32.3
시장형 사업	11	16.9	사회복지공동모금회	16	24.6
교육형 사업	7	10.8	노동부 사회적일자리	10	15.4
기타 복지형 사업	14	21.5	지자체 기금	5	7.7
기타	2	3.1	기타	13	20.0
전체	65	100.0	전체	65	100.0



2) 민간 수행기관 모법인 및 지자체 지원 여부

모법인과 지자체로부터 사업비 지원, 사무실 및 작업장 무상임대, 수요처 및 판로 확보 협조, 교육 및 기타 등의 지원을 받고 있는가에 대한 응답결과는 아래 <표 2-27>, <표 2-28>과 같음. 본 문항에서 지자체의 사업비 지원은 일자리 사업 예산 이외에 추가로 지원되는 인건비, 자재 구입비, 교육비 등을 의미하며, 교육지원은 강사진 제공, 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을 의미함.

<표 2-27> 모법인 지원 항목

	사업비		사무실 및 작업장		수요처 및 판로확보		교육지원		기타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없음	591	90.8	521	80.0	543	83.4	552	84.8	629	96.6
있음	60	9.2	130	20.0	108	16.6	99	15.2	22	3.4
전체	651	100.0	651	100.0	651	100.0	651	100.0	651	100.0

* 기타: 홍보, 인력 및 물품지원, 자문지원, 차량지원 등

<표 2-28> 모법인 지원 항목 수

		빈도	%
유효	1가지 해당	99	45.2
	2가지 해당	58	26.5
	3가지 해당	45	20.5
	4가지 해당	16	7.3
	5가지 해당	1	.5
	전체	219	100.0
결측값		432	
전체		651	

모법인의 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은 219개(33.6%)로 나타났고, 이 중 54.8%는 위 다섯 항목 중 두 가지 이상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사무실 및 작업장 지원이 20%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이고는 있으나 기관설립 당시 기관 고유업무를 위한 사무공간 지원인 경우가 일부 포함되어 있어 전적으로 노인일자리 사업을 위한 공간 지원으로 해석하기 어려움.

주요 수행기관의 모법인 지원 여부를 분석한 결과, 시니어클럽이 67.4%로 가장 많은 지원을 받고 있고 노인복지관과 사회복지관의 약 35%도 모법인의 지원을 받고 있는 반면, 대한노인회는 19%에 불과하여 전체 참여규모에 비해 모법인의 지원은 매우 미비한 것으로 나타남(표 2-29). 시니어클럽의 경우 기관 고유사업으로 다양한 유형의 노인 일자리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복지관은 여타의 수행기관 보다 지역 내에 많은 인프라와 자원, 업무경력들을 확보·보유하고 있는 반면, 대한노인회 경우 모법인의 물적 인적 자원 및 지역 내 교류 인프라와 관련 경력의 부족으로 실질적 지원이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고 있음.

〈표 2-29〉 수행기관별 모법인 지원 여부

	노인 복지관	사회 (장애인) 복지관	시니어 클럽	대한 노인회	노인 복지 센터	자활 후견 기관	노인보호 전문기관	실버 인력 뱅크	지방 문화원	기타	전체
없음	82	73	15	119	60	5	6	10	21	41	432
	64.1%	64.0%	32.6%	81.0%	60.6%	55.6%	75.0%	58.8%	95.5%	67.2%	66.4%
있음	46	41	31	28	39	4	2	7	1	20	219
	35.9%	36.0%	67.4%	19.0%	39.4%	44.4%	25.0%	41.2%	4.5%	2.8%	33.6%
전체	128	114	46	147	99	9	8	17	22	61	651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한편 지자체로부터 위 다섯 항목 중 하나라도 지원을 받은 기관은 208개 (32%)로 모법인 지원 비율과 유사한 반면, 2가지 이상 해당 기관은 35.6%로 낮게 나타남(표 2-30, 2-31). 수행기관별로는 시니어클럽이 80.4%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특히 2005년 이전 개소 기관에게 지원되는 사업개발비로 사업비 지원 비중이 높고 시장형 사업 위주의 사업운영으로 수요처 및 판로지원이 타 기관에 비해 높게 나타난 것이 한 원인으로 분석됨.

〈표 2-30〉 지자체 지원 항목

	사업비		사무실 및 사업장		수요처 및 판로확보		교육지원		기타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없음	604	92.8	547	84.0	568	87.3	586	90.0	633	97.2
있음	47	7.2	104	16.0	83	12.7	65	10.0	18	2.8
전체	651	100.0	651	100.0	651	100.0	651	100.0	651	100.0

* 기타 : 사업홍보, 물품지원, 차량지원 등



〈표 2-31〉 지자체 지원 항목 수

		빈도	%
유효	1가지 해당	134	64.4
	2가지 해당	46	22.1
	3가지 해당	21	10.1
	4가지 해당	7	3.4
	전체	208	100.0
결측값		443	
전체		651	

**Ⅲ. '07년 노인일자리사업
일반현황**





Ⅲ '07년 노인일자리사업 일반현황

1.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일반현황

2007년 8월말 현재, 전국적으로 기초지자체 포함 914개 수행기관에서 2,472개 사업단이 운영되고 있음. 본 보고서에서는 조사표를 제출한 819개 기관의 2,243개 사업을 분석함.

〈표 3-1〉, 〈표 3-2〉는 전국 노인일자리사업 참여현황 및 실태조사 응답기관 참여현황으로, 공익형 사업량이 약 50%, 복지형이 약 28%로 전체 사업량의 약 78%가 공익·복지형에 집중된 반면 교육형, 자립지원형은 각각 11%~12%에 머물고 있고, 특히 인력파견형은 실제 취업자 수 등을 고려하여 참여자수를 재산출할 경우, 더욱 낮아질 것으로 추정됨.

〈표 3-1〉 2007년 전국 노인일자리사업 참여현황

	사업단수	참여자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전체
공익형	623(25.2%)	92.12	116.631	2	1,012	57,392(52.1%)
교육형	474(19.2)	25.84	22.691	0	152	12,250(11.1%)
복지형	859(34.7%)	36.11	36.663	0	316	31,019(28.1%)
시장형	398(16.1%)	19.82	16.619	0	117	8,316(7.5%)
인력파견형	118(4.8%)	14.33	23.703	0	167	1,691(1.5%)
전체	2,472(100.0%)	44.60	69.749	0	1,012	110,240(100.0%)

* 자료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내부전산자료(2007. 8월말 기준)

* 통합형 중 시장형 초기투자 시범사업은 제외하며 지역혁신사업 중 시장형 2개 사업 및 복지형 17개 사업은 기존 5개 유형 내에 포함하여 분석함.



〈표 3-2〉 2007년 노인일자리사업 유형별 실태조사 응답기관 참여현황

	사업단수	참여자 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전체
공익형	557	84.85	95.490	2	756	47,261(49.7%)
교육형	431	26.68	23.021	1	150	11,501(12.0%)
복지형	770	34.04	33.223	2	360	26,208(27.6%)
시장형	377	19.44	16.262	0	145	7,329(7.7%)
인력파견형	108	26.04	30.971	0	180	2,812(3.0%)
전체	2,243	42.40	58.757	0	756	95,111(100.0%)

* 자료 : '07년 노인일자리사업 유형별 실태조사

수행기관별로는 지자체와 대한노인회가 공익형을, 노인복지관이 교육형 사업과 복지형 사업을, 시니어클럽은 교육형 사업과 자립지원형 사업을 다수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표 3-3). 특히 시니어클럽의 경우, 기관수 자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5.4%로 매우 작으나 참여노인수의 비중은 타 기관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보통 실무자 1인이 기관 고유업무와 일자리사업 업무를 겸직하는 타 기관과는 달리 노인일자리창출 전문기관으로서 5~6명의 인력이 사업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임. 한편 지역규모별로는 농어촌지역으로 갈수록 공익형의 비중이 높아지고, 교육형과 자립지원형의 비중은 낮아지고 있는데, 지역규모에 따른 주요 수행기관과 관련 있음.

〈표 3-3〉 수행기관별 사업 참여자 비율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시장형	인력파견형	전체
지자체	30,164	581	4,855	720	47	36,367
	82.9%	1.6%	13.4%	2.0%	0.1%	100.0%
	63.8%	5.1%	18.5%	9.8%	1.7%	38.2%
노인복지관	4,188	5,664	6,541	1,198	1,047	18,638
	22.5%	30.4%	35.1%	6.4%	5.6%	100.0%
	8.9%	49.2%	25.0%	16.3%	37.2%	19.6%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1,827	907	3,316	394	19	6,463
	28.3%	14.0%	51.3%	6.1%	0.3%	100.0%
	3.9%	7.9%	12.7%	5.4%	0.7%	6.8%
시니어클럽	2,592	2,025	2,292	2,876	985	10,770
	24.1%	18.8%	21.3%	26.7%	9.1%	100.0%
	5.5%	17.6%	8.7%	39.2%	35.0%	11.3%
대한노인회	5,784	1,192	4,321	1,208	533	13,038
	44.4%	9.1%	33.1%	9.3%	4.1%	100.0%
	12.2%	10.4%	16.5%	16.5%	19.0%	13.7%
노인복지센터	346	121	3,004	144	3	3,618
	9.6%	3.3%	83.0%	4.0%	0.1%	100.0%
	0.7%	1.1%	11.5%	2.0%	0.1%	3.8%
자활후견기관	0	7	162	39	0	208
	0.0%	3.4%	77.9%	18.8%	0.0%	100.0%
	0.0%	0.1%	0.6%	0.5%	0.0%	0.2%
노인보호 전문기관	0	188	50	0	0	238
	0.0%	79.0%	21.0%	0.0%	0.0%	100.0%
	0.0%	1.6%	0.2%	0.0%	0.0%	0.3%
실버인력뱅크	1,027	240	398	108	0	1,773
	57.9%	13.5%	22.4%	6.1%	0.0%	100.0%
	2.2%	2.1%	1.5%	1.5%	0.0%	1.9%
지방문화원	0	253	186	30	0	469
	0.0%	53.9%	39.7%	6.4%	0.0%	100.0%
	0.0%	2.2%	0.7%	0.4%	0.0%	0.5%
기타	1,333	323	1,083	612	178	3,529
	37.8%	9.2%	30.7%	17.3%	5.0%	100.0%
	2.8%	2.8%	4.1%	8.4%	6.3%	3.7%
전체	47,261	11,501	26,208	7,329	2,812	9,511
	49.7%	12.1%	27.6%	7.7%	3.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3-4〉 지역규모별 사업 참여자 수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시장형	인력파견형	전체
대도시	15,625	5,192	9,801	2,875	1,545	35,038
	44.6%	14.8%	28.0%	8.2%	4.4%	100.0%
	33.1%	45.1%	37.4%	39.2%	54.9%	36.8%
중소도시	20,317	5,036	10,441	2,699	1,139	39,632
	51.3%	12.7%	26.3%	6.8%	2.9%	100.0%
	43.0%	43.8%	39.8%	36.8%	40.5%	41.7%
농어촌	11,319	1,273	5,966	1,755	128	20,441
	55.4%	6.2%	29.2%	8.6%	0.6%	100.0%
	23.9%	11.1%	22.8%	23.9%	4.6%	21.5%
전체	47,261	11,501	26,208	7,329	2,812	9,5111
	49.7%	12.0%	27.6%	7.7%	3.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2. 지자체 주요업무 수행주체

지자체가 직접사업 수행기관인 경우, 노인일자리사업의 주요업무 담당주체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3-5〉와 같음. 보통 시군구는 사업계획과 급여지급 및 전산입력을 담당하고 있고, 직접적인 사업운영은 대체로 읍면동이 담당하는 가운데 사업 자체가 일반 공무원이나 도로가 아닌, 특정 시설을 기점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활동처에서 사업을 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남. 기타 주체로는 열거된 각 주체가 일정부분 공동 책임 하에 운영하는 경우가 다수이며, 전산 상에는 지자체가 수행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실제 사업을 운영하는 기관은 수행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지자체 직영 복지시설인 경우 등도 포함되어 있음.

〈표 3-5〉 주요업무 수행주체

		아이템 발굴 및 계획		참여자 모집		참여자 선정		참여자 교육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유효	시군구	345	81.4	72	17.0	167	39.5	196	46.9
	읍면동	43	10.1	294	69.3	231	54.6	167	40.0
	시군구, 읍면동	27	6.4	37	8.7	5	1.2	26	6.2
	경로당	1	.2	3	.7	3	.7	1	.2
	수요처	2	.5	10	2.4	12	2.8	15	3.6
	기타	6	1.3	8	1.8	5	1.2	13	3.0
	전체	424	100.0	424	100.0	423	100.0	418	100.0
결측값	13		13		14		19		
전체	437		437		437		437		

〈표 3-5〉 주요업무 수행주체(계속)

		수요처, 수혜자, 판로 확보 및 관리		참여자 관리		급여지급		전산입력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유효	시군구	167	42.1	57	13.6	301	71.2	296	70.1
	읍면동	173	43.6	258	61.4	109	25.8	85	20.1
	시군구, 읍면동	27	6.8	58	13.8	1	.2	32	7.6
	경로당	1	.3	2	.5	2	.5	1	.2
	수요처	12	3.0	28	6.7	9	2.1	0	.0
	기타	17	4.4	17	4.1	1	.2	8	1.9
	전체	397	100.0	420	100.0	423	100.0	422	100.0
결측값	40		17		14		15		
전체	437		437		437		437		



■ 3. 사업 운영 역사

1) 프로그램 년차 수

2,243개 사업의 운영 년차 수 분석 결과²⁾, 4년차 이상 사업은 19.5%에 불과한 반면, 2007년 신규사업은 34.4%, 2년차는 33.2%로, 사업목표량이 큰 폭으로 올랐던 2006년과 2007년의 신규기관 참여 및 신규사업 수행에 따른 결과로 보임. 또한 노인일자리사업이 2004년부터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5년차 이상 사업이 존재하는 것은, 모두 노인일자리사업이 시작되기 이전에 시니어클럽에서 자체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던 경우임.

〈표 3-6〉 사업단 운영 년차(조정 후)

	빈도	%
5년차 이상(2003년 이전)	16	.7
4년차(2004)	438	19.5
3년차(2005)	274	12.2
2년차(2006)	744	33.2
신규사업(2007)	771	34.4
전체	2,243	100.0

한편 개발원 내부 자료와 담당실무자의 조사표 기입년도가 불일치하는 자료 중에서 조사표 입력년도가 실적자료보다 앞서는 사업의 경우(11.9%), 실적 미제출인 경우도 일부 있을 수 있으나, 다수는 정부지원의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수행하기 이전에 이미 기관 자체사업으로 수행하고 있던 사업(시장형 및 인력파견형)일 가능성이 높음. 또한 다른 사업단내에서 함께 운영되다가 독립되어 나온 사업(공익형, 복지형)일 가능성도 높는데, 이와 같은 경향은 유형별 분석 결과에서도 찾아볼 수 있으며, 특히 공익형과 복지형의 경우, 다양한 서비스들이 한 사업단내에서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다수임.

12) 조사결과와 신뢰성 확보를 위해 개발원 내부 실적자료와 비교 검토한 결과, 약 18%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표 3-6〉은 조사표에 기입한 년도보다 실적에 기입되어 있는 년도가 앞선 경우, 실적 자료 기입년도를 실제 사업최소 수행년도로 간주하고, 실적 기입년도보다 조사표 기입년도가 앞설 경우, 조사표 기입년도를 실제 사업최소 수행년도로 간주하여 재조정된 결과임.

2) 중단사업 현황

과거 운영되었으나 중단된 사업은 총 525개로, 사업단 명칭이 변경되어도 동일업종인 경우 동일사업으로 간주하고, 같은 사업이 타 기관에 이전된 경우에도 동일 사업이 지속 운영되는 것으로 간주하였으나, 여전히 같은 내용의 사업이 신규사업 내에 포함된 경우도 있을 수 있어, 실제 중단 사업은 이 수치보다 낮을 것으로 추정됨. 전체 사업의 비중을 고려하면, 자립지원형의 중도 하차 비율이 높은 편이나, 이 또한 일부는 시니어클럽의 고유사업으로 전환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표 3-7〉 중단사업 현황(2004~2005)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시장형	인력파견형	전체
빈도	182	63	85	127	68	525
%	34.7	12.0	16.2	24.2	13.0	100.0%

* 자료 : 개발원 내부 실적보고 자료

4. 참여자 모집 및 선정 현황

1) 목표량 미달 사유

〈표 3-8〉~〈표 3-9〉는 8월말 현재 사업 참여자수가 목표량 대비 80%미만인 184개 사업을 대상으로 목표량 미달 사유를 분석한 결과임. 무응답 사업을 제외한 총 179개 사업에 대해 중복응답 포함 204개 응답을 분석 결과, 적합 참여자 미발굴 및 신청자 부족, 수요처 및 수혜자 미발굴 등이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3-8〉 미달사업 사업유형별 분포

	빈도	%
공익형	18	9.8
교육형	28	15.2
복지형	37	20.1
시장형	53	28.8
인력파견형	48	26.1
전체	184	100.0

〈표 3-9〉 사업유형별 사업 목표량 미달 사유

	예산 미지급	신청자 부족	적합 참여자 미발굴	수혜자 및 수요처 미발굴	기타	전체
공익형	4	6	6	0	0	16
	25.0%	37.5%	37.5%	0.0%	0.0%	100.0%
	50.0%	10.3%	9.8%	0.0%	0.0%	7.8%
교육형	0	12	8	6	4	30
	0.0%	40.0%	26.7%	20.0%	13.3%	100.0 %
	0.0%	20.7%	13.1%	10.3%	21.1%	14.7%
복지형	3	14	8	8	5	38
	7.9%	36.8%	21.1%	21.1%	13.2%	100.0 %
	37.5%	24.1%	13.1%	13.8%	26.3%	18.6%
시장형	1	18	30	10	6	65
	1.5%	27.7%	46.2 %	15.4%	9.2%	100.0%
	12.5%	31.0%	49.2%	17.2%	31.6%	31.9%
인력파견형	0	8	9	34	4	55
	0.0%	14.5%	16.4%	61.8%	7.3%	100.0%
	0.0%	13.8%	14.8%	58.6%	21.1%	27.0%
전체	8	58	61	58	19	204
	3.9%	28.4%	29.9%	28.4%	9.3%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유형별로는 시장형이 전체 미달사업의 28.8%, 인력파견형이 26.1%로 자립 지원형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복지형도 20%로 비교적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으나, 동일유형내 비교 결과, 인력파견형이 40% 이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시장형 14.0%, 교육형 6.5% 순으로 나타남. 시장형의 경우 적합 참여자 발굴 어려움이 가장 큰 요인으로 나타났고, 인력파견형은 수요처의 미발굴이 61.8%로

미달 사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인력파견형의 경우, 평균 7개월 정도의 지속적 참여가 전제되는 타 유형과 달리, 일단 취업이 되었다면 목표량을 달성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본 조사시점이 8월 기준인 것을 감안할 때, 목표량 미달 여부에 대한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으나, 개발원 전산 보고자료에 의하면 2007년 한해 인력파견형 목표달성도는 50%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남.

한편 복지형은 신청자 부족이 36.8%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공익형 참여자와 비슷한 특성을 갖는 노인들이 공익형 업무에 비해 업무 난이도가 높다고 생각되는 복지형 사업 참여를 기피하는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보임.

2) 참여자 모집 경쟁률

〈표 3-10〉~〈표 3-12〉는 2007년 신규사업 총 771개 중, 무응답 사업 39개를 제외한 732개 사업의 경쟁률 분석 결과임¹³⁾. 2:1 이상의 사업은 12.4%에 불과하고, 1:1에서 1.5:1 사이가 65%로, 전반적인 경쟁률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8월말 기준으로 모집정원 수가 채워지지 않은 사업은 약 8.7%인 것으로 나타남.

〈표 3-10〉 2007년 신규사업 참여자 모집 경쟁률

	빈도	%
1:1 미만	64	8.7
1:1 이상 ~ 1.5:1 미만	476	65.0
1.5:1 이상 ~ 2:1 미만	101	13.8
2:1 이상 ~ 2.5:1 미만	44	6.0
2.5:1 이상 ~ 3:1 미만	20	2.7
3:1 이상	27	3.7
전체	771	100.0

13) 운영 2년차 이상의 계속사업인 경우, 기존 참여자 중심으로 운영되는 사업단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신청자 수의 정확도가 떨어지므로 분석에서 제외함.



〈표 3-11〉 2007년 신규사업 유형별 참여자 모집 경쟁률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공익형	169	1,6083	1,24056	.20	10.40
교육형	119	1,1950	.45507	.20	3.60
복지형	274	1,2942	.52974	.10	3.80
시장형	140	1,4529	1,57802	.10	16.80
인력파견형	30	1,5933	1,17207	.60	7.00
전체	732	1,3932	1,02128	.10	16.80

〈표 3-12〉 2007년 신규사업 참여자 모집 경쟁률 급간

	1:1 미만	1:1 이상~ 1.5:1 미만	1.5:1 이상~ 2:1 미만	2:1 이상~ 2.5:1 미만	2.5:1 이상~ 3:1 미만	3:1 이상	전체
공익형	11	101	27	12	7	11	169
	6.5%	59.8%	16.0%	7.1%	4.1%	6.5%	100.0%
	17.2%	21.2%	26.7%	27.3%	35.0%	40.7%	23.1%
교육형	12	86	14	5	0	2	119
	10.1%	72.3%	11.8%	4.2%	.0%	1.7%	100.0%
	18.8%	18.1%	13.9%	11.4%	.0%	7.4%	16.3%
복지형	19	185	40	17	7	6	274
	6.9%	67.5%	14.6%	6.2%	2.6%	2.2%	100.0%
	29.7%	38.9%	39.6%	38.6%	35.0%	22.2%	37.4%
시장형	17	89	18	6	3	7	140
	12.1%	63.6%	12.9%	4.3%	2.1%	5.0%	100.0%
	26.6%	18.7%	17.8%	13.6%	15.0%	25.9%	19.1%
인력파견형	5	15	2	4	3	1	30
	16.7%	50.0%	6.7%	13.3%	10.0%	3.3%	100.0%
	7.8%	3.2%	2.0%	9.1%	15.0%	3.7%	4.1%
전체	64	476	101	44	20	27	732
	8.7%	65.0%	13.8%	6.0%	2.7%	3.7%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노인들의 높은 일자리욕구에 비해 참여자 경쟁률이 높지 않은 원인에 대해서는 사업 아이템 및 지역특성, 일반노인특성 및 참여자 모집방식 등 여러 측면에서 고려해볼 필요 있음. 모집방식 자체가 선착순 마감이거나, 기관 이용자 중심의 참여자 모집처럼 제한적 모집 등이 한 원인일 수 있고, 사업유형과 노인들의 욕구 또는 능력의 불일치도 한 원인일 수 있는데, 공익형이 평균 1.6:1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교육형이 약 1.2:1로 가장 낮게 나타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음.

3) 참여자 모집 방식

본 조사에서는 기관내부 이용자 중심의 모집 가능성이 배제된, 비교적 공개적 방식이라 생각되는 항목 각각에 대해 참여자 모집방식으로 활용하였는지의 여부를 조사함<표 3-13>. 분석결과, 일선 기관에서는 쉽지 않은 방송매체나 설명회를 제외하면 각각의 항목들에 대한 해당 비율이 대체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지역소식지 및 구정신문과 노인관련 기관 공문을 통한 모집 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함. 이러한 경향은 지자체와 민간수행기관 간에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기타 응답에는 주로 기관 자체 홈페이지나 게시판, 지인을 통한 참여자 물색 등이 다수로 나타남. 그러나 기관의 참여자 모집방식이 전반적으로 공개적인 것으로 나타난 것과는 대조적으로 '07년 참여자 실태조사에 의하면, 참여자의 참여경로는 “이용하고 있던 기관”이나 “가족, 이웃, 친척, 친구등 지인”이 60%로 비공개적 방식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남. 실제 현장조사 결과 계속사업인 경우에는 소수의 인원을 충원하기 위한 공개모집은 효율적이지 못하며, 참여욕구가 높은 공익형 사업의 경우에는 기존 신청자가 확보된 상황에서 공개 모집이 기관의 업무마비를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나 확실적인 공개모집 원칙이 수정될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제시되었음.

〈표 3-13〉 참여자 공개모집 방식

		시군구 홈페이지		시군구 게시판		지역 소식지 및 구정신문		노인관련 기관 공문		현수막		방송매체		설명회		기타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유 료	미해당	1,114	50.3	1,366	61.6	844	38.1	654	29.5	964	43.5	1,687	76.1	1,673	75.5	1,385	62.5
	해당	1,102	49.7	850	38.4	1,372	61.9	1,562	70.5	1,252	56.5	529	23.9	543	24.5	831	37.5
	전체	2,216	100.0	2,216	100.0	2,216	100.0	2,216	100.0	2,216	100.0	2,216	100.0	2,216	100.0	2,216	100.0
결측값		27															
전체		2,243															



〈표 3-14〉 참여자 모집방식 가지 수

		1가지	2가지	3가지	4가지	5가지	6가지 이상	전체
유효	빈도	296	332	289	507	369	323	2,216
	%	13.4	15.0	17.6	22.9	16.7	14.6	100.0
결측값								27
전체								2,243

4) 참여자 선정기준

연령과 건강을 제외한 참여자 선정기준 1순위 및 2순위에 대한 분석결과, 경제수준이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는 가운데, 유형별로 명확한 특성들을 보이고 있음(표 3-15, 3-16). 공익형의 경우, 선정 1순위는 경제수준이 63.5%로 압도적 우위를 보이고 있고, 2순위로는 신규참여자가 37.1%로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음. 이와 같은 결과는 다수의 빈곤층 노인이 참여하고 있어 경제수준이 주요 선정기준이 되고 있고, 저학력 고연령의 노인들이 어렵지 않은 단순 업무를 선호함에 따라 비교적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어, 신규 참여자 여부 또한 참여자 선정의 주요 기준인 것으로 보임.

전문적 기술 및 교육을 필요로 하는 교육형의 선정기준 1순위는 자격증 유무가 40.3%, 기존참여자가 27.3%의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는데, 이와 같은 결과는 전문성 확보와 수요처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기존 참여자의 지속참여가 사업 운영상 필요하기 때문이며, 2순위에서도 같은 맥락에서 기존 참여자 및 자원봉사 경력이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음. 이와 같은 현상은 시장형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1순위로는 기존 참여자 우선이 38.5%로 높게 나타나, 관련 서비스 및 생산 및 판매에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참여자의 지속참여가 요구되는 유형임을 알 수 있음. 한편 2순위에서 활동장소의 접근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타 유형과 다른 시장형만의 특수요인이 있기 보다는 다른 변수들이 상대적으로 접근성 요인보다 후순위이기 때문임.

복지형 1순위는 공익형 다음으로 경제수준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고, 자원봉사 경력이 20.1%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음. 2순위로는 자원봉사경력에 이어 활동장소 접근성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노노케어의 경우, 수혜자의 위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기 때문임. 한편 교육형을 제외한 나머지 유형에서 자격증 유무가 우선순위에 오른 경우는 보유경력 및 기술 등을 고려한다는 의미로 선택된 경우가 다수인 것으로 전화조사 결과 나타남. 기타 내용으로는 참여자의 적성 및 인성 또는 자질, 업무수행능력 및 과거 경력이 대부분을 차지하여, 일정부분 자격증 유무와 중복되는 것으로 나타남.

〈표 3-15〉 사업유형별 참여자 선정기준 1순위(전체사업)

	경제수준	자격증 유무	기존 참여자 우선	신규 참여자 우선	자원봉사 경력	활동장소 접근성	기타	전체
공익형	348	6	48	53	25	44	24	548
	63.5%	1.1%	8.8%	9.7%	4.6%	8.0%	4.4%	100.0%
	45.5%	2.2%	10.1%	35.3%	11.5%	24.7%	14.8%	24.7 %
교육형	50	173	117	22	28	10	29	429
	11.7%	40.3%	27.3%	5.1%	6.5%	2.3%	6.8%	100.0%
	6.5%	64.3%	24.6%	14.7%	12.8%	5.6%	17.9%	19.3 %
복지형	255	48	147	50	152	58	47	757
	33.7%	6.3%	19.4%	6.6%	20.1%	7.7%	6.2%	100.0%
	33.3%	17.8%	30.9%	33.3%	69.7%	32.6%	29.0%	34.1%
시장형	90	22	145	19	12	48	41	377
	23.9%	5.8%	38.5%	5.0%	3.2%	12.7%	10.9%	100.0%
	11.8%	8.2%	30.5%	12.7%	5.5%	27.0%	25.3%	17.0 %
인력파견형	22	20	19	6	1	18	21	107
	20.6%	18.7%	17.8%	5.6%	.9%	16.8%	19.6%	100.0%
	2.9%	7.4%	4.0%	4.0 %	0.5%	10.1%	13.0%	4.8%
전체	765	269	476	150	218	178	162	2,218
	34.5%	12.1%	21.5%	6.8%	9.8%	8.0%	7.3%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3-16〉 사업유형별 참여자 선정기준 2순위(전체사업)

	경제수준	자격증 유무	기존 참여자 우선	신규 참여자 우선	자원봉사 경력	활동장소 접근성	기타	전체
공익형	67	9	44	193	40	125	42	520
	12.9%	1.7 %	8.5%	37.1%	7.7 %	24.0 %	8.1%	100.0 %
	19.0%	8.3%	15.1%	51.5%	11.5%	27.5%	21.0%	24.4%
교육형	49	55	90	32	109	47	36	418
	11.7 %	13.2 %	21.5 %	7.7 %	26.1%	11.2%	8.6%	100.0%
	13.9%	50.9%	30.8%	8.5%	31.2%	10.4%	18.0%	19.6%
복지형	144	20	97	97	163	156	52	729
	19.8 %	2.7 %	13.3%	13.3 %	22.4 %	21.4%	7.1%	100.0 %
	40.9%	18.5%	33.2%	25.9%	46.7%	34.4%	26.0%	34.2%
시장형	77	13	51	43	27	100	52	363
	21.2 %	3.6 %	14.0%	11.8 %	7.4%	27.5%	14.3%	100.0%
	21.9%	12.0%	17.5%	11.5%	7.7%	22.0%	26.0%	17.0%
인력파견형	15	11	10	10	10	26	18	100
	15.0 %	11.0 %	10.0%	10.0 %	10.0%	26.0%	18.0 %	100.0 %
	4.3%	10.2%	3.4%	2.7%	2.9%	5.7%	9.0%	4.7%
전체	352	108	292	375	349	454	200	2,130
	16.5 %	5.1%	13.7 %	17.6%	16.4%	21.3 %	9.4%	100.0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한편 참여자 선정기준으로 경제(소득)수준을 선택한 사업을 대상으로 그 파악 방식에 대해 분석한 결과는〈표 3-17〉, 〈표 3-18〉과 같음. 신청자 면담과 신청서상 기재내용이 각각 70.3%, 55.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지자체는 재산세와 의료보험료 조회 비중이 위 두 항목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민간 수행기관은 자료조회 의뢰보다는 직접 신청서 기재내용을 참고로 참여자를 면담하는 경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3-17〉 경제수준 파악방식 가지 수

	1가지	2가지	3가지	4가지	5가지	6가지 이상	전체
빈도	274	368	215	120	87	25	1,089
%	25.2	33.8	19.7	11.0	8.0	2.3	100.0

〈표 3-18〉 경제수준 파악방식

	재산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자동차세		신청서상 기재내용 ¹⁴⁾		신청자 면담		기타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미해당	582	53.0	682	62.1	1,003	91.3	873	79.4	494	45.0	326	29.7	980	89.7
해당	517	47.0	417	37.9	96	8.7	226	20.6	603	55.0	771	70.3	113	10.3
전체	1,099	100.0	1,099	100.0	1,099	100.0	1,099	100.0	1,097	100.0	1,097	100.0	1,093	100.0

5. 사업운영상 애로사항

사업운영상 애로사항 분석결과, 전반적으로 적정참여자 발굴과 참여자 관리, 수요처 및 판로의 확보·관리, 교통문제 등이 주요 애로사항인 것으로 나타남 〈표 3-19, 3-20〉. 유형별로 살펴보면, 공익형의 경우 참여자 선정이 24.9%로 가장 높고, 그 뒤를 이어 아이템 개발과 참여자 관리가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음. 세 가지 요인 모두 타 유형과 비교되는 뚜렷한 특징으로, 먼저 높은 경쟁률로 인한 사업초기 참여자 선정의 어려움은 명확하고 합리적인 선정기준의 마련을 요구하고 있음. 공익형 사업 대부분이 경제수준을 우선순위로 고려하여 선정기준을 마련하고는 있으나,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지 못하는 일반적인 자료 조회로는 노인의 실제 경제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해낼 수 없어 참여 탈락자들의 불만이 높음. 다음으로 아이템 개발은 저소득, 저학력, 고연령이라는 참여자 특성상 어려운 부분으로, 지역사회 기여도가 높은 사업일수록 좀 더 짧고 일정 수준 이상의 자질을 갖춘 노인을 요구한다는 딜레마가 존재함. 마지막으로 참여자 관리는 타 유형에 비해 참여자 수가 많고, 활동장소도 특정 기관이나 시설보다는 거리나 도로변 등이 많아, 비록 다수 사업이 읍면동 단위에서 운영되고 있다 하더라도 참여자 관리가 쉽지 않은데, 특히 안전사고의 위험이 많은 공익형 사업에 있어 큰 문제가 될 수 있음.

14)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용 참여신청서 기재내용 중 ‘생활정도, 월 생활비용, 주거형태, 신청동기’ 등의 항목을 통하여 참여신청 노인의 경제적 상황을 일정 정도 추정 가능함



〈표 3-19〉 유형별 사업운영상 애로사항 1순위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시장형	인력파견형	전체
아이템 개발	85	34	46	46	2	213
	39.9%	16.0%	21.6%	21.6%	0.9%	100.0%
	16.0%	8.3%	6.3%	12.6%	2.0%	10.0%
참여자 모집	20	25	28	16	11	100
	20.0%	25.0%	28.0%	16.0%	11.0%	100.0%
	3.8%	6.1%	3.8%	4.4%	10.9%	4.7%
적정 참여자 발굴	56	144	158	50	9	417
	13.4%	34.5%	37.9%	12.0%	2.2%	100.0%
	10.6%	35.2%	21.5%	13.7%	8.9%	19.5%
참여자 선정	132	6	45	8	1	192
	68.8%	3.1%	23.4%	4.2%	0.5%	100.0%
	24.9%	1.5%	6.1%	2.2%	1.0%	9.0%
참여자 교육	15	32	30	2	2	81
	18.5%	39.5%	37.0%	2.5%	2.5%	100.0%
	2.8%	7.8%	4.1%	.5%	2.0%	3.8%
수혜자 발굴 및 관리	15	33	167	10	5	230
	6.5%	14.3%	72.6%	4.3%	2.2%	100.0%
	2.8%	8.1%	22.7%	2.7%	5.0%	10.8%
수요처(판로)확보 및 관리	21	56	32	139	59	307
	6.8%	18.2%	10.4%	45.3%	19.2%	100.0%
	4.0%	13.7%	4.4%	38.2%	58.4%	14.4%
참여자 관리	96	34	78	21	7	236
	40.7%	14.4%	33.1%	8.9%	3.0%	100.0%
	18.1%	8.3%	10.6%	5.8%	6.9%	11.0%
사업비 부족	42	19	43	42	0	146
	28.8%	13.0%	29.5%	28.8%	0.0%	100.0%
	7.9%	4.6%	5.9%	11.5%	.0%	6.8%
행정 및 전산업무	10	7	17	8	2	44
	22.7%	15.9%	38.6%	18.2%	4.5%	100.0%
	1.9%	1.7%	2.3%	2.2%	2.0%	2.1%
교통문제(참여자 이동)	36	14	86	17	3	156
	23.1%	9.0%	55.1%	10.9%	1.9%	100.0%
	6.8%	3.4%	11.7%	4.7%	3.0%	7.3%
기타	2	5	5	5	0	17
	11.8%	29.4%	29.4%	29.4%	0.0%	100.0%
	.4%	1.2%	.7%	1.4%	.0%	.8%
전체	530	409	735	364	101	2,139
	24.8%	19.1%	34.4%	17.0%	4.7%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3-20〉 유형별 사업운영상 애로사항 2순위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시장형	인력파견형	전체
아이템 개발	21	23	27	32	4	107
	19.6%	21.5%	25.2%	29.9%	3.7%	100.0%
	4.4%	6.0%	4.0%	9.4%	4.2%	5.4%
참여자 모집	10	9	23	12	10	64
	15.6%	14.1%	35.9%	18.8%	15.6%	100.0%
	2.1%	2.3%	3.4%	3.5%	10.4%	3.2%
적정 참여자 발굴	28	62	85	48	29	252
	11.1%	24.6%	33.7%	19.0%	11.5%	100.0%
	5.9%	16.2%	12.5%	14.1%	30.2%	12.8%
참여자 선정	64	8	16	9	2	99
	64.6%	8.1%	16.2%	9.1%	2.0%	100.0%
	13.5%	2.1%	2.3%	2.6%	2.1%	5.0%
참여자 교육	33	50	64	12	5	164
	20.1%	30.5%	39.0%	7.3%	3.0%	100.0%
	6.9%	13.1%	9.4%	3.5%	5.2%	8.3%
수혜자 발굴 및 관리	25	28	111	10	3	177
	14.1%	15.8%	62.7%	5.6%	1.7%	100.0%
	5.3%	7.3%	16.3%	2.9%	3.1%	9.0%
수요처(판로)확보 및 관리	30	65	32	92	16	235
	12.8%	27.7%	13.6%	39.1%	6.8%	100.0%
	6.3%	17.0%	4.7%	27.1%	16.7%	11.9%
참여자 관리	96	46	111	37	13	303
	31.7%	15.2%	36.6%	12.2%	4.3%	100.0%
	20.2%	12.0%	16.3%	10.9%	13.5%	15.3%
사업비 부족	37	26	49	42	0	154
	24.0%	16.9%	31.8%	27.3%	0.0%	100.0%
	7.8%	6.8%	7.2%	12.4%	.0%	7.8%
행정 및 전산업무	38	17	34	15	3	107
	35.5%	15.9%	31.8%	14.0%	2.8%	100.0%
	8.0%	4.4%	5.0%	4.4%	3.1%	5.4%
교통문제(참여자 이동)	76	41	112	17	7	253
	30.0%	16.2%	44.3%	6.7%	2.8%	100.0%
	16.0%	10.7%	16.4%	5.0%	7.3%	12.8%
기타	17	8	17	14	4	60
	28.3%	13.3%	28.3%	23.3%	6.7%	100.0%
	3.6%	2.1%	2.5%	4.1%	4.2%	3.0%
전체	475	383	681	340	96	1,975
	24.1%	19.4%	34.5%	17.2%	4.9%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교육형의 경우, 적정 참여자의 발굴이 35.2%로 압도적 우위를 보이고 있고, 그 뒤를 이어 수요처의 확보 및 관리가 13.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무엇보다도 타 유형에 비해 기본적인 자질과 교육수준 등 참여자의 수준이 사업성패의 주요 요인이나, 현 세대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상 위와 같은 자격을 갖춘 노인의 비율은 높지 않으며, 특히 중소도시나 농어촌 지역으로 갈수록 더욱 부족한 상황임.

복지형 사업은 수혜자 발굴 및 관리가 22.7%로 가장 높고, 그 뒤를 이어 적정 참여자 발굴도 21.5%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순위와 통틀어서는 참여자 관리 문제와 교통문제가 주요 애로사항으로 나타남. 서비스 내용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복지형 사업의 다수를 차지하는 노노케어는 수혜자와의 상호관계, 의사소통 측면에서 어느 정도 이상의 수준을 요구함. 원칙적으로는 교육형과 마찬가지로 참여자의 자질과 능력이 요구되는 유형이라 할 수 있으나 현 노인인구의 특성상 여전히 공익형과 유사한 특성을 지닌 참여자들이 복지형 사업에 참여하고 있어, 사업의 질적 내실화에 어려움이 있음. 또한 각종 유사 사업의 난립으로 중복수혜자의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타 서비스에 비해 노인일자리사업 서비스가 양적, 질적으로 높다고 할 수 없어, 수혜자 발굴 문제도 큰 어려움으로 제기되고 있음. 마지막으로, 노노케어 사업은 대부분이 1:1 재가 방문으로 이뤄지고 있어, 참여자 출결점검 및 업무능력 점검 등의 참여자 관리가 쉽지 않고, 교통문제 또한 근거리 배치를 원칙으로 하고는 있으나 여전히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시장형 사업의 경우 판로의 확보 및 관리가 38.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적정 참여자 발굴, 사업비 부족 및 아이템 개발 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수익창출을 통해 자립을 도모하는 사업이니만큼, 판로의 확보가 필수적이거나, 생산 서비스 및 재화의 경쟁력이 낮아 보호된 시장을 통한 판매가 아니면 일반 시장 내에서 안정적이고 고정적인 판로의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임. 또한 생산기술 및 판매에 이르기까지 적절한 사업능력을 갖춘 참여자의 확보가 쉽지 않으며, 경쟁력을 갖추기에는 자본규모가 작고, 저자본 사업임에 따라 아이템 개발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음. 이러한 모든 요인들이 시장형 사업 발전의 큰 장애요인으로 사실상 적정 수준의 안정적인 수익창출이 쉽지 않음.

마지막으로 인력파견형 사업의 장애요인은 절대적으로 수요처의 확보 및 관리로 나타났고, 2순위에서 적정 참여자의 발굴이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시험감독관 사업으로 인한 것으로 보임.

6. 사업 효과성

실무자가 인식하는 노인일자리사업의 효과성 인식에 대한 응답결과, 5점 만점에서 평균 3.90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고, 유형별로는, 교육형이 4.14로 가장 높고, 인력파견형이 3.23으로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음<표 3-21, 3-22>. 한편 본 조사에서 '효과성' 판단 시에, 공익·교육복지형은 참여자 만족도를 제외한 수요처(수혜자) 및 지역사회의 반응만을 고려하여 기입하고, 시장형은 수익성과 참여자 만족도 모두, 인력파견형은 취업실적과 참여자 만족도 모두를 고려하여 기입하도록 하였으나, 여전히 전 유형에 걸쳐 참여자의 만족도 측면에서 효과성을 인식한 것으로 보여, 본 응답결과만으로 노인일자리사업이 지역사회 수요자 입장에서, 혹은 참여자의 자립 측면에서 많은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데 유의할 필요 있음.

<표 3-21> 노인일자리사업 효과성 인식

		빈도	%
유효	매우 낮다	40	1.8
	낮은 편이다	109	5.0
	보통이다	458	20.9
	높은 편이다	997	45.6
	매우 높다	583	26.7
	전체	2,187	100.0
결측값		56	
전체		2,243	



〈표 3-22〉 사업 유형별 노인일자리사업 효과성 인식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공익형	543	3.85	.867	1	5
교육형	424	4.14	.775	1	5
복지형	750	4.08	.793	1	5
시장형	365	3.54	1.009	1	5
인력파견형	105	3.23	1.273	1	5
전체	2,187	3.90	.912	1	5

7. 비예산기간 사업지속 노력

1) 2006년 비예산기간 사업지속 노력

인력파견형을 제외한 2년차 이상 사업, 총 1,333개 사업을 대상으로, 비예산기간¹⁵⁾의 사업지속여부 분석결과, 약 32%가 비예산기간에 사업을 연장 운영했다고 응답함. 유형별로는 시장형이 54.8%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교육형이 46.7%, 복지형이 29.5%로, 시장형 사업이 연중운영 원칙임을 감안하면, 사실상 교육형 사업의 사업지속 노력이 가장 높다고 볼 수 있음.

〈표 3-23〉 2006년 사업 연장운영 여부

유형	빈도		%
	연장	연장안함	
	417	887	32.0
	1,304		100.0
결측값		29	
전체		1,333	

15) 예산이 지원되는 기간 이후의 기간을 비예산기간이라 지칭하며, 시장형은 5개월을 기본 개월 수로 간주함.

〈표 3-24〉 2006년 사업유형별 사업연장 사업단수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시장형	전체
연장	30	136	131	120	417
	8.6%	46.7%	29.5%	54.8%	32.0%
	7.2%	32.6%	31.4%	28.8%	100.0%
연장안함	320	155	313	99	887
	91.4%	53.3%	70.5%	45.2%	68.0%
	36.1%	17.5%	35.3%	11.2%	100.0%
전체	350	291	444	219	1,304
	100.0%	100.0%	100.0%	100.0%	100.0%
	26.8%	22.3%	34.0%	16.8%	100.0%

사업 연장 개월 수를 살펴보면, 시장형 사업이 약 4개월로 가장 높고, 교육형과 복지형이 약 3개월로 나타났는데, 시장형 사업의 기본 개월 수를 5개월로 설정한 점을 고려하면, 실제 전체 운영개월 수는 교육·복지형이 더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표 3-25〉 2006년 유형별 평균 연장개월 수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공익형	30	2.767	1.3374	0.5	5.0
교육형	136	3.070	1.3350	1.0	7.0
복지형	129	3.124	1.4046	.5	6.0
시장형	119	4.303	1.9114	1.0	7.0
전체	414	3.419	1.6391	0.5	7.0

유형별로 살펴본 사업연장 방식은 아래 〈표 3-26〉과 같음. 공익형 사업은 지자체의 별도예산 지원이 55.2%로 가장 높고, 교육형은 자원봉사가 67.6%로 가장 높고, 수요처의 급여 지급은 30.9%로 나타남. 복지형 사업은 자원봉사가 84.0%로 가장 높고, 수요처로부터의 급여지급도 6.9%정도 차지하고 있음¹⁶⁾. 시장형은 사업매출을 통한 임금지급이 85.8%로 가장 높고, 예산 기간 동안의 적립금 활용을 통한 기간 연장도 22.5%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남.

16) 교육, 복지형의 경우 사업매출은 수요처의 급여 또는 임금 지급으로 해석함



〈표 3-26〉 2006년 사업 연장 방식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시장형	전체
무급 자원봉사	미해당	18	44	21	112	195
		62.1%	32.4%	16.0%	93.3%	46.9%
	해당	11	92	110	8	221
		37.9%	67.6%	84.0%	6.7%	53.1%
전체	29	136	131	120	416	
	100.0%	100.0%	100.0%	100.0%	100.0%	
수요처지급 강사로 및 임금	미해당	24	94	122	118	358
		82.8%	69.1%	93.1%	98.3%	86.1%
	해당	5	42	9	2	58
		17.2%	30.9%	6.9%	1.7%	13.9%
전체	29	136	131	120	416	
	100.0%	100.0%	100.0%	100.0%	100.0%	
지자체 별도예산 지원	미해당	13	108	123	117	361
		44.8%	79.4%	93.9%	97.5%	86.8%
	해당	16	28	8	3	55
		55.2%	20.6%	6.1%	2.5%	13.2%
전체	29	136	131	120	416	
	100.0%	100.0%	100.0%	100.0%	100.0%	
사업매출	미해당	29	135	128	17	309
		100.0%	99.3%	97.7%	14.2%	74.3%
	해당	0	1	3	103	107
		.0%	.7%	2.3%	85.8%	25.7%
전체	29	136	131	120	416	
	100.0%	100.0%	100.0%	100.0%	100.0%	
적립금 활용 (사업매출, 수요처 강사로 및 임금, 인건비 예산 일부 등)	미해당	29	132	124	93	378
		100.0%	97.1%	94.7%	77.5%	90.9%
	해당	0	4	7	27	38
		.0%	2.9%	5.3%	22.5%	9.1%
전체	29	136	131	120	416	
	100.0%	100.0%	100.0%	100.0%	100.0%	
기타	미해당	27	134	125	114	400
		93.1%	98.5%	95.4%	95.0%	96.2%
	해당	2	2	6	6	16
		6.9%	1.5%	4.6%	5.0%	3.8%
전체	29	136	131	120	416	
	100.0%	100.0%	100.0%	100.0%	100.0%	

수행기관별로는 노인복지관이 전체 연장 사업단 중 39.8%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는데<표 3-27>, 교육형 사업을 주로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며, 수행기관의 전체적인 참여현황을 고려하면, 시니어클럽의 사업지속 노력이 가장 높다고 할 수 있음.

〈표 3-27〉 2006년 수행기관별 사업연장 사업단 수

	지자체	노인 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시니어클럽	대한 노인회	노인복지 센터	기타	전체
연장	13	166	43	106	42	27	20	417
	3.1%	39.8%	10.3%	25.4%	10.1%	6.5%	4.8%	100.0%
연장 안함	287	189	76	84	154	49	48	887
	32.4%	21.3%	8.6%	9.5%	17.4%	5.5%	5.4	100.0%
전체	300	355	119	190	196	76	68	1,304
	23.0%	27.2%	9.1%	14.6%	15.0%	5.8%	5.1	100.0%

한편 참여자 측면에서 총 사업참여 개월 수를 예산기간 참여자 수 대비 몇 명 정도가 연장기간동안에 참여하고 있는지 분석한 결과, 평균 예산기간 참여자의 70% 정도가 비예산기간에도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50%미만의 적은 인원만으로 사업이 연장 운영된 사업단도 약 30% 있었으나, 예산기간 참여자와 동수로 사업이 연장 운영된 사업단도 176개, 45%로, 높은 비중을 차지함¹⁷⁾.

〈표 3-28〉 2006년 예산기간 대비 비예산기간 참여자 비율

	빈도	%	
유효	10% 이상 ~ 20% 미만	41	10.3
	20% 이상 ~ 50% 미만	79	20.0
	50% 이상 ~ 70% 미만	49	12.4
	70% 이상 ~ 90% 미만	42	10.7
	90% 이상	185	46.7
	전체	396	100.0
결측값	21		
전체	417		

17) 본 결과는 기관의 여건, 사업의 환경 등 사업운영에 있어서 다양한 특성에 따른 담당 실무자의 주관적 응답에 의한 분석으로, 자료의 정확도는 보다 낮을 수 있음.



2) 2007년 사업지속 계획

본 실태조사가 8월말 기준으로 9월 초 실시됨에 따라, 향후 예산기간의 종료 후, 사업 지속운영 계획의 여부 및 방식 등을 조사함. 비예산기간동안 사업을 연장 운영할 계획이 있는 사업은 49.3%로, 유형별로는 시장형이 76.8%, 교육형이 62.0%, 복지형이 55.6%로, 공익형을 제외한 모든 유형에서 현재 운영중인 사업단의 50% 이상이 연장운영의 계획이 있다고 응답함<표 3-29>.

<표 3-29> 유형별 2007년 사업 연장운영 계획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시장형	전체
유효	있음	93	258	396	265	1,012
		19.7%	62.0%	55.6%	76.8%	49.3%
	없음	378	158	316	80	932
		80.3%	38.0%	44.4%	23.2%	45.4%
전체	471	416	712	345	1,944	
	100.0%	100.0%	100.0%	100.0%	100.0%	
결측값						299
전체						2,243

사업연장 운영 방식은 아래 <표 3-30> 과 같음. 연장계획이 있는 사업단의 60.9%가 별도의 예산 조달이 수반되지 않는 무급 자원봉사를 연장방식으로 활용할 계획이라 응답하였는데, 특히 교육형과 복지형에서 각각 74.0%, 87.4%의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음. 이와 같은 결과는 수혜자 및 수요처를 두고 있어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유형 특성에 기인하기도 하지만, '07년 지침 상에 전년도 자원봉사 경력을 차년도 선발 시에 우선 반영하고, 기관의 사업평가에도 반영됨을 명시함에 따라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음. 그러나 전산 상에 등록된 '07년 자원봉사 참여 현황에 의하면, 공식적으로 비예산기간을 자원봉사로 연장하여 실시하기로 한 사업단은 연장계획이 있다고 밝힌 사업단의 16.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표 3-31>. 이와 같은 결과는 일부 전산 미입력에 의한 것일 수도 있고, 잔여예산의 확보 또는 참여자의 거부로 실제 계획과는 달리 자원봉사가 실시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자원봉사에 의한 사업연장의 정의 또는 범위에 따른 다양한 해석에 기인할 수도 있는데, 실제 조사표상의 응답에는 기관

차원의 자원봉사자 관리 없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참여자 개인의 자원봉사나 기간 설정이 무의미한 1회성 자원봉사 등이 모두 포함되었거나, 2008년 년초의 자원봉사까지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표 3-30〉 2007년 사업 연장 방식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시장형	전체
무급 자원봉사로 연속 참여	비해당	28 30.1%	67 26.0%	50 12.6%	251 94.7%	396 39.1%
	해당	65 69.9%	191 74.0%	346 87.4%	14 5.3%	616 60.9%
	전체	93 100.0%	258 100.0%	396 100.0%	265 100.0%	1,012 100.0%
비예산 기간에 수요처에서 임금 지급 ¹⁸⁾	비해당	91 97.8%	213 82.6%	390 98.5%	256 96.6%	950 93.9%
	해당	2 2.2%	45 17.4%	6 1.5%	9 3.4%	62 6.1%
	전체	93 100.0%	258 100.0%	396 100.0%	265 100.0%	1,012 100.0%
지자체에서 별도 예산 지원하기로 함	비해당	77 82.8%	227 88.0%	373 94.2%	265 100.0%	942 93.1%
	해당	16 17.2%	31 12.0%	23 5.8%	0 .0%	70 6.9%
	전체	93 100.0%	258 100.0%	396 100.0%	265 100.0%	1,012 100.0%
비예산 기간에 발생하는 매출로 임금 지급	비해당	93 100.0%	257 99.6%	395 99.7%	74 27.9%	819 80.9%
	해당	0 .0%	1 .4%	1 .3%	191 72.1%	193 19.1%
	전체	93 100.0%	258 100.0%	396 100.0%	265 100.0%	1,012 100.0%
현재 수요처에서 지급해 주는 강사료(인건비)를 적립해 두고 있음	비해당	93 100.0%	239 92.6%	394 99.5%	262 98.9%	988 97.6%
	해당	0 .0%	19 7.4%	2 .5%	3 1.1%	24 2.4%
	전체	93 100.0%	258 100.0%	396 100.0%	265 100.0%	1,012 100.0%
사업 매출 및 인건비 예산의 일부를 적립해 두고 있음	비해당	93 100.0%	251 97.3%	384 97.0%	174 65.7%	902 89.1%
	해당	0 .0%	7 2.7%	12 3.0%	91 34.3%	110 10.9%
	전체	93 100.0%	258 100.0%	396 100.0%	265 100.0%	1,012 100.0%
기관자체 예산 또는 외부기금으로 인건비 지원하기로 함	비해당	91 97.8%	245 95.0%	377 95.2%	262 98.9%	975 96.3%
	해당	2 2.2%	13 5.0%	19 4.8%	3 1.1%	37 3.7%
	전체	93 100.0%	258 100.0%	396 100.0%	265 100.0%	1,012 100.0%
기타	비해당	91 97.8%	256 99.2%	389 98.2%	261 98.5%	997 98.5%
	해당	2 2.2%	2 .8%	7 1.8%	4 1.5%	15 1.5%
	전체	93 100.0%	258 100.0%	396 100.0%	265 100.0%	1,012 100.0%

18) 교육·복지형이 사업매출로 대담한 경우, 수요처 임금지급으로, 시장형이 수요처 임금지급으로 응답한 경우에는 사업매출로 해석함.



한편 비예산기간 동안 수요처로부터 임금을 지급받기로 했거나, 현재 지급받고 있는 임금을 적립하여 비예산기간에 활용할 계획이 있는 사업은, 교육형이 약 24.8%로 가장 높고, 지자체의 별도예산 지원은 공익형과 교육형이 각각 17.2%, 12.0%로,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남¹⁹⁾. 시장형의 경우 사업특성상 당연히 사업매출로 인한 연장 방식이 72.1%로 가장 높지만, 매출 또는 인건비 적립을 통한 사업연장도 34.3%로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후자와 같은 운영방식은 사업 연속성의 확보라는 장점은 가질 수 있으나 타 유형에 비해 월평균 임금이 낮아져, 높은 노동 강도에 저임금에 따른 참여자의 만족도 저하를 초래하는 원인이 될 수 있음.

〈표 3-31〉 2007년 비예산기간 자원봉사 현황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시장형	전체
미해당	76	202	303	265	846
	81.7%	78.3%	76.5%	100.0%	83.6%
해당	17	56	93	0	166
	18.3%	21.7%	23.5%	.0%	16.4%
전체	93	258	396	265	1,012
	100.0%	100.0%	100.0%	100.0%	100.0%

* 자료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내부전산자료(2007년 12월말 기준)

아래는 조사표상의 응답과는 별개로, 인력파견형을 제외한 2,135개 사업단의 실제 2007년 한해 운영된 사업개월 수를 산출해 본 결과임²⁰⁾. 평균적으로 약 8개월간 사업이 운영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년초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운영이라기 보다는 잔여예산의 활용 등으로 사업이 연장된 경우가 다수인 것으로 보임.

먼저 시장형 사업은 평균 8.3개월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2년차 이상 사업단에 한해서 평균 운영개월 수를 산출해도 약 8.4개월로 나타나, 연중운영이라는 지침이 사실상 지켜지지 않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음. 또한 타 유형에 비해 연중 운영(12개월) 사업단 비중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평균

19) '07년에는 잔여예산의 인건비 전환이 가능해짐에 따라 잔여예산의 활용을 지자체 별도예산 활용 항목에 응답한 기관들이 다수였으나, 전화확인을 통해 잔여예산 활용은 기타 방식으로 분류함.

20) 단 본 수치는 참여자 참여일수 합산을 통해 산출된 개월 수가 아닌, 실제 급여가 지급된 월을 기준으로 산출된 사업단 운영 지속 개월 수임.

개월 수에 있어 약간의 우위만을 보이는 것은, 6개월 이하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 또한 높기 때문으로, 지원예산액이 실질적으로는 5개월분 임금에 해당하는 액수에 불과하기 때문임.

공익형 사업단은 평균 7.6개월 사업이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참여자 기준으로 산출된 평균 참여일수는 5.7개월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이와 같은 결과는 상하반기 구분 모집 또는 잔여예산 활용을 위한 일부 참여자에 한정된 연장 사업 운영 등에 기인한 것으로 실제, 8개월 이상 운영된 것으로 나타난 공익형 사업 중 46.4%는 7개월 운영 이후 목표량 대비 40% 미만에 불과한 참여자만으로 사업이 운영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교육형과 복지형 사업은 수요처와 수혜자에 대한 지속적 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에 따라 시장형과 마찬가지로 사업의 지속성이 요청되고 있는 유형임. 두 유형의 평균 운영개월 수는 약 8개월로 나타나고 있는데, 예산기간 참여자 대비 비예산 기간의 참여자 비율이 80%이상 되는 사업단이 각각 57.5%, 65.5%로 평균 참여자가 비교적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비율이 타 유형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음. 특히 전산에서 파악되지 않는 수요처의 임금 지급이나 자원봉사를 통한 사업운영까지 포함시킬 경우, 비공식적인 사업운영개월 수는 훨씬 높아질 것으로 추측됨.

〈표 3-32〉 2007년 유형별 평균 운영개월 수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공익형	556	7.65	1,327	3	12
교육형	431	8.04	1,186	4	11
복지형	770	8.16	1,273	3	12
시장형	375	8.30	2,335	1	12
전체	2,132	8.03	1,530	1	12

* 자료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내부전산자료(2007년 12월말 기준)



〈표 3-33〉 시장형 사업 년차별 운영개월 수

	사례수	평균(개월)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신규사업	146	7,497	2,2116	1.0	12.0
2년차	125	8,752	2,2555	4.0	12.0
3년차	52	8,846	2,3526	2.0	12.0
4년차	52	8,942	2,2615	2.0	12.0
전체	375	8,303	2,3354	1.0	12.0

* 자료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내부전산자료(2007년 12월말 기준)

〈표 3-34〉 2007년 유형별 운영개월 수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시장형	전체
6개월 이하	52	14	21	83	170
	30.6%	8.2%	12.4%	48.8%	100.0%
	9.4%	3.2%	2.7%	22.1%	8.0%
7개월	216	159	271	44	690
	31.3%	23.0%	39.3%	6.4%	100.0%
	38.8%	36.9%	35.2%	11.7%	32.4%
8개월	172	114	192	59	537
	32.0%	21.2%	35.8%	11.0%	100.0%
	30.9%	26.5%	24.9%	15.7%	25.2%
9개월	74	89	158	64	385
	19.2%	23.1%	41.0%	16.6%	100.0%
	13.3%	20.6%	20.5%	17.1%	18.1%
10개월	32	46	106	76	260
	12.3%	17.7%	40.8%	29.2%	100.0%
	5.8%	10.7%	13.8%	20.3%	12.2%
11개월	9	9	17	5	40
	22.5%	22.5%	42.5%	12.5%	100.0%
	1.6%	2.1%	2.2%	1.3%	1.9%
12개월	1	0	5	44	50
	2.0%	.0%	10.0%	88.0%	100.0%
	.2%	.0%	.6%	11.7%	2.3%
전체	556	431	770	375	2,132
	26.1%	20.2%	36.1%	17.6%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자료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내부전산자료(2007년 12월말 기준)

〈표 3-35〉 2007년 유형별 평균 참여기간

구 분	목표인원(개)	전체참여인원	평균참여기간	
총 계	110,000	130,071	-	
공익형	49,500	70,504	170일(5.7개월)	
교육 복지형	소 계	44,000	47,394	206일(6.9개월)
	교육형	16,500	12,998	214일(7.1개월)
	복지형	27,500	34,338	203일(6.8개월)
자립 지원형	소 계	16,500	12,019	연중
	인력파견형	5,500	2,601	연중
	시장형	11,000	9,418	연중
통합형	-	212	연중	

* 자료 : 「2007 노인일자리사업 통계자료」(한국노인인력개발원, 2008)

〈표 3-36〉 8개월 이상 운영 사업단 지속 참여자 비율(목표량 대비)²¹⁾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시장형	전체
20% 미만	65	41	52	16	174
	23.0%	16.0%	11.0%	6.5%	13.8%
20% 이상 ~ 40% 미만	33	28	41	29	131
	11.7%	10.9%	8.7%	11.7%	10.4%
40% 이상 ~ 60% 미만	33	23	36	38	130
	11.7%	9.0%	7.6%	15.3%	10.3%
60%이상 ~80%미만	13	17	34	35	99
	4.6%	6.6%	7.2%	14.1%	7.9%
80% 이상 ~ 90% 미만	28	26	25	31	110
	9.9%	10.2%	5.3%	12.5%	8.7%
90% 이상 ~ 100% 미만	47	41	55	26	169
	16.7%	16.0%	11.6%	10.5%	13.4%
100% 이상	63	80	230	73	446
	22.3%	31.3%	48.6%	29.4%	35.4%
전체	282	256	473	248	1,259
	100.0%	100.0%	100.0%	100.0%	100.0%

* 자료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내부전산자료(2007년 12월말 기준)

21) 본 자료는 8개월 이상 운영된 사업단에 한해, 7개월 이후 사업운영기간동안 참여자수가 목표량 대비 몇 % 참여하고 있는가를 분석한 자료임.

**IV. '07년 노인일자리사업
유형별 현황**





IV

'07년 노인일자리사업 유형별 현황²²⁾

1. 공익형 사업 현황

1) 공익형 주요사업 내용

아래 <표 4-1>은 557개 공익형 사업을 대상으로 현재 제공되는 서비스 내용을 중심으로 공익형 사업의 특성이 드러나는 대표사업으로 재분류한 결과임. 분석 결과, 환경개선사업이 전체 사업의 52.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특히 복합운영 사업단에 환경개선 사업이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점까지 고려하면, 환경개선사업은 전체 공익형 사업의 약 6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이러한 결과는 단순업무로 저학력 고연령 노인의 참여가 쉽고, 특정 수요처 필요 없이 다수의 인원 투입이 가능한 사업이 아직은 공익형 사업은 물론, 전체 노인일자리사업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줌. 또한 전체 사업의 12.0%는 특정 영역에 대해 전문적이고 특수화된 사업을 운영하기 보다는 거리 환경, 시설관리 및 지원, 교통질서 계도 등 복합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읍면동 여건에 따라 다양한 영역에 걸쳐 통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특성을 보이고 있음. 환경개선사업, 복합운영 사업 및 교통질서 확립사업의 세부사업은 아래 <표 4-2>~<표 4-4>와 같음.

22) 유형별 현황은 각 유형의 제공 서비스 내용과 서비스 제공 규모 및 관리방식 등에 대한 조사로 각 유형의 특성 및 유형내 업종별 현황 분석에 중점을 두어 조사함.



〈표 4-1〉 공익형 사업 대분류

	사업단 수		참여자 수	
	빈도	%	전체	%
환경개선사업	292	52.4	30,426	65.7
교통질서확립사업	85	15.3	3,658	7.9
공공기관 및 시설 관리 지원사업	44	7.9	1,553	3.4
복지 및 보육시설 관리 지원사업	31	5.6	955	2.1
기타 (지자체)행정지원 사업	24	4.3	528	1.1
복합운영	67	12.0	9,085	19.6
기타	7	1.3	76	0.2
결측값	7	1.3		
전체	557	100.0	46,281	100.0

〈표 4-2〉 환경개선 사업 세부분류

	빈도	%
거리, 도로변, 마을, 소공원 등 거리환경개선	235	59.6
산, 강, 하천 등 자연환경개선	28	7.1
재활용	13	3.3
꽃길조성	9	2.3
산불예방	15	3.8
문화재관리	30	7.6
순찰 및 계도	64	16.2
전체	394	100.0

* 중복응답 포함한 결과임

〈표 4-3〉 복합운영 사업 구성

	빈도	%
환경개선사업 + 교통질서확립사업	21	31.3
환경개선사업 + 공공 및 복지시설 관리사업	30	44.8
환경개선사업 + 교통질서확립사업 + 공공 및 복지시설 관리사업	16	23.9
전체	67	100.0

〈표 4-4〉 교통질서 확립사업 세부분류

	빈도	%
교통질서 및 주정차 단속계도	59	69.4
지하철 이용질서 계도	26	30.6
전체	85	100.0

다음으로 공공기관 및 시설관리사업과 복지 및 보육시설 관리지원 사업은 13.5%로, 공공시설 이용안내나 사서 보조, 복지시설 업무지원 및 보육시설의 급식지원등과 같은 업무보조도 병행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나, 대부분은 주로 학교, 공영주차장, 공공청사, 공동묘지, 도서관 등의 공공시설물의 관리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기타 행정지원 사업은 지자체의 행정 업무를 보조·지원하는 사업으로 조사원 파견사업, 담배꽂초무단투기 단속 도우미, 지방세송달 도우미, 장애인복지카드 배송도우미 사업 등이 있음. 공익형 사업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적지만 비교적 최근에 지자체를 중심으로 새롭게 개발되는 아이템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영역으로 기존의 취로사업 중심의 공익형 사업에 대한 비판을 불식시킬 수 있는 분야인 만큼, 세부적인 사업평가를 통해 사업의 효과성을 검증한 뒤 전국적인 공익형 사업 아이템으로 보급·확산시킬 필요 있음.

〈표 4-5〉 수행기관별 공익형 대표사업 비교

	환경개선 사업	교통질서 확립사업	공공기관 및 시설 관리 지원사업	복지 및 보육시설 관리 지원사업	기타 행정지원 사업	복합 운영	기타	전체
지자체	167	14	16	9	9	35	4	254
	65.7%	5.5%	6.3%	3.5%	3.5%	13.8%	1.6%	100.0%
	57.2%	16.5%	36.4%	29.0%	37.5%	52.2%	57.1%	46.2%
노인복지관	29	11	9	6	2	7	1	65
	44.6%	16.9%	13.8%	9.2%	3.1%	10.8%	1.5%	100.0%
	9.9%	12.9%	20.5%	19.4%	8.3%	10.4%	14.3%	11.8%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16	12	0	5	0	6	0	39
	41.0%	30.8%	.0%	12.8%	.0%	15.4%	.0%	100.0%
	5.5%	14.1%	.0%	16.1%	.0%	9.0%	.0%	7.1%
시니어클럽	24	7	4	1	1	2	0	39
	61.5%	17.9%	10.3%	2.6%	2.6%	5.1%	.0%	100.0%
	8.2%	8.2%	9.1%	3.2%	4.2%	3.0%	.0%	7.1%
대한노인회	43	37	6	8	3	6	2	105
	41.0%	35.2%	5.7%	7.6%	2.9%	5.7%	1.9%	100.0%
	14.7%	43.5%	13.6%	25.8%	12.5%	9.0%	28.6%	19.1%
실버인력뱅크	3	1	7	2	9	5	0	27
	11.1%	3.7%	25.9%	7.4%	33.3%	18.5%	.0%	100.0%
	1.0%	1.2%	15.9%	6.5%	37.5%	7.5%	.0%	4.9%
기타	10	3	2	0	0	6	0	21
	47.6%	14.3%	9.5%	.0%	.0%	28.6%	.0%	100.0%
	3.4%	3.5%	4.5%	.0%	.0%	9.0%	.0%	3.8%
전체	292	85	44	31	24	67	7	550
	53.1%	15.5%	8.0%	5.6%	4.4%	12.2%	1.3%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한편 지역별, 수행기관별로 사업내용상의 큰 차이는 없으나, 경기실버인력뱅크의 경우, 환경개선사업이 최소 40% 이상의 절대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타 기관에 비해 환경개선 사업은 10%대에 불과하고, 공공기관 시설지원 사업 및 기타 행정지원 사업의 비중이 각각 25.9%, 33.3%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표 4-5>. 이러한 결과는 학교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은빛지킴이 사업과 조사원 파견사업을 공동 아이টে็ม으로 추진한 결과로, 공익형 사업에 대한 인식 전환과 사업 특성화 측면에서 긍정적인 시도라 할 수 있음.

2) 공익형 사업관리방식

<표 4-6> 공익형 대표사업별 사업 관리방식

		환경 개선 사업	교통질서 확립사업	공공기관 및 공시설관리 지원사업	사회복지 및 보육시설관리 지원사업	기타 행정지원 사업	복합 운영	기타	전체
담당자 조회 또는 종례	비해당	85 68.0%	54 76.1%	27 96.4%	19 95.0%	12 80.0%	23 69.7%	3 100.0%	223 75.6%
	해당	40 32.0%	17 23.9%	1 3.6%	1 5.0%	3 20.0%	10 30.3%	0 0%	72 24.4%
	전체	125 100.0%	71 100.0%	28 100.0%	20 100.0%	15 100.0%	33 100.0%	3 100.0%	295 100.0%
참여자 활동일지 점검	비해당	32 25.6%	27 38.0%	4 14.3%	6 30.0%	0 0%	6 18.2%	1 33.3%	76 25.8%
	해당	93 74.4%	44 62.0%	24 85.7%	14 70.0%	15 100.0%	27 81.8%	2 66.7%	219 74.2%
	전체	125 100.0%	71 100.0%	28 100.0%	20 100.0%	15 100.0%	33 100.0%	3 100.0%	295 100.0%
수요처 (활동처) 담당자 관리	비해당	87 69.6%	41 57.7%	11 39.3%	8 40.0%	12 80.0%	24 72.7%	3 100.0%	186 63.1%
	해당	38 30.4%	30 42.3%	17 60.7%	12 60.0%	3 20.0%	9 27.3%	0 0%	109 36.9%
	전체	125 100.0%	71 100.0%	28 100.0%	20 100.0%	15 100.0%	33 100.0%	3 100.0%	295 100.0%
팀장제 활용	비해당	28 22.4%	28 39.4%	8 28.6%	11 55.0%	7 46.7%	8 24.2%	1 33.3%	91 30.8%
	해당	97 77.6%	43 60.6%	20 71.4%	9 45.0%	8 53.3%	25 75.8%	2 66.7%	204 69.2%
	전체	125 100.0%	71 100.0%	28 100.0%	20 100.0%	15 100.0%	33 100.0%	3 100.0%	295 100.0%
현장방문	비해당	17 13.6%	7 9.9%	6 21.4%	7 35.0%	6 40.0%	3 9.1%	2 66.7%	48 16.3%
	해당	108 86.4%	64 90.1%	22 78.6%	13 65.0%	9 60.0%	30 90.9%	1 33.3%	247 83.7%
	전체	125 100.0%	71 100.0%	28 100.0%	20 100.0%	15 100.0%	33 100.0%	3 100.0%	295 100.0%
기타	비해당	116 92.8%	60 84.5%	26 92.9%	18 90.0%	10 66.7%	30 90.9%	2 66.7%	262 88.8%
	해당	9 7.2%	11 15.5%	2 7.1%	2 10.0%	5 33.3%	3 9.1%	1 33.3%	33 11.2%
	전체	125 100.0%	71 100.0%	28 100.0%	20 100.0%	15 100.0%	33 100.0%	3 100.0%	295 100.0%

* 기타 : 월례회의, 간담회 등

〈표 4-6〉은 무응답 7개 사업을 제외한 총 550개 사업단에서 지자체 사업 254개를 제외한 296개 사업 중, 무응답 1개 사업을 제외한 총 295개 사업의 사업 관리방식을 분석한 결과임²³⁾.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관리방식은 참여자 활동일지 점검 및 팀장제 활용, 현장방문 등으로 이 세 가지 방식은 사실상 실무자의 업무부담이 비교적 낮은 방식임. 특히 현장방문의 경우, 지속적이 아닌 불시의 일회성 방문이 대부분으로, 많은 투입인원이 비교적 넓은 거리에 분포하여 사업이 진행되나 타 업무와 겹치하고 있는 1인 실무자가 관리하는 현실상 불가피한 결과임. 이와 같은 맥락에서 ‘담당자의 조회 및 종례, 수요처 담당자의 관리’처럼 담당자의 업무부담이 비교적 높은 방식은 대체로 해당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자의 경우 참여자의 이동문제가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며, 후자의 경우, 특정 활동처나 수요처가 없는 경우에는 활용 자체가 불가능한 방식임.

한편 지역규모별, 수행기관별 사업운영관리 방식은 아래 〈표 4-7〉~〈표 4-8〉과 같음. 평균 3가지의 사업관리방식이 활용되고 있는데, 큰 차이는 없으나 농어촌과 대한노인회의 관리방식 가지 수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남.

〈표 4-7〉 지역규모별 사업 관리방식 가지 수

	분석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대도시	103	3.30	1.046	1	5
중소도시	138	2.93	.994	1	5
농어촌	55	2.67	1.019	1	4
전체	296	3.01	1.040	1	5

〈표 4-8〉 수행기관별 사업 관리방식 가지 수

	분석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노인복지관	64	3.39	.902	1	5
종합사회복지관/장애인복지관	38	3.32	1.188	1	5
시니어클럽	40	3.35	1.051	1	5
대한노인회	106	2.62	.941	1	5
실버인력뱅크	27	3.00	1.000	1	5
기타	21	2.62	.921	1	4
전체	296	3.01	1.040	1	5

23) 지자체가 수행기관인 경우, 읍면동 단위에서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시군구 담당자는 정확한 사업 관리 방식 파악이 불가하므로 지자체 수행 사업은 조사에서 제외함.



결과적으로 위의 분석결과에서도 나타나듯이, 공공시설 및 보육·복지 시설 관리지원 사업은 활동처 담당자의 관리를 통해서, 그리고 결과물을 필요로 하는 각종 조사사업이 다수를 차지하는 기타 행정지원사업은 개인의 구체적인 활동 내용이 증빙된 참여자 활동일지를 통해 참여자 관리가 가능하나, 공익형 사업의 다수를 차지하는 환경개선사업 및 교통질서 확립사업은 여전히 참여자 관리에 있어 많은 허점을 드러내고 있는 영역임. 이 영역은 실무자 1인이 광범위한 지역 내에서 활동하는 다수의 참여자를 관리하기 어렵다는 본질적인 한계를 지님과 동시에 근무태만 및 특히 안전사고의 발생위험이 높다는 딜레마를 안고 있음. 현재로서는 팀장제의 효율적 운영과 참여자의 소양교육 및 안전교육 강화를 통한 책임감 및 안전의식 고취, 산재보험료율의 완화 등이 차선책으로 보이며, 참여자 관리 측면에 있어 이에 대한 부분이 지도점검 또는 사업평가 시에 대폭 반영되어야 할 것임.

3) 공익형 사업 건의사항

아래 <표 4-9>는 공익형 사업의 개선 및 지원 요구사항 등에 대한 108개 기관의 128개 응답을 재분류한 결과임. 기타를 제외한 제1순위는 부대경비 증액으로 나타났는데, 높은 산재보험료로 인한 부대경비 부족이 가장 큰 원인으로, 산재보험률 조정 또는 예산 증액을 요구하고 있음. 다음으로는 인건비 증액과 사업기간 연장이 각각 13.3%, 12.5%로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생계 곤궁자가 다수 참여하는 사업 특성이 반영된 결과이나 일부는 임금의 하향조정, 또는 부대경비 절감을 통해서라도 사업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있었음. 한편 공익형 사업의 비교적 높은 경쟁률로 인해 일자리 수의 확대 및 참여자 선발의 합리적 기준 마련 등이 12.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기타 내용으로는 근무일수 하향 조정, 전담인력 년초 지원, 노인특성상 개인 일정이 많음에 따라 근무조정 관련 지침이 필요하다는 견해 등이 제시되었음.

〈표 4-9〉 공익형 사업 건의사항

	빈도	%
부대경비 증액 및 산재보험률 조정	23	18.0
인건비 증액	17	13.3
사업기간 연장	16	12.5
관공서 연계 및 협조	6	4.7
아이템 개발	6	4.7
참여자 교육 강화	9	7.0
지역주민 홍보 및 인식개선	7	5.5
일자리 수 확대	9	7.0
참여자 합리적 선발기준 마련	7	5.5
기타	28	21.9
전체	128	100.0

2. 교육형 사업 현황

1) 교육형 주요사업 내용

〈표 4-10〉은 본 조사에 응답한 431개 노인일자리 교육형 사업의 세부 사업 분류로, 교육 강사 사업이 전체 사업의 72.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해설사 사업 20.2%, 기타 사업으로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노인학대예방사업 등이 있음. 교육강사 사업의 교육대상자²⁴⁾ 분석 결과, 아동 및 청소년만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전체 사업단의 32.9%,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단은 22.4%로 나타났으며, 이 두 계층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단은 39.9%로 나타나, 교육강사 사업의 교육대상 다수는 아동·청소년 및 노인인 것으로 나타남²⁵⁾〈표 4-11〉. 이와 같은 결과는 주로 수요처 확보의 용이성에 기인하는

24) 전문해설사 및 기타 사업은 실제적인 주 이용 대상이 1,3세대 또는 노인이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전 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어, 교육강사 사업만을 대상으로 교육대상을 분석함.

25) 노인일자리 교육강사 사업으로는 학습지도, 전통문화 및 예절지도, 여가지도가 복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우가 많아 교육내용에 따른 사업분류는 생략함. 대상 또한 특정 계층에 한정시키기 보다는 모든 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하게 진행되고는 있으나 동화구연 및 아동극, 학습지도(한글, 한문, 독서 등), 전통문화 및 예절지도는 주로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여가지도(노래, 댄스, 미술, 공예, 레크레이션, 게이트볼, 체조)는 주로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것으로,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경로당 등의 인프라가 지역 내에 필수적으로 분포되어 있으며, 대상자 특성상 다소 비전문적인 노인강사의 접근이 비교적 가능하기 때문임. 특수계층의 다수는 외국여성 이민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중소도시 및 군지역의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수행되고 있으며,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고정적인 특정 수요처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일 가능성 높음. 한편 해설사 사업의 경우 크게 숲해설과 문화재해설, 그리고 기타해설로 분류되는데, 기타해설로는 바다해설, 생태해설, 체험학습, 역사 및 회관 등의 특정 시설 해설 등이 있음<표 4-12>.

<표 4-10> 교육형 주요사업

	사업단 수		참여자 수	
	빈도	%	빈도	%
전문해설사	87	20.2	2,300	20.0
교육강사	313	72.6	7,963	69.2
복합운영(전문해설사 + 교육강사)	18	4.2	881	7.7
기타(학대예방, 교육홍보 등)	13	3.0	357	3.1
전체	431	100.0	11,501	100.0

<표 4-11> 교육강사사업 교육대상 분류

	빈도	%
아동 및 청소년	103	32.9
노인	70	22.4
아동 및 청소년, 노인	125	39.9
일반인 전 계층	10	3.2
특수계층(외국인, 장애아동 등)	5	1.6
전체	313	100.0

<표 4-12> 해설사 사업 세부 분류

해설사 분류	빈도	%
숲해설	40	46.0
문화재 해설	35	40.2
기타해설	12	13.8
전체	87	100.0

지역규모별로는 농어촌 지역에서 교육강사사업이 85.9%로, 전문해설사 사업은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을 차지하며, 교육대상으로는 노인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표 4-13~표 4-14>. 수행기관별로는 노인복지관이 교육강사사업, 시니어 클럽은 전문해설사업에서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음<표 4-15>.

〈표 4-13〉 지역규모별 교육형 주요사업

	전문해설사	교육강사	복합운영	기타(학대예방, 교육홍보 등)	전체
대도시	33	122	4	6	165
	20.0%	73.9%	2.4%	3.6%	100.0%
	37.9%	39.0%	22.2%	46.2%	38.3%
중소도시	46	117	10	8	181
	25.4%	65.2%	5.5%	3.9%	100.0%
	52.9%	37.7%	55.6%	53.8%	42.0%
농어촌	8	73	4	0	85
	9.4%	85.9%	4.7%	.0%	100.0%
	9.2%	23.3%	22.2%	.0%	19.7%
전체	87	312	18	14	431
	20.2%	72.6%	4.2%	3.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4-14〉 지역규모별 교육강사 대상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전체
아동 및 청소년	39	47	17	103
	32.0%	39.8%	23.3%	32.9%
노인	25	23	22	70
	20.5%	19.5%	30.1%	22.4%
아동 및 청소년, 노인	55	43	27	125
	45.1%	36.4%	37.0%	39.9%
일반인 전 계층	3	2	5	10
	2.5%	1.7%	6.8%	3.2%
특수계층(외국인, 장애아동 등)	0	3	2	5
	.0%	2.5%	2.7%	1.6%
전체	122	118	73	313
	100.0%	100.0%	100.0%	100.0%



〈표 4-15〉 수행기관별 교육형 사업내용

	전문해설사	교육강사	복합운영	기타	전체
지자체	1	29	1	1	32
	3.1%	90.7%	3.1%	3.1%	100.0%
	1.1%	9.6%	5.6%	8.0%	7.4%
노인복지관	21	142	8	4	175
	12.0%	81.1%	4.6%	2.3%	100.0%
	24.1%	45.4%	44.4%	29.0%	40.6%
사회복지관	2	42	2	0	46
	4.3%	91.3%	4.3%	.0%	100.0%
	2.3%	13.4%	11.1%	.0%	10.7%
시니어클럽	35	22	3	2	62
	56.5%	35.5%	4.8%	3.2%	100.0%
	40.2%	7.0%	16.7%	15.0%	14.4%
대한노인회	19	39	1	0	59
	32.2%	66.1%	1.7%	.0%	100.0%
	21.8%	12.5%	5.6%	.0%	13.7%
기타	9	38	3	7	57
	15.8%	66.7%	5.3%	12.3%	100.0%
	10.3%	12.1%	16.7%	50.0%	13.2%
전체	87	312	18	14	431
	20.2%	72.6%	4.2%	3.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 타 유형 업무내용 포함 여부

아래 〈표 4-16〉은 교육 서비스 이외의 타 유형 업무내용을 병행하여 실시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응답 분석 결과로, 약 10.4%가 타 유형의 업무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수요처 확보 부족 또는 수요처 사정으로 인한 수업시간 부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임.

〈표 4-16〉 타 유형 업무내용 포함 여부

	빈도	%
타 유형 내용 포함	45	10.4
타 유형 내용 미포함	380	88.2
결측값	6	1.4
전체	431	100.0

한편 지역별로는 농어촌 지역이 약 13.3%로 타 지역에 비해 약간 높게 나타났고, 타 유형의 업무내용으로는 환경관리가 53%, 급식지원이나 보육지원 등과 같은 업무지원 및 영농 등이 24%로 나타났으며, 기타 내용으로는 수지침 진료 및 귀가지도 등이 있음.

〈표 4-17〉 지역규모별 타 유형 업무내용 포함 여부

	타 유형 업무내용 포함	타 유형 업무내용 미포함	전체
대도시	14	149	163
	8.6%	91.4%	100.0%
	31.1%	39.2%	38.4%
중소도시	20	159	179
	11.2%	88.8%	100.0%
	44.4%	41.8%	42.1%
농어촌	11	72	83
	13.3%	86.7%	100.0%
	24.4%	18.9%	19.5%
전체	45	380	425
	10.6%	89.4%	100.0%
	100.0%	100.0%	100.0%

〈표 4-18〉 타 유형 업무 내용

		빈도	%
환경관리	미포함	21	46.7
	포함	24	53.3
	전체	45	100.0
기타 업무지원	미포함	34	75.6
	포함	11	24.4
	전체	45	100.0
영농	미포함	34	75.6
	포함	11	24.4
	전체	45	100.0
기타	미포함	36	80.0
	포함	9	20.0
	전체	45	100.0



3) 교육강사 사업 수요처²⁶⁾

〈표 4-19〉 지역규모별 수요처 종류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전체
어린이집 유무	없음	48	47	50	145
		39.3%	40.2%	68.5%	46.5%
	있음	74	70	23	167
		60.7%	59.8%	31.5%	53.5%
전체	122	117	73	312	
	100.0%	100.0%	100.0%	100.0%	
유치원 유무	없음	69	80	62	211
		56.6%	68.4%	84.9%	67.6%
	있음	53	37	11	101
		43.4%	31.6%	15.1%	32.4%
전체	122	117	73	312	
	100.0%	100.0%	100.0%	100.0%	
지역아동센터 유무	없음	78	69	55	202
		63.9%	59.0%	75.3%	64.7%
	있음	44	48	18	110
		36.1%	41.0%	24.7%	35.3%
전체	122	117	73	312	
	100.0%	100.0%	100.0%	100.0%	
공부방 및 방과후 교실 유무	없음	87	86	58	231
		71.3%	73.5%	79.5%	74.0%
	있음	35	31	15	81
		28.7%	26.5%	20.5%	26.0%
전체	122	117	73	312	
	100.0%	100.0%	100.0%	100.0%	
초등학교 유무	없음	100	94	51	245
		82.0%	80.3%	69.9%	78.5%
	있음	22	23	22	67
		18.0%	19.7%	30.1%	21.5%
전체	122	117	73	312	
	100.0%	100.0%	100.0%	100.0%	

26) 노인학대예방사업이 주를 이루는 기타사업과 해설사 사업은 지속적인 수요처 파견이라기 보다는 1회성 파견이 다수로, 수요처 수의 분석은 큰 의미가 없으므로, 교육강사 사업에 한하여 수요처 분석함.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전체
경로당 유무	없음	107	107	59	273
		87.7%	91.5%	80.8%	87.5%
	있음	15	10	14	39
		12.3%	8.5%	19.2%	12.5%
	전체	122	117	73	312
		100.0%	100.0%	100.0%	100.0%
경로대학 유무	없음	75	79	38	192
		61.5%	67.5%	52.1%	61.5%
	있음	47	38	35	120
		38.5%	32.5%	47.9%	38.5%
	전체	122	117	73	312
		100.0%	100.0%	100.0%	100.0%
복지기관 유무	없음	53	53	46	152
		43.4%	45.3%	63.0%	48.7%
	있음	69	64	27	160
		56.6%	54.7%	37.0%	51.3%
	전체	122	117	73	312
		100.0%	100.0%	100.0%	100.0%
문화시설 및 기타 유무	없음	94	81	45	220
		77.0%	69.2%	61.6%	70.5%
	있음	28	36	28	92
		23.0%	30.8%	38.4%	29.5%
	전체	122	117	73	312
		100.0%	100.0%	100.0%	100.0%

〈표 4-19〉는 312개 교육강사 사업의 수요처 분석 결과임. 전체 사업단의 53.5%가 어린이집을 수요처로 확보하고 있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뒤를 이어 복지기관이 51.3%로 나타나고 있는데, 복지기관의 경우, 기관 이용자인 아동 및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사업수행기관과 동일기관에 강사로 활용되는 경우도 다수 존재함. 결과적으로 노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로당 및 경로대학은 각각 12.5%, 38.5%에 불과한 가운데, 전반적으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수요처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지역규모별로는 농어촌 지역이 타 지역에 비해 초등학교를 제외한 아동관련 시설의 수요처 확보 비율이 낮게 나타나고, 경로당 및 경로대학의 확보비율은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높은 고령화와 인프라 부족이라는 농어촌 현실이 반영된 결과임.



한편 교육강사 사업의 총 수요처 수는 <표 4-20>과 같음. 사업단별 수요처 수는 기본적으로 참여자 수에 따른 편차가 존재하지만, 이외에도 각각의 수요처마다 1인씩 파견되는 경우, 참여자 1인이 다수의 수요처에 파견되는 경우, 하나의 수요처에 여러 과목, 여러 명이 파견되는 경우, 2인 1조로 파견되는 경우 등 사업단 마다 다양한 변수들이 존재하여, 본 조사 자료를 근거로 전국 노인일자리 교육강사 사업의 정확한 수요처 개수를 예측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나, 복합운영 사업단과 무응답사업 및 미제출 사업단 58개를 포함한 전국 노인일자리사업 350여개 교육강사 사업단의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수요처는 대략 7,000여개에 이를 것으로 예측됨.

한편 지역별로 평균 수요처 수를 비교한 결과 도시 규모가 클수록 수요처 수가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표면적으로는 참여자 수에 따른 차이지만, 사업단 구성 당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참여자 수를 결정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근본적으로는 지역적 여건에 따른 차이로 볼 수 있음<표 4-21>.

<표 4-20> 교육강사 사업 총 수요처 수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 아동 센터	공부방 / 방과후 교실	초등학교	경로 대학	경로당	복지 기관	문화 시설	기타	총 수요처
전체	2,950	409	432	140	194	86	1,306	476	32	283	6,308

<표 4-21> 지역규모별 교육강사 사업 평균 수요처 수

	사례수	평균 참여자 수	평균 수요처 수
대도시	121	31.77	25.10
중소도시	116	25.97	22.03
농어촌	66	14.65	10.83
전체	303	25.66	20.82

4) 교육강사 사업 강사로 지급 여부

〈표 4-22〉~〈표 4-25〉는 312개 교육강사 사업의 강사로 지급 추진 사항 분석 결과임. 응답사업의 약 62.3%가 시기상조라 생각되어 요청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는데, 전화확인 결과 기타라고 응답한 다수 사업도 시기상조 여부와 상관없이 강사로 요청 자체를 아예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전체 교육강사사업의 약 70%는 수요처로부터 강사로 지급 요청을 추진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한편 예산기간 동안에도 지속적으로 강사료를 지급받고 있는 사업은 9.3%, 비예산기간에 지급하기로 한 수요처는 7.3%로, 전체 교육강사 사업의 16.6%가 강사로 지급이 진행되고 있고, 사업운영이 어느 정도 안정화된 3년차 이상 사업단에서 추진비율이 높게 나타남. 지역규모별로는 수요처가 강사로 지급중이거나 지급예정인 사업의 비율이 농어촌 지역이 낮았고, 수행 기관별로는 시니어클럽과 노인회가 높게 나타나고 있음.

〈표 4-22〉 수요처 강사로 지급 추진 사항(8월말 기준)

	빈도	%	
유효	시기상조라 판단되어 강사로 요청하지 않음	188	62.3
	비예산기간의 예산 확보로 수요처에 요청하지 않음	12	4.0
	수요처에 요청하였으나 확답 듣지 못함	27	8.9
	비예산 기간에만 받기로 함	22	7.3
	현재 일정 금액을 수요처로부터 지급받고 있음	28	9.3
	기타	25	8.3
	전체	302	100
결측값	10		
전체	312		



〈표 4-23〉 사업 년차별 수요처 강사로 지급 추진 사항

	4년차 이상	3년차	2년차	1년차	전체
시기상조라 판단되어 강사로 미요청	41	25	53	69	188
	44.1%	64.1%	65.4%	77.5%	62.3%
예산확보로 미요청	4	2	4	2	12
	4.3%	5.1%	4.9%	2.2%	4.0%
요청하였으나 수요처 무응답	15	5	4	3	27
	16.1%	12.8%	4.9%	3.4%	8.9%
비예산 기간 동안에만 지급 예정	14	1	4	3	22
	15.1%	2.6%	4.9%	3.4%	7.3%
현재 지급받고 있음	15	4	5	4	28
	16.1%	10.3%	6.2%	4.5%	9.3%
기타	4	2	11	8	25
	4.3%	5.1%	13.6%	9.0%	8.3%
전체	93	39	81	89	302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4-24〉 지역규모별 수요처 강사로 지급 추진 사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전체
시기상조라 판단되어 강사로 미요청	70	69	49	188
	37.2%	36.7%	26.1%	100.0%
	57.4%	60.0%	75.4%	62.3%
예산확보로 미요청	3	7	2	12
	25.0%	58.3%	16.7%	100.0%
	2.5%	6.1%	3.1%	4.0%
요청하였으나 수요처 무응답	14	12	1	27
	51.9%	44.4%	3.7%	100.0%
	11.5%	10.4%	1.5%	8.9%
비예산 기간 동안에만 지급 예정	13	8	1	22
	59.1%	36.4%	4.5%	100.0%
	10.7%	7.0%	1.5%	7.3%
현재 지급받고 있음	11	11	6	28
	39.3%	39.3%	21.4%	100.0%
	9.0%	9.6%	9.2%	9.3%
기타	11	8	6	25
	44.0%	32.0%	24.0%	100.0%
	9.0%	7.0%	9.2%	8.3%
전체	122	115	65	302
	40.4%	38.1%	21.5%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4-25〉 수행기관별 수요처 강사료 지급 추진 사항

	지자체	노인 복지관	사회 복지관	시니어 클럽	대한 노인회	기타	전체
시기상조라 판단되어 강사료 미요청	18	81	28	11	21	29	188
	9.6%	43.1%	14.9%	5.9%	11.2%	15.4%	100.0%
	78.3%	57.0%	66.7%	50.0%	56.8%	80.6%	62.3%
예산확보로 미요청	1	8	1	0	1	1	12
	8.3%	66.7%	8.3%	.0%	8.3%	8.3%	100.0%
	4.3%	5.6%	2.4%	.0%	2.7%	2.8%	4.0%
요청하였으나 수요처 무응답	0	21	2	3	0	1	27
	.0%	77.8%	7.4%	11.1%	.0%	3.7%	100.0%
	.0%	14.8%	4.8%	13.6%	.0%	2.8%	8.9%
비예산 기간 동안에만 지급 예정	0	15	3	2	1	1	22
	.0%	68.2%	13.6%	9.1%	4.5%	4.5%	100.0%
	.0%	10.6%	7.1%	9.1%	2.7%	2.8%	7.3%
현재 지급받고 있음	0	10	4	5	7	2	28
	.0%	35.7%	14.3%	17.9%	25.0%	7.1%	100.0%
	.0%	7.0%	9.5%	22.7%	18.9%	5.6%	9.3%
기타	4	7	4	1	7	2	25
	16.0%	28.0%	16.0%	4.0%	28.0%	8.0%	100.0%
	17.4%	4.9%	9.5%	4.5%	18.9%	5.6%	8.3%
전체	23	142	42	22	37	36	302
	7.6%	47.0%	13.9%	7.3%	12.3%	11.9%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한편 현재 강사료를 지급받고 있다고 응답한 28개 사업단 중 무응답 2개 사업을 제외한 26개 사업단의 강사료 지급 수요처는 총 586개 기관으로, 참여 수요처가 많은 어린이집이 427개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음.

〈표 4-26〉 강사료 지급 수요처 개수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 아동 센터	공부방 / 방과후 교실	초등 학교	경로 대학	경로 당	복지 기관	문화 시설	기타	총 수요처
강사료 지급 수요처	427	41	6	16	19	3	40	22	0	12	586
전체 파견 수요처	2,950	409	432	140	194	86	1,306	476	32	283	6,308



5) 전문해설사업 주요 운영방식

전체 87개 전문해설사업중 무응답 4개 사업을 제외한 83개 해설사 사업의 운영방식 응답결과는 <표 4-27>과 같음. 수요처 의뢰접수로 수요가 확보되는 경우 해설 제공이 31.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활동 장소측과 협약 후 해설 제공이 26.5%, 별도의 협약이나 수요처 확보 없이 활동장소에 대기 후 해설을 제공하는 경우는 16.9%인 것으로 나타남. 지역규모별로는 도시지역으로 갈수록 수요처 활용 인프라가 많은 만큼, 수요처 의뢰접수 및 확보 후 해설을 제공하는 비율이 높고, 농어촌 지역으로 갈수록 별도의 수요처 확보 없이 활동장소에 대기 후 수요발생시 해설을 제공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남.

<표 4-27> 해설사 운영방식

	빈도	%
수요의뢰 접수 후 해설제공	26	31.3
활동장소와 협약 후 해설 제공	22	26.5
수요 의뢰 또는 협약 없이 대기 후 해설 제공	14	16.9
수요처 의뢰접수와 활동장소측과의 협약 후 대기 병행	8	9.6
수요처 의뢰접수와 별도협약 없이 대기 병행	10	12.0
기타(복합운영)	3	3.6
전체	83	100.0

<표 4-28> 지역규모별 해설사 운영방식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전체
수요의뢰 접수 후 해설제공	11	11	2	24
	35.5%	25.0%	25.0%	28.9%
활동장소와 협약 후 해설 제공	7	14	1	22
	22.6%	31.8%	12.5%	26.5%
수요의뢰 또는 협약 없이 대기 후 해설 제공	2	9	3	14
	6.5%	20.5%	37.5%	16.9%
수요처 의뢰접수와 활동장소측과의 협약 후 대기 병행	6	2	0	8
	19.4%	4.5%	.0%	9.6%
수요처 의뢰접수와 별도협약 없이 대기 병행	2	6	2	10
	6.5%	13.6%	25.0%	12.0%
기타(복합운영)	3	2	0	5
	9.7%	4.5%	.0%	6.0%
전체	31	44	8	83
	100.0%	100.0%	100.0%	100.0%

〈표 4-29〉는 무응답 2개 사업을 제외한 85개 해설사 사업의 유료화 지급 추진 현황으로 교육강사사업에 비해 추진비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어, 미요청 사업단이 71.8%에 이르고, 현재 지급받고 있거나, 비예산 기간 지급 예정인 사업은 전체 사업의 10% 정도에 불과함. 수행기관 별로는 시니어클럽이 강사로 지급 사업단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4-29〉 전문해설사업 유료화 지급 추진 사항

		빈도	%
강사로 시기상조라 판단되어 미요청	비해당	24	28.2
	해당	61	71.8
	전체	85	100.0
예산확보로 미요청	비해당	84	98.8
	해당	1	1.2
	전체	85	100.0
수요처 무응답	비해당	80	94.1
	해당	5	5.9
	전체	85	100.0
비예산 기간 지급 예정	비해당	84	98.8
	해당	1	1.2
	전체	85	100.0
현재 지급받고 있음	비해당	76	89.4
	해당	9	10.6
	전체	85	100.0
기타	비해당	77	90.6
	해당	8	9.4
	전체	85	100.0
전체		87	

6) 교육형 건의사항

〈표 4-30〉은 노인일자리 교육형 사업에 대한 건의사항 및 지원요구사항에 대해 146개 기관의 총 203개 응답을 분석한 결과임. 참여자 교육체계의 확충 및 지원이 31.5%로 가장 높게 나타나는데, 교육비 지원 사항까지 포함시킬 경우, 약 40%가 참여자의 교육관련 지원을 요청하고 있음. 다음으로는 사업기간



연장 및 기간의 탄력적 운영이 15.3%로, 수요처의 요청에 의한 것이 다수이며, 학기와 방학 등을 고려한 탄력적 기간 조정과 사업연장 운영으로 지속적인 교육서비스의 제공을 요구하고 있음. 기타 내용으로는 유관기관 지역협의체 운영을 통한 정보공유, 기타 사업비 예산 증액, 전담인력 (적시) 지원 확대 및 강화, 일자리 수 확대 및 준비시간의 수업시간 인정 등이 있음.

〈표 4-30〉 교육형 사업 건의사항

	빈도	%
참여자 교육체계 확충 및 지원	64	31.5
교육비 지원	18	8.9
참여자 인건비 증액	16	7.9
관공서 연계 협조 및 유사사업 조정	18	8.9
수요처 협조(인식 및 태도 개선)	8	3.9
사업기간 연장 및 기간 탄력 운영	31	15.3
참여자 이동문제 개선	12	5.9
지역주민 홍보 및 인식개선	7	3.4
참여자 합리적 선발 기준안 마련	3	1.5
아이템 개발	4	2.0
기타	22	10.8
전체	203	100.0

III 3. 복지형 사업 현황

1) 복지형 주요사업 내용

〈표 4-31〉~〈표 4-32〉는 본 조사에 응답한 770개 노인일자리 복지형 사업의 주요사업 분류 결과로, 실무자 개인의 주요사업 분류에 대한 정의가 다양하여, 조사표 상에 응답한 사업분류가 아닌,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의 내용에 따라 재분류함. 전체 사업중 재가 노노케어가 53.5%, 시설 노노케어가 9%로 약 60%가 노노케어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고, 참여자 기준으로는 약 74%가 노노케어 사업에 참여하고 있음. 한편 주로 노인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11.5%, 기타 노인복지지원사업이 7.7%로 약 80%가 주로 노인을 대상으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음.

〈표 4-31〉 노인일자리 복지형 주요사업

		사업단 수		참여자 수	
		빈도	%	빈도	%
유효	재가 노노케어	409	53.5	16,835	64.5
	시설 노노케어	69	9.0	2,661	10.2
	주거환경개선사업	88	11.5	1,516	5.8
	기타 노인복지지원사업	59	7.7	1,482	5.7
	아동청소년지원사업	50	6.5	1,404	5.4
	문화복지지원사업	32	4.2	643	2.5
	장애인복지지원사업	9	1.2	269	1.0
	교통안전지원사업	33	4.3	1065	4.1
	기타	16	2.1	212	0.8
	전체	765	100.0	26,087	100.0
결측값	5				
전체	770		26,087		

* 문화복지지원사업 : 아동극, 악단, 풍물 공연, 전통문화 교육 등

〈표 4-32〉 노인복지지원²⁷⁾ 세부분류

	빈도	%
도시락 배달	15	25.4
건강서비스(침, 뜸, 안마 등)	13	22.0
무선페이징 관리	8	13.6
상담 및 학대예방	9	15.3
기타	14	23.7
전체	59	100.0

* 기타 : 이미용, 장수복, 경로식당급식보조, 행정업무대행

재가 노노케어는 일반 노노케어와 단순안전지킴이 활동으로 분류될 수 있음. 본 분석에서는 가사지원과 정서지원이 포함되어 있거나, 가사와 정서지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위생 및 치료지원, 행정업무 및 병원동행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에는 일반 노노케어로, 단순히 안부확인 전화나 요구르트 배달 등의 서비스만 제공되는 경우에는 단순안전지킴이로 분류함. 현재 전산 상에서는

27) 별도의 서비스 제공 없이 위의 서비스만 제공되는 경우에는 기타 노인복지지원으로 분류하며, 가사 및 정서지원 또는 기타 부가적 서비스와 함께 종합적으로 제공되는 경우에는 노노케어로 분류함



두 가지 모두가 노노케어로 분류되어 있고, 조사표 상에도 다수가 노노케어로 응답되었으나, 제공되는 서비스의 양적, 질적 차이를 볼 때, 이 두 사업은 명확히 구분되어 관리될 필요 있음.

단순안전지킴이를 제외한 361개 일반 노노케어 사업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보면, 가사지원과 정서지원이 90% 이상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위생지원과 행정업무 및 병원 동행 등이 주요 제공 서비스인 것으로 나타났고, 치료지원과 같은 전문적인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단은 9.4% 정도인 것으로 나타남. 한편 주력과 총 제공 서비스 모두에서 가사지원이 정서 지원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는 있으나, 현장조사 결과에서는 정서지원이 노인일자리 복지형 사업의 주요 서비스이며, 수치와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수혜자에게 도움이 가는 부분이라 밝히고 있음. 이와 같은 결과는 다양한 가사지원 서비스가 난립하는 상황에서 또래 노인의 말벗 제공이 노인들만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기 때문으로 보임.

〈표 4-33〉 재가 노노케어 사업구성

	빈도	%
일반 노노케어	361	88.3
단순안전지킴이	48	11.7
전체	409	100.0
시설 노노케어 혼합운영	78	19.1
재가 노노케어만 운영	331	80.9
전체	409	100.0
주거환경개선 혼합운영	23	6.0
재가 노노케어만 운영	386	94.0
전체	409	100.0

〈표 4-34〉 재가 노노케어 주요 제공 서비스 내용

		주력 서비스		총 제공 서비스 ²⁸⁾	
		빈도	%	빈도	%
도시락 배달	비해당	327	90.6	291	80.6
	해당	34	9.4	70	19.4
	전체	361	100.0	361	100.0
가사지원 (청소, 세탁, 반찬 만들기 등)	비해당	63	17.5	16	4.4
	해당	298	82.5	345	95.6
	전체	361	100.0	361	100.0
정서지원 (말벗, 상담 등)	비해당	99	27.4	23	6.4
	해당	262	72.6	338	93.6
	전체	361	100.0	361	100.0
위생지원 (세면, 세발, 목욕 등)	비해당	236	65.4	183	50.7
	해당	125	34.6	178	49.3
	전체	361	100.0	361	100.0
행정업무 지원 및 병원동행	비해당	306	84.8	191	52.9
	해당	55	15.2	170	47.1
	전체	361	100.0	361	100.0
치료지원 (투약관리, 욕창방지, 재활치료 등)	비해당	341	94.5	327	90.6
	해당	20	5.5	34	9.4
	전체	361	100.0	361	100.0
주거환경개선(집수리)	비해당	351	97.2	338	93.6
	해당	10	2.8	23	6.4
	전체	361	100.0	361	100.0
건강서비스 지원 (뜸, 침, 안마 등)	비해당	344	95.3	314	87.0
	해당	17	4.7	47	13.0
	전체	361	100.0	361	100.0

2) 수혜자 발굴방식 및 사업관리 방식

〈표 4-35〉~〈표 4-36〉은 지자체 수행 사업을 제외한 665개 사업 중, 무응답 12(9)개 사업을 제외한 653(656)개 사업의 수혜자(기관) 발굴방식 및 사업관리 방식으로, 한 가지 방법보다 여러 가지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대표적으로 재가 노노케어 사업에 대해서만 살펴보면, 수혜자 발굴의 경우 기관 내 타 부서의 협조와 읍면동의 협조 방식이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이고 있고,

28) 주력 서비스는 조사표 상에 주력 서비스라고 응답한 경우, 총 제공 서비스는 주력 서비스나 부가 서비스 둘 중 한 곳이라도 해당된다고 응답한 경우임



지역민 추천과 참여자의 직접 발굴도 40% 이상의 적지 않은 사업단에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방식은 읍면동 협조방식과 함께 농어촌 지역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사업관리 방식으로는 참여자 활동일지와 월례회의 및 간담회 활용 방식이 각각 92.4%, 77, 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수혜자 전화 및 방문도 71.1%의 높은 빈도를 보이고 있으나, 정기적이 아닌 일회성인 경우가 다수일 것으로 추정됨. 복지형 사업도 공익형 사업과 마찬가지로, 특정 시설 및 기관을 거점으로 활동이 이루어지는 사업은 관리에 큰 문제가 없으나 1대 1로 활동해야 하는 재가 노노케어는 사업관리가 쉽지 않아 근무태만의 문제가 제기 되기 쉬움.

〈표 4-35〉 수혜자(기관) 발굴 방식

	기관 내 타부서 협조		읍면동 협조		지역 내 기관 협조		지역민 추천		참여자 직접 발굴		기타		전체
	비해당	해당	비해당	해당	비해당	해당	비해당	해당	비해당	해당	비해당	해당	
재가 노노케어	115	228	143	200	232	111	189	154	204	139	322	21	343
	33.5%	66.5%	41.7%	58.3%	67.6%	32.4%	55.1%	44.9%	59.5%	40.5%	93.9%	6.1%	100.0%
시설 노노케어	30	31	45	16	32	29	49	12	47	14	54	7	61
	49.2%	50.8%	73.8%	26.2%	52.5%	47.5%	80.3%	19.7%	77.0%	23.0%	88.5%	11.5%	100.0%
주거 환경개선	40	39	28	51	42	37	43	36	48	31	76	3	79
	50.6%	49.4%	35.4%	64.6%	53.2%	46.8%	54.4%	45.6%	60.8%	39.2%	96.2%	3.8%	100.0%
기타노인 복지지원	20	32	29	23	38	14	41	11	39	13	46	6	52
	38.5%	61.5%	55.8%	44.2%	73.1%	26.9%	78.8%	21.2%	75.0%	25.0%	88.5%	11.5%	100.0%
아동 청소년 지원	30	11	25	16	24	17	35	6	35	6	30	11	41
	73.2%	26.8%	61.0%	39.0%	58.5%	41.5%	85.4%	14.6%	85.4%	14.6%	73.2%	26.8%	100.0%
문화복지 지원	20	9	21	8	17	12	22	7	17	12	21	8	29
	69.0%	31.0%	72.4%	27.6%	58.6%	41.4%	75.9%	24.1%	58.6%	41.4%	72.4%	27.6%	100.0%
장애인 복지 지원	6	3	5	4	1	8	7	2	7	2	9	0	9
	66.7%	33.3%	55.6%	44.4%	11.1%	88.9%	77.8%	22.2%	77.8%	22.2%	100.0%	.0%	100.0%
교통안전 지원	22	7	24	5	25	4	21	8	15	14	20	9	29
	75.9%	24.1%	82.8%	17.2%	86.2%	13.8%	72.4%	27.6%	51.7%	48.3%	69.0%	31.0%	100.0%
기타	5	5	6	4	7	3	7	3	9	1	8	2	10
	50.0%	50.0%	60.0%	40.0%	70.0%	30.0%	70.0%	30.0%	90.0%	10.0%	80.0%	20.0%	100.0%
전체	288	365	326	327	418	235	414	239	421	232	586	67	653
	44.1%	55.9%	49.9%	50.1%	64.0%	36.0%	63.4%	36.6%	4.5%	35.5%	89.7%	10.3%	100.0%

〈표 4-36〉 사업운영방식

		재가 노노 케어	시설 노노 케어	주거 환경 개선	기타 노인 복지 지원	아동 청소년 지원	문화 복지 지원	장애인 복지 지원	교통 안전 지원	기타	전체
담당 실무자 조회 및 종례	비해당	222	43	41	28	34	15	8	21	10	422
		64.7%	70.5%	52.6%	53.8%	81.0%	51.7%	88.9%	70.0%	83.3%	64.3%
	해당	121	18	37	24	8	14	1	9	2	234
		35.3%	29.5%	47.4%	46.2%	19.0%	48.3%	11.1%	30.0%	16.7%	35.7%
참여자 활동일지 점검	비해당	26	6	20	10	7	7	3	8	3	90
		7.6%	9.8%	25.6%	19.2%	16.7%	24.1%	33.3%	26.7%	25.0%	13.7%
	해당	317	55	58	42	35	22	6	22	9	566
		92.4%	90.2%	74.4%	80.8%	83.3%	75.9%	66.7%	73.3%	75.0%	86.3%
수혜자 관리카드 점검	비해당	193	51	57	36	33	24	7	27	9	437
		56.3%	83.6%	73.1%	69.2%	78.6%	82.8%	77.8%	90.0%	75.0%	66.6%
	해당	150	10	21	16	9	5	2	3	3	219
		43.7%	16.4%	26.9%	30.8%	21.4%	17.2%	22.2%	10.0%	25.0%	33.4%
수혜자 전화 및 방문	비해당	99	39	40	26	28	24	5	23	8	292
		28.9%	63.9%	51.3%	50.0%	66.7%	82.8%	55.6%	76.7%	66.7%	44.5%
	해당	244	22	38	26	14	5	4	7	4	364
		71.1%	36.1%	48.7%	50.0%	33.3%	17.2%	44.4%	23.3%	33.3%	55.5%
팀장	비해당	213	45	33	25	25	13	4	11	8	377
		62.1%	73.8%	42.3%	48.1%	59.5%	44.8%	44.4%	36.7%	66.7%	57.5%
	해당	130	16	45	27	17	16	5	19	4	279
		37.9%	26.2%	57.7%	51.9%	40.5%	55.2%	55.6%	63.3%	33.3%	42.5%
수요기관 담당자	비해당	259	28	62	29	26	23	4	26	10	467
		75.5%	45.9%	79.5%	55.8%	61.9%	79.3%	44.4%	86.7%	83.3%	71.2%
	해당	84	33	16	23	16	6	5	4	2	189
		24.5%	54.1%	20.5%	44.2%	38.1%	20.7%	55.6%	13.3%	16.7%	28.8%
월례회의 및 간담회	비해당	76	17	24	9	10	11	2	13	5	167
		22.2%	27.9%	30.8%	17.3%	23.8%	37.9%	22.2%	43.3%	41.7%	25.5%
	해당	267	44	54	43	32	18	7	17	7	489
		77.8%	72.1%	69.2%	82.7%	76.2%	62.1%	77.8%	56.7%	58.3%	74.5%
연계부서 및 기관	비해당	253	55	59	38	37	27	8	29	8	514
		73.8%	90.2%	75.6%	73.1%	88.1%	93.1%	88.9%	96.7%	66.7%	78.4%
	해당	90	6	19	14	5	2	1	1	4	142
		26.2%	9.8%	24.4%	26.9%	11.9%	6.9%	11.1%	3.3%	33.3%	21.6%
기타	비해당	323	58	75	49	38	27	8	26	9	613
		94.2%	95.1%	96.2%	94.2%	90.5%	93.1%	88.9%	86.7%	75.0%	93.4%
	해당	20	3	3	3	4	2	1	4	3	43
		5.8%	4.9%	3.8%	5.8%	9.5%	6.9%	11.1%	13.3%	25.0%	6.6%
전체		343	61	78	52	42	29	9	30	12	656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3) 복지형 사업 수혜자 및 수혜기관 규모

〈표 4-37〉~〈표 4-38〉은 재가 노노케어 사업의 참여자 1인이 담당하는 평균 수혜자(실인원) 수로, 일반 노노케어는 평균 1.9명, 안전 지킴이는 평균 14.5명으로 나타남. 그러나 일반 노노케어가 재가 방문을 통해 가사 및 정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사업 특성상 다수의 수혜자를 담당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10명 이상인 경우는 단순 안전지킴이 활동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를 제외하면 참여자 1인당 평균 수혜자는 약 1.4명임. 일반 노노케어를 급간별로 살펴보면, 참여자 1인이 수혜자 1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37%로 가장 높고, 1인 미만 사업단도 33.4%로, 2인 또는 3인 1조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율도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노인일자리사업 재가 노노케어 사업 다수는 보통 1인의 수혜자에게 주 3일 정도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한편, 2007년 8월말 기준, 조사에 응답한 392개 재가 노노케어 사업의 총 수혜자는 35,179명으로 조사되었는데〈표 4-39〉, 무응답 사업 및 미제출 기관을 포함하면, 전국적으로 대략 40,000여명이 노인일자리사업의 재가 노노케어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표 4-37〉 재가 노노케어 참여자 1인당 평균 수혜자 수 급간

		일반 노노케어		안전 지킴이	
		빈도	%	빈도	%
유효	1명 미만	113	33.4	8	17.8
	1명	125	37.0	9	20.0
	2명	49	14.5	3	6.7
	3명	21	6.2	4	8.9
	4명	6	1.8	1	2.2
	5명	9	2.7	1	2.2
	6명	6	1.8	2	4.4
	7명	1	.3	1	2.2
	8명	1	.3	0	.0
	9명	1	.3	0	.0
	10명 이상	6	1.8	16	35.6
	전체	338	100.0	45	100.0
결측값		23		3	
전체		361		48	

〈표 4-38〉 재가 노노케어 참여자 1인당 평균 수혜자 수

	사례수	평균	최소값	최대값	표준편차
일반 노노케어	346	1,973	.1	51.4	3,6550
안전 지킴이	46	14,478	.1	176.7	31,1446

〈표 4-39〉 노인일자리 복지형 사업 수혜자 실인원(2007년 8월말 기준)

재가 노노케어	주거환경개선사업	기타 노인복지지원사업	아동청소년 복지사업	문화복지 지원사업	장애인복지 지원사업	전체
35,179	5,580	4,723	1,180	50	166	46,878

* 교통안전지원사업 및 기타사업 제외 532개 사업단 제출 자료 분석

〈표 4-40〉 노인일자리 복지형 사업 수혜기관 수

로당	요양원	주간/단기 보호시설	병원	어린이집	공부방	지역 아동센터	복지 시설	보건소	기타 기관	총 수혜기관
2,037	113	134	57	295	23	88	191	4	272	3,214

* 교통안전지원사업 및 기타사업 제외 250개 사업단 제출자료 분석

* 기타기관 : 경로대학, 초등학교, 급식소 등

4) 재가 노노케어 사업 운영관련 사항

안전지킴이사업단을 제외한 361개 일반 재가 노노케어 중, 무응답 24개 사업을 제외한 337개 사업단의 수혜자 구성 및 선정 방식은 〈표 4-41〉~〈표 4-42〉와 같음. 수혜자 구성은 기초수급자 비율이 평균 68.1%로 가장 높고, 기초 수급자 100%로만 이루어진 사업단도 16.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와 같은 결과는 노인일자리사업 복지형 사업단의 수혜자 대부분은 타 기관 또는 타 사업의 케어 서비스를 중복으로 제공받을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함.

〈표 4-41〉 재가 노노케어 수혜자 구성

	사례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기초수급자 비율	337	0	100	68.17	28,332
차상위 계층 비율	337	0	100	19.80	22,044
일반계층 비율	337	0	100	12.36	18,412



〈표 4-42〉 기초 수급자 비율

	빈도	%
20% 미만	19	5.6
20%이상 ~ 50%미만	57	16.9
50%이상 ~ 70%미만	67	19.9
70%이상~90%미만	78	23.1
90% 이상 ~ 100% 미만	60	17.8
100%	56	16.6
전체	337	100.0

한편, 수혜자 선정방식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약 90%가 중복여부를 확인한다고 응답함(표 4-43). 확인한다고 응답한 308개 사업에 대해, 확인 후 타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경우, 수혜자 선정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적으로 수혜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는 13.9%에 불과하였고, 다수의 응답자는 추가적 서비스의 제공의 필요한 경우, 노인일자리사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응답함(표 4-44).

〈표 4-43〉 서비스 중복 여부 확인

		빈도	%
유효	예	308	90.1
	아니오	34	9.9
	전체	342	100.0
	결측값	19	
	전체	361	

〈표 4-44〉 타 서비스 이용자 수혜대상 선정 여부

		빈도	%
유효	중복 수혜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수혜자로 선정	6	1.9
	추가적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에만 수혜자로 선정	261	84.2
	전적으로 수혜대상에서 제외	43	13.9
	전체	310	100.0
	결측값	51	
	전체	361	

○ 재가 노노케어의 의미

아래 <표 4-45>는 노인일자리사업 노노케어 사업단의 의미에 대해, 단순안전 지킴이 및 무응답 40개 사업을 제외한 321개 사업단의 중복응답포함, 총 345개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임. 약 67.2%는 동년배를 통한 서비스 제공으로 정서적 안정 및 지지를 도모하는 것이라 응답하여, 노인일자리사업 노노케어는 ‘동년배’에 의한 ‘정서지원’의 의미가 강한 것으로 나타남. 다음으로는 복지 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인 노인들에 대한 케어제공이 26.1%로 나타남.

<표 4-45> 노노케어 의미

	빈도	%
동년배를 통한 서비스 제공으로 정서적 안정 및 지지 도모	232	67.2
기존 대상자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양적 보충	18	5.2
복지 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인 노인들에 대한 케어 제공	90	26.1
기타	5	1.4
전체	345	100.0

5) 주거환경개선사업 운영관련 사항

<표 4-46>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운영 98개 사업단의 주력 사업(택 2)을 분석한 결과로²⁹⁾, 도배장판 교체가 43.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형광등이나 방충망 교체처럼 단순 작업도 약 28.7%정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4-46> 주거환경개선 사업 주력 서비스

	빈도	%
도배장판	78	43.8
지붕개량	12	6.7
보일러	9	5.1
형광등 교체	27	15.2
방충망 교체	24	13.5
전기	7	3.9
벽체	3	1.7
기타	18	10.1
전체	178	100.0

29) 분석대상에는 88개 주거환경개선 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주력 서비스로 함께 제공하는 재가 노노케어 사업단이 포함됨.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재료비를 부대경비 이외의 다른 재원을 통해 확보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약 64.3%가 '활용하고 있다'고 응답해, 사업단의 과반수 이상이 부대경비로 지원되는 예산만으로는 사업을 운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표 4-47>. 무응답 12개 사업을 제외한 51개 사업단의 외부재원 확보 방식으로는 개발원 지원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같은 기타 외부기금을 통한 지원이 각각 52.9%, 33.3%로 가장 높았고, 일부 수혜가구에 실비로 제공하는 경우도 29.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표 4-48>.

<표 4-47> 주거환경개선사업 외부재원 활용 여부

	빈도	%
활용	63	64.3
미활용	35	35.7
전체	98	100.0

<표 4-48> 주거환경개선사업 재료비 외부재원 확보처

			빈도	%
유효	개발원 지원 (로또공익재단)	비해당	24	47.1
		해당	27	52.9
		전체	51	100.0
	일부 수혜가구에 실비로 제공	비해당	36	70.6
		해당	15	29.4
		전체	51	100.0
	지자체 지원	비해당	41	80.4
		해당	10	19.6
		전체	51	100.0
	모법인 지원 및 후원금	비해당	38	74.5
		해당	13	25.5
		전체	51	100.0
	기타 외부기금 지원	비해당	34	66.7
		해당	17	33.3
		전체	51	100.0
결측값			12	
전체			63	

마지막으로 서비스 제공 시 재료를반 및 참여자 이동을 위해 활용하는 주요 교통수단으로는 기관차량이 51.1%로 가장 높고, 참여자 차량도 31.8%로 비교적 높은 비율을 보임. 기타는 주로 대도시의 경우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가 다수인 것으로 나타남(표 4-49).

〈표 4-49〉 이동 수단

			빈도	%
유효	기관차량 이용	비해당	43	48.9
		해당	45	51.1
		전체	88	100.0
	실무자 차량 이용	비해당	79	89.8
		해당	9	10.2
		전체	88	100.0
	참여자 차량 이용	비해당	60	68.2
		해당	28	31.8
		전체	88	100.0
	자원봉사 차량 이용	비해당	86	97.7
		해당	2	2.3
		전체	88	100.0
	기타	비해당	78	88.6
		해당	10	11.4
		전체	88	100.0
결측값			10	
전체			98	

6) 타 유형 업무내용 포함 여부

복지형 사업을 운영하면서 복지관련 서비스 이외의 타 유형 사업을 병행하여 실시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응답 분석 결과, 복지형 사업의 약 8%가 타 유형의 업무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전체 복지형 사업 중, 교통 안전지원사업이나 기타로 분류된 사업 중 일부는 사업내용 자체가 복지관련 서비스와 거리가 있는 사업단들로, 이 모두를 포함하면, 약 14% 정도가 타 유형의 업무가 포함된 사업으로 볼 수 있음. 타 유형 업무내용은 환경관리의 비율이 높았는데, 전화조사 결과 시설로 파견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필요에



의해 시설 내 환경관리 업무도 함께 병행하는 경우, 또는 재가 서비스 중 가사 지원을 하면서 재가 환경관리를 지원하는 경우 등 서비스 내용 중 부수적으로 환경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경우가 포함되어 있음.

〈표 4-50〉 타 유형 업무내용 포함 여부

	빈도	%
타 유형 포함하고 있음	64	8.3
타 유형 포함하지 않음	653	84.8
결측값	53	6.9
전체	770	100.0

〈표 4-51〉 타 유형 업무 내용

		빈도	%
환경관리	미포함	20	31.3
	포함	44	61.1
	전체	64	100.0
영농	미포함	47	73.4
	포함	17	26.6
	전체	64	100.0
기타	미포함	53	82.8
	포함	11	17.2
	전체	64	100.0

7) 복지형 사업 건의사항

〈표 4-52〉는 244개 기관의 총 340개 주관식 응답을 재분류하여 분석한 결과임. 부대경비 증액 및 사용 유연화가 16.8%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재료비 부족에 인한 것으로 보이며, 그 뒤를 이어 사업기간 연장은 15.9%로,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 필요에 따라 요구되고 있음. 또한 복지형 사업에는 공익형과 유사한 특성의 노인인구가 참여하고는 있으나 인간을 대상으로 케어를 제공하는 사업이니만큼 일정 수준 이상의 지식과 기술 및 소양이 요구되고 있어 참여자 교육지원이 주요 요구사항으로 제시되었음. 한편 참여자 이동문제 개선은 재가 방문을 필요로 하는 재가 노노케어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특히 농어촌 지역에서 개선되어야 할 부분으로, 교통비 지급 또는

차량이나 유류비 제공 등을 요청하고 있음. 그리고 지침 개선 및 참여자 활동 내용 개선 내용으로는 서비스 기준 명확화, 매뉴얼 제공, 지역적합 아이템개발 등이 요구되고 있고, 기타로는 수혜자 발굴 및 관리 지원, 유관기관 지역협의체 운영을 통한 정보공유, 참여자 관리 강화 등이 있음.

〈표 4-52〉 복지형 사업 건의사항

	빈도	%
인건비 증액	26	7.6
부대경비 증액 및 지원사용 유연화	57	16.8
사업기간 연장	54	15.9
일자리 수 확대	18	5.3
참여자 이동문제 개선	35	10.3
참여자 합리적 선발기준 마련	13	3.8
관공서 연계 및 협조	7	2.1
지역주민 홍보 및 인식개선	8	2.4
참여자 교육지원	39	11.5
지침개선 및 참여자 활동내용 개선	17	5.0
전담인력 지원확대 및 강화	18	5.3
중복서비스 문제 개선	21	6.2
기타	27	7.9
전체	340	100.0

■ 4. 시장형 사업 현황³⁰⁾

1) 시장형 주요사업 내용

〈표 4-53〉은 2007년 8월말 기준, 조사에 응답한 377개 전국 노인일자리 시장형 사업의 세부사업 분류 결과임. 참여자 기준으로 영농사업이 22.7%, 공동작업장이 21.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음식조리 및 판매사업과

30) 시장형 사업은 2006년 조사된 관계로, 일반현황만 조사하고 세부적인 유형별 조사는 생략되었음. 본 보고서에서는 일반현황 조사결과 및 '06년 조사결과, 내부 전산자료와 감사원 제출자료 등을 토대로 간략한 현황만 기술함.



인력파견식 서비스업도 각각 약 10%의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지역규모별로는 영농사업과 전통공예가 농어촌 지역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고, 중소도시에서는 음식 및 식품관련 사업 및 공동작업장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전자는 대도시에 비해 경쟁업체가 다소 적으나 농어촌보다는 시장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며, 후자의 경우, 인근지역에 산업단지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 많기 때문으로 볼 수 있음<표 4-54>. 한편 업종별 참여인원은 전반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영농과 공동작업, 인력파견식 서비스업이 그 중 많은 20명 정도의 인원수로 구성되어 있음<표 4-55>.

<표 4-53> 시장형 사업 주요 업종 분류

	사업단 수		참여자 수	
	빈도	%	빈도	%
공동작업장	66	17.5	1,605	21.9
전통공예	24	6.4	466	6.4
재활용	21	5.6	359	4.9
기타 생활용품 및 소품 제조 판매	30	8.0	415	5.7
영농사업	74	19.6	1,661	22.7
콩나물 재배	7	1.9	77	1.1
식품 가공 및 판매	32	8.5	455	6.2
음식 조리 및 판매	47	12.5	789	10.8
기타유통	6	1.6	91	1.2
세차, 세탁, 청소	15	4.0	245	3.3
인력파견식 서비스업	32	8.5	737	10.1
기타사업	23	6.1	429	5.9
전체	377	100.0	7,329	100.0

- * 공동작업장 : 산업체 하청에 의한 단순 임가공, 단순봉제, 농산물 가공
- * 기타 생활용품 및 소품제조사업 : 수의, 수선 및 봉제소품, 친환경용품 제조판매
- * 식품가공 및 판매 : 두부, 참기름, 기타식품 제조판매
- * 음식조리 및 판매사업 : 밑반찬, 김치, 도시락, 떡, 전통한과, 제빵제과, 분식집, 식당 및 카페 운영 등.
- * 인력파견식 사업 : 택배, 가사·간병·베이비시터 등
- * 기타 유통 : 노인일자리사업생산품판매(식품, 농산물, 공예품 등), 복지관내 매점운영
- * 기타 : 체험장 및 아동극, 커플매니저, 산나물채취, 대여업 등

〈표 4-54〉 지역규모별 업종분류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전체
공동작업장	26	27	13	66
	39.4%	40.9%	19.7%	100.0%
	21.0%	17.0%	13.8%	17.5%
전통공예	1	5	18	24
	4.2%	20.8%	75.0%	100.0%
	.8%	3.1%	19.1%	6.4%
재활용	7	13	1	21
	33.3%	61.9%	4.8%	100.0%
	5.6%	8.2%	1.1%	5.6%
기타 생활용품 및 소품 제조 판매	8	17	5	30
	26.7%	56.7%	16.7%	100.0%
	6.5%	10.7%	5.3%	8.0%
영농사업	12	28	34	74
	16.2%	37.8%	45.9%	100.0%
	9.7%	17.6%	36.2%	19.6%
콩나물 재배	1	3	3	7
	14.3%	42.9%	42.9%	100.0%
	.8%	1.9%	3.2%	1.9%
식품 가공 및 판매	12	16	4	32
	37.5%	50.0%	12.5%	100.0%
	9.7%	10.1%	4.3%	8.5%
음식 조리 및 판매	17	23	7	47
	36.2%	48.9%	14.9%	100.0%
	13.7%	14.5%	7.4%	12.5%
기타유통	4	0	2	6
	66.7%	.0%	33.3%	100.0%
	3.2%	.0%	2.1%	1.6%
세차, 세탁, 청소	6	9	0	15
	40.0%	60.0%	.0%	100.0%
	4.8%	5.7%	.0%	4.0%
인력파견식 서비스업	21	10	1	32
	65.6%	31.3%	3.1%	100.0%
	16.9%	6.3%	1.1%	8.5%
기타사업	9	8	6	23
	39.1%	34.8%	26.1%	100.0%
	7.3%	5.0%	6.4%	6.1%
전체	124	159	94	377
	32.9%	42.2%	24.9%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4-55〉 사업단별 평균 참여자 수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공동작업장	66	24.32	18.402	5	100
전통공예	24	19.42	14.371	5	76
재활용	21	17.10	12.341	4	50
기타 생활용품 및 소품 제조 판매	30	13.83	11.689	3	56
영농사업	74	22.45	18.093	2	110
콩나물 재배	7	11.00	7.767	0	22
식품 가공 및 판매	32	14.22	7.356	6	37
음식 조리 및 판매	47	16.79	11.497	4	55
기타유통	6	15.17	11.856	5	35
세차, 세탁, 청소	15	16.33	10.182	4	33
인력파견식 서비스업	32	23.03	25.230	4	145
기타사업	23	18.65	16.618	4	81
전체	377	19.44	16.262	0	145

2) 매출 및 급여 현황

〈표 4-56〉~〈표 4-57〉은 업종별 1인당 월평균 매출 현황임. 음식조리 및 판매사업과 식품가공 판매사업과 인력파견식 서비스업이 비교적 높은 매출을 보이고 있고,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영농사업과 공동작업장은 각각 약 48,000원, 52,000원으로 낮은 실적을 보이고 있음. 급간별로 살펴보면, 5만원 미만 사업단이 과반수를 넘고 있는데, 이 중 37%, 69개 사업단은 매출 실적이 0원으로, 농어촌 지역 사업, 지자체 및 대한노인회 수행사업, 영농사업 및 전통공예, 공동작업장 등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표 4-56〉 업종별 1인당 월평균 매출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공동작업장	66	52,073	57,179,51055	.00	276,588.8
전통공예	24	26,821	37,879,34253	.00	125,300.0
재활용	21	86,510	64,382,09448	.00	240,965.1
기타 생활용품 및 소품 제조 판매	29	94,025	134,417,75599	.00	619,686.0
영농사업	74	48,853	74,742,94608	.00	414,000.0
콩나물 재배	6	24,696	21,866,56520	.00	61,700.0
식품 가공 및 판매	32	134,589	152,395,85958	.00	636,316.2
음식 조리 및 판매	46	177,507	178,869,78051	.00	787,576.3
기타유통	6	120,023	117,608,04878	.00	310,649.7
세차, 세탁, 청소	14	66,827	71,449,28397	.00	230,145.8
인력파견식 서비스업	31	144,733	154,052,51370	.00	562,260.8
기타사업	22	125,643	408,527,49875	.00	1,946,039.0
전체	371	91,014	152,882,90573	.00	1,946,039.0

* 자료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내부전산자료(2007년 12월말 기준)

〈표 4-57〉 1인당 월평균 매출 금간

		%	유효 %	누적 %
유효	5만원 미만	188	50.7	50.7
	5만원 이상 ~ 10만원 미만	81	21.8	72.5
	10만원 이상 ~ 15만원 미만	40	10.8	83.3
	15만원 이상 ~ 20만원 미만	13	3.5	86.8
	20만원 이상 ~ 25만원 미만	18	4.9	91.6
	25만원 이상 ~ 30만원 미만	7	1.9	93.5
	30만원 이상	24	6.5	100.0
	전체	371	100.0	
	결측값	6		
	전체	377		

* 자료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내부전산자료(2007년 12월말 기준)

한편 사업년차에 따른 매출실적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신규사업에 비해 2년차 이상의 계속사업이 약 2배 정도의 매출을 보이고는 있으나, 년차별 증가추이를 보이고 있지는 않음. 지역규모별로는 농어촌 지역으로 갈수록 월평균 매출이 현저히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수행기관 및 운영업종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농어촌 지역 시장형사업의 새로운 방향정립이 필요함.



〈표 4-58〉 년차별 1인당 월평균 매출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4년차 이상	52	106,444	131,688,54268	.00	739,509.6
3년차	52	111,994	136,718,61246	.00	619,686.0
2년차	124	107,937	206,073,96236	.00	1,946,039.0
신규	143	63,098	99,461,62237	.00	636,316.2
전체	371	91,014	52,882,90573	.00	1,946,039.0

* 자료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내부전산자료(2007년 12월말 기준)

〈표 4-59〉 지역규모별 1인당 월평균 매출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대도시	123	111,683	207,206,99510	.00	1,946,039.0
중소도시	154	94,163	122,673,28910	.00	787,576.3
농어촌	94	58,808	101,388,69111	.00	619,686.0
전체	371	91014	152,882,90573	.00	1,946,039.0

* 자료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내부전산자료(2007년 12월말 기준)

아래 〈표 4-60〉~〈표 4-61〉은 시장형 사업의 업종별 운영개월 수 및 월평균 급여임. 시장형 사업 전체의 월평균 급여는 약 14만원으로, 매출이 높은 사업단과 낮은 사업단의 급여 차이는 크지 않고 오히려 고매출 사업단의 급여가 약간 더 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음. 그러나 아래 〈표 4-60〉~〈표 4-61〉은 사업단 기준으로 본 업종별 운영개월 수 및 월평균 급여로, 사업 운영의 기준을 전산 상에서 급여를 지급받은 참여자가 1인이더라도 있는 경우가 모두 포함된 결과이며, 좀 더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참여자 기준으로 운영개월 수를 산출하여 재분석할 필요 있음.

〈표 4-60〉 업종별 월평균 급여(사업단 기준)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공동작업장	66	135,265	73,311,86123	30,226.40	540,872.8
전통공예	24	156,960	53,314.48964	23,891.57	212,517.6
재활용	21	145,251	58,162.57874	39,434.80	331,735.6
기타 생활용품 및 소품 제조 판매	29	132,304	57,569.35964	42,509.08	248,684.3
영농사업	74	161,821	151,333.77937	37,357.00	1,100,000.0
콩나물 재배	7	94,151	71,394.64183	26,674.71	200,000.0
식품 가공 및 판매	32	117,642	36,485.89257	60,232.42	190,375.0
음식 조리 및 판매	46	118,213	40,963.49225	37,050.80	207,625.0
기타유통	6	138,159	50,184.09462	83,057.44	200,000.0
세차, 세탁, 청소	14	118,905	20,283.67803	86,311.42	169,199.0
인력파견식 서비스업	31	157,269	85,486.48125	51,428.57	455,138.8
기타사업	22	121,790	39,249.49824	9,633.40	201,600.0
전체	372	138,350	86,628.22919	23,891.57	1,100,000.0

* 자료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내부전산자료(2007년 12월말 기준)

〈표 4-61〉 시장형 사업 업종별 운영개월 수(사업단 기준)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공동작업장	66	8.674	2.3931	2.0	12.0
전통공예	24	6.875	2.2129	4.0	12.0
재활용	21	9.000	1.5811	5.0	12.0
기타 생활용품 및 소품 제조 판매	30	8.150	2.3236	4.0	12.0
영농사업	74	7.203	2.2436	1.0	12.0
콩나물 재배	7	7.286	2.2887	5.0	12.0
식품 가공 및 판매	32	9.125	1.8794	5.0	12.0
음식 조리 및 판매	47	9.043	2.2454	2.0	12.0
기타유통	6	7.833	2.2286	5.0	10.0
세차, 세탁, 청소	15	8.900	2.4799	4.0	12.0
인력파견식 서비스업	31	9.129	2.3908	1.0	12.0
기타사업	22	8.091	1.9978	5.0	12.0
전체	375	8.303	2.3354	1.0	12.0

* 자료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내부전산자료(2007년 12월말 기준)



〈표 4-62〉 시장형 사업 업종별 참여개월 수(참여자 기준)

	사례수	평균	표준 편차	최소값	최대값
공동작업장	2,389	6.15	3,272	1	12
전통공예	615	5.54	2,033	1	12
재활용	435	7.44	2,900	1	12
기타 생활용품 제조 판매	477	6.12	3,044	1	12
영농사업	2,016	5.89	2,419	1	12
콩나물 재배	150	5.60	3,102	1	12
식품 가공 및 판매	512	6.54	2,784	1	12
음식 조리 및 판매	1,096	5.94	3,324	1	12
기타유통	121	5.83	2,638	1	10
세차, 세탁, 청소	362	5.49	2,954	1	12
인력파견식 서비스업	806	5.84	3,055	1	12
기타사업	402	6.50	2,707	1	12
전체	9,381	6.06	2,945	1	12

* 자료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내부전산자료(2007년 12월말 기준)

〈표 4-63〉 시장형 사업 업종별 월평균 급여(참여자 기준)

	사례수	평균	표준 편차	최소값	최대값
공동작업장	2,389	158,474	61,667.3	1,400.00	654,860.0
전통공예	615	168,273	49,452.6	10,000.00	300,000.0
재활용	435	166,672	85,169.6	3,350.00	767,743.3
기타 생활용품 제조 판매	477	177,851	187,718.4	13,750.00	1,900,000.0
영농사업	2,016	167,347	76,306.1	20,000.00	1,100,000.0
콩나물 재배	150	118,056	68,678.1	18,000.00	422,000.0
식품 가공 및 판매	512	155,212	94,231.6	20,000.00	1,322,580.0
음식 조리 및 판매	1,096	163,819	85,778.1	15,500.00	1,061,000.0
기타유통	121	152,998	41,775.0	31,000.00	279,633.3
세차, 세탁, 청소	362	227,967	167,468.9	10,000.00	1,200,000.0
인력파견식 서비스업	806	232,172	176,764.1	10,000.00	1,789,000.0
기타사업	402	156,723	63,569.0	20,000.00	770,000.0
전체	9,381	171,057	102,211.5	1,400.00	1,900,000.0

* 자료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내부전산자료(2007년 12월말 기준)

위 <표 4-62>~<표 4-63>에 의하면, 시장형 사업 참여자가 인건비를 지급받는 개월 수, 즉 참여개월 수는 평균 약 6개월, 월평균 급여는 약 17만원으로, 세차/세탁/청소업 및 인력파견식 서비스업을 제외하면, 나머지 업종들은 월평균 매출과 무관하게 급여차이나 참여개월 수 모두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음.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는 사업비 지출로 인한 예산 부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며, 실제 '06년도 시장형 사업 실태조사 결과 총지출액 대비 총사업비 지출액 분석에서도 식품가공 및 제조업, 외식업이 지출액의 42.5%, 44.6%를 사업비로 지출하고 있는 반면 공동작업장은 가장 낮은 사업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나온 바 있음.

위와 같은 결과는 타 유형과는 물론, 같은 시장형 내 업종 간에도 형평성을 포함한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노인의 특성상 안정적 수익창출시기 까지 지속적인 참여가 보장될 수 없고, 사업의 안정화 또한 보장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방적인 사업비 지출은 단순히 저임금의 문제뿐만 아니라 근로동기 자체를 저하시켜 가장 기본적인 시장원리를 저해하는 결과를 낳음.

<표 4-64> 업종별 총사업비 지출비율

(단위 : %)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공동작업장	34	8.094	11.4812	.0	50.0
영농	45	22.449	19.1181	.0	86.1
재활용	24	25.769	28.3343	.4	100.0
식품가공 및 제조	22	42.537	23.7618	2.6	79.1
외식	32	44.624	27.5772	2.2	100.0
생활용품 및 소품	44	21.569	22.4669	.0	76.5
세탁 세차 청소	13	31.164	35.2448	.0	100.0
택배	13	16.240	10.8722	3.6	40.9
기타	33	30.729	30.0520	.0	100.0
전체	260	27.02	23.21	.0	100.0

* 자료 : '06년 노인일자리 시장형 사업 실태조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2006)



5. 인력파견형 사업 현황

정부로부터 인건비가 지원되는 타 유형과는 달리, 실제 일반시장 내에서 일자리를 창출해야 하는 인력파견형 사업은 노인취업의 어려운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며 매우 저조한 실적을 보여 왔음. 매년 유형별 배정량을 채우기 위해 일정 정도의 사업량을 유지해 왔으나 사업단 명부에 올라 있을 뿐, 실질적으로는 운영이 되지 않아 증도에 사업이 조기 종료되거나, 운영되고 있다 하더라도 기관 고유사업, 또는 기존의 지자체 고령자 고용 사업이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전환되거나 혼재되어 운영되는 경우도 있어, 시험감독관이나 주유원 사업단 이외에는 명확하게 노인일자리사업으로서의 인력파견형 사업의 실체를 파악하기 힘든 부분이 있음.

그러나 인력파견사업의 근본적인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위와 같은 모든 가능성들은 감안하되, 현재 노인들의 일반시장에서의 취업 특성들을 대략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음. 본 조사에서는 2007년 8월말 기준 전산상에 등록된 118개의 사업단을 조사대상으로 하여 108개 사업단의 응답자료를 확보하였으나, 응답내용의 신뢰도가 낮고, 8월말 기준시점이라 정확한 작년 한해의 취업자 수 파악이 불가능하여, 12월말 기준 전산 상에 등록된 인력파견형 95개 사업단, 2,528명의 자료 분석으로 대신하며, 본 조사결과는 일부만 활용함. 본 분석에서는 인력파견형 사업의 참여자는 단순 인력풀 구성원수가 아닌, 실제 임금을 지급받은 노인만이 포함된 수치임³¹⁾.

1) 인력파견형 사업 참여 현황

〈표 4-65〉~〈표 4-67〉은 지역별, 수행기관별 인력파견사업 참여현황임. 광역별로는 전북을 제외하면 대도시 지역 참여자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고,

31) 전산 상에 등록되어 있는 2,528명의 참여자 중, 2007년 신규 참여자는 약 82%인 2,072명이고, 기존 참여자는 약 18%에 해당하는 456명임. 그러나, 신규참여자로 등록된 참여자 중에는 실제 작년에도 참여하였으나 전산상 관리가 되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어, 실제 2007년 신규 취업 또는 파견자 수치는 이보다 좀 더 떨어질 수 있음.

농어촌 지역은 전체 참여자의 4.9%로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 노인일자리 사업 이전에 이미 노인복지관을 중심으로 고령자 취업알선 사업이 진행되어 왔던 대도시 및 중소도시와는 달리, 지역경제 특성 자체가 일자리 창출이 어려운 농어촌 지역에서는 노인일자리사업 시작과 함께 일괄적인 사업량 배정에 따라 인력파견형이 운영되기는 하였으나 실질적 운영이 어려워 매년 감소해왔음. 한편 전북 지역의 경우, 시 단위를 중심으로 농가지원, 엑스트라 및 주례, 문화공연 파견 등처럼 지속적 고용이 아닌 1회성 파견 사업에 노인들이 다수 참여하고 있어 예외적으로 도 단위에서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음. 수행기관별로는 노인복지관과 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 등의 주요 사업 참여기관이 절대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세 기관 모두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이전에 기관 고유사업으로 고령자 취업사업을 시행해왔던 기관들이 다수임.

〈표 4-65〉 광역별 인력파견형 참여현황

	사업단		참여자	
	빈도	%	빈도	%
강원	4	4.2	51	2.0
경기	13	13.7	255	10.1
경남	4	4.2	108	4.3
경북	5	5.3	60	2.4
광주	3	3.2	248	9.8
대구	3	3.2	137	5.4
대전	4	4.2	123	4.9
부산	14	14.7	191	7.6
서울	8	8.4	457	18.1
울산	7	7.4	191	7.6
인천	11	11.6	199	7.9
전남	3	3.2	54	2.1
전북	7	7.4	244	9.7
제주	1	1.1	43	1.7
충남	3	3.2	58	2.3
충북	5	5.3	109	4.3
전체	95	100.0	2,528	100.0

* 자료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내부전산자료(2007년 12월말 기준)



〈표 4-66〉 지역규모별 참여현황

	사업단		참여자	
	빈도	%	빈도	%
대도시	48	50.5	1528	60.4
중소도시	39	41.1	877	34.7
농어촌	8	8.4	123	4.9
전체	95	100.0	2528	100.0

* 자료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내부전산자료(2007년 12월말 기준)

〈표 4-67〉 수행기관별 참여현황

	사업단		참여자	
	빈도	%	빈도	%
지자체	6	6.3	111	4.4
노인복지관	33	34.7	910	36.0
종합사회복지관/장애인복지관	2	2.1	9	.4
시니어클럽	21	22.1	797	31.5
대한노인회	26	27.4	512	20.3
노인복지센터	2	2.1	3	.1
기타	5	5.3	186	7.4
전체	95	100.0	2,528	100.0

* 기타 : 주레인 클럽, 대한 은퇴자 협회, 노인인력관리센터

* 자료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내부전산자료(2007년 12월말 기준)

2) 인력파견형 주요사업 내용

본 보고서에서는 편의상 단일업종을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사업과 종합적으로 여러 업종을 취급하는 사업으로 구분함³²⁾. 단일 업종으로는 개발원을 중심으로 특화되어 운영되고 있는 주유원과 시험감독관 사업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참여자규모로는 시험감독관이 32.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한편 약 50%를 차지하고 있는 종합일반직은 아래 열거된 단일 업종들을 포함하여, 식당보조, 관리원, 미화원, 농가인력지원 등이 사업단에 따라 복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시험감독관 및 주유원 사업도 함께 운영하고 있음〈표 4-68〉.

32) 구분 기준은 '07년 노인일자리사업 유형별 실태조사에 응답한 운영업종에 근거함.

〈표 4-68〉 인력파견형 사업 분류별 참여현황

	사업단		참여자		
	빈도	%	빈도	%	
종합 일반직	46	48.3	1,284	50.8	
단독 특수직	주유원	15	15.8	109	4.3
	시험감독관	16	16.8	823	32.6
	경비원	4	4.2	49	1.9
	도우미	5	5.3	37	1.5
	주례사	5	5.3	98	3.9
	기타	4	4.3	128	5.0
	전체	49	51.7	1,244	49.2
전체	95	100.0	2,528	100.0	

* 기타 : 산불감시원, 숲가꾸기, 골프장 도우미, 한약재 포장 등

* 자료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내부전산자료(2007년 12월말 기준), 유형별 실태조사 자료

3) 인력파견형 사업운영 방식

한편 본 조사에 응답한 108개 기관들의 사업운영 방식은 〈표 4-69〉와 같음. 전반적으로 응답 사업단의 67%는 단일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나머지의 33%는 복합적인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기관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약 45%인 반면, 일반 용역업체와 연계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도 29%로 나타났고, 사업단의 약 60%는 단순 취업알선이 아닌, 인력풀 구성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남.

한편 사후관리 실시여부와 관련하여 전체 사업단의 92.9%는 취업 및 파견 후, 사후관리를 실시하며 대체로 수요처 방문이나 전화, 참여자 전화 등의 방식이 모두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함. 그러나 인력풀을 구성하여 운영되는 사업이나 단일 업체 또는 장소에 일괄 취업된 경우는 사후관리가 용이하나, 취업된 경우에 실질적 관리가 쉽지 않고, 사후관리의 질적 차이가 다양하다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하면 위의 높은 응답률에 대한 해석에 주의할 필요 있음.



〈표 4-69〉 인력파견형 사업 운영방식

		빈도	%
용역업체 연계 취업알선	비해당	72	71.3
	해당	29	28.7
기관독자 취업알선	비해당	56	55.4
	해당	45	44.6
기관독자 인력파견	비해당	56	55.4
	해당	45	44.6
개발원 연계 인력파견	비해당	81	80.2
	해당	20	19.8
기타	비해당	91	90.1
	해당	10	9.9
전체		101	100.0

* 기관의 독자적 취업알선: 수요처를 직접 발굴하여 구직노인과 연결하는 방식 의미

* 인력파견 : 특정 업종의 인력풀을 구성 하여 교육 후 파견하며, 계속해서 회원관리가 이뤄지는 방식

〈표 4-70〉 사후관리 여부

		빈도	%
유효	예	92	92.9
	아니오	7	7.1
	전체	99	100.0
결측값		9	
전체		108	

〈표 4-71〉 사후관리 방식

		빈도	%
수요처 방문	비해당	20	21.7
	해당	72	78.3
수요처 전화	비해당	12	13.0
	해당	80	87.0
참여자 전화	비해당	3	3.3
	해당	89	96.7
기타	비해당	81	88.0
	해당	11	12.0
결측값		16	
전체		108	

4) 인력파견형 운영 실적

〈표 4-72〉~〈표 4-73〉은 인력파견형 사업 참여자(취업자)의 2007년 한해 평균 참여개월 수 분석 결과임. 먼저 작년 한 해 참여자들의 평균 참여개월 수는 약 3.8개월로, 3개월 미만자가 39.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3개월~6개월이 33.8%, 6개월 이상자는 17.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한편 작년 한 해 총 참여 개월 수와는 별개로 2007년 최초 취업 이후 고용 또는 파견이 유지되고 있는 노인의 비율은 12월말 기준으로 약 34.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들의 평균 참여개월 수는 약 6개월로, 6개월 이상자가 56.6%를 차지하고 있음.

〈표 4-72〉 인력파견형 평균 참여개월 수

	사례수	평균	최소값	최대값	표준편차
참여개월 수	2,528	3.87	1	12	2.703

* 자료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내부전산자료(2007년 12월말 기준)

〈표 4-73〉 인력파견형 참여개월 수

	빈도	%
1개월	613	24.2
2개월	378	15.0
3개월	390	15.4
4개월	255	10.1
5개월	211	8.3
6개월	234	9.3
7개월	175	6.9
8개월	114	4.5
9개월	50	2.0
10개월	56	2.2
11개월	4	.2
12개월	48	1.9
전체	2,528	100.0

* 자료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내부전산자료(2007년 12월말 기준)



〈표 4-74〉 인력파견형 고용(파견)유지 여부(2007년 취업시점~2007년 12월말)

	빈도	유효 %
유지	874	34.6
유지 안됨	1,654	65.4
전체	2,528	100.0

* 자료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내부전산자료(2007년 12월말 기준)

〈표 4-75〉 고용(파견)유지자 평균 참여개월 수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참여개월 수	874	5.89	2,700	1	12

* 자료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내부전산자료(2007년 12월말 기준)

〈표 4-76〉 고용유지 참여자 참여개월 수

	빈도	유효 %
1개월	31	3.5
2개월	62	7.1
3개월	101	11.6
4개월	63	7.2
5개월	122	14.0
6개월	179	20.5
7개월	118	13.5
8개월	58	6.6
9개월	35	4.0
10개월	55	6.3
11개월	2	2
12개월	48	5.5
전체	874	100.0

* 자료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내부전산자료(2007년 12월말 기준)

5) 인력파견형 참여자 급여 현황

〈표 4-77〉~〈표 4-80〉은 인력파견형 사업 참여자의 2007년 한해 월평균 급여 수준 분석 결과임. 전 참여자의 월평균 급여는 약 37만원으로 나타났으나, 1회성 파견 또는 일반취업에 따라 편차가 크므로 업종별로 분석할 필요가 있음. 단독 특수직의 단일 업종 월평균 급여를 살펴보면, 경비원이 약 81만원, 주유원이 그 뒤를 이어 80만원으로 나타났고, 1회성 파견업종인 시험감독관과 주례사 등은 7만원~10만원선 인 것으로 나타남.

〈표 4-77〉 인력파견형 월평균 급여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일반종합직 월평균 급여	1,284	522,183	349,302,197	3,000	2,233,333
단독특수직 월평균 급여	1,244	215,659	284,131,285	18,000	1,700,000
총 월평균 급여	2,528	371,346	353,766,169	3,000	2,233,333

* 자료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내부전산자료(2007년 12월말 기준)

〈표 4-78〉 인력파견형 급간별 월평균 급여

	빈도	유효 %
10만원 미만	1,090	43.1
10만원 이상 ~ 20만원 미만	204	8.1
20만원 이상 ~ 30만원 미만	98	3.9
30만원 이상 ~ 40만원 미만	71	2.8
40만원 이상 ~ 50만원 미만	70	2.8
50만원 이상 ~ 60만원 미만	124	4.9
60만원 이상 ~ 70만원 미만	178	7.0
70만원 이상 ~ 80만원 미만	194	7.7
80만원 이상 ~ 90만원 미만	242	9.6
90만원 이상 ~ 100만원 미만	164	6.5
100만원 이상 ~ 110만원 미만	70	2.8
110만원 이상 ~ 150만원 미만	17	.7
150만원 이상	6	.2
전체	2,528	100.0

* 자료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내부전산자료(2007년 12월말 기준)

〈표 4-79〉 종합일반직 급간별 월평균 급여

	빈도	유효 %
10만원 미만	311	24.2
10만원 이상 ~ 20만원 미만	49	3.8
20만원 이상 ~ 30만원 미만	47	3.7
30만원 이상 ~ 40만원 미만	50	3.9
40만원 이상 ~ 50만원 미만	52	4.0
50만원 이상 ~ 60만원 미만	94	7.3
60만원 이상 ~ 70만원 미만	157	12.2
70만원 이상 ~ 80만원 미만	152	11.8
80만원 이상 ~ 90만원 미만	165	12.9
90만원 이상 ~ 100만원 미만	130	10.1
100만원 이상 ~ 110만원 미만	59	4.6
110만원 이상 ~ 150만원 미만	13	1.0
150만원 이상	5	.4
전체	1,284	100.0

* 자료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내부전산자료(2007년 12월말 기준)



〈표 4-80〉 단독특수직 업종별 월평균 급여

	사례수	평균	최소값	최대값	표준편차
주유원	109	800,414.82	70,000	1,700,000	250,096.127
시험감독관	823	67,051.35	30,000	193,333	23,771,848
경비원	49	813,324.06	400,000	900,000	76,129.131
도우미	37	385,721.41	18,000	1,000,000	290,340.672
주례사	98	104,139.00	50,000	433,333	60,860.458
산불감시원	16	575,000.00	575,000	575,000	.000
기타	112	467,159.40	150,000	1,074,856	213,663.011
전체	1,244	215,659.58	18,000	1,700,000	284,131.285

* 자료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내부전산자료(2007년 12월말 기준)

마지막으로 지역규모별로 살펴본 월 평균 급여수준은 〈표 4-81〉과 같음. 일반적인 통념과 달리 농어촌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대도시의 경우, 고용형과 달리 월평균 급여가 작은 시험감독관 사업이 타 지역에 비해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42.9%), 농어촌 지역은 월평균 급여가 적은 주례사 사업 참여자가 22%만 차지하고 있을 뿐, 나머지는 월평균 55만원 이상이 지급되는 골프장 관리 도우미를 포함, 비교적 높은 임금이 지급되고 있는 주유원, 경비원, 산불유급 감시원 등의 사업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임. 그러나 현 분석 자료에서 농어촌 지역 참여자 비중이 타 지역에 비해 매우 적고, 광역시 소재 군 단위가 포함되어 있으며³³⁾, 운영되는 업종의 특수성 등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결과를 일반화 시키는 데에는 무리가 있음. 한편 중소도시의 종합일반직 급여수준이 낮게 나타나는 이유는 앞서 언급되었듯이, 여러 업종으로 1회성 파견이 이루어지고 있는 전북지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임.

〈표 4-81〉 지역규모별 월평균 급여

	종합 일반직			단독 특수직			전체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대도시	712	626,224	308,348,765	816	153,067	240,451,814	1,528	373,544	361,767,387
중소도시	561	383,129	350,744,457	316	307,345	344,640,032	877	355,822	350,257,155
농어촌	11	879,602	93,938,258	112	413,001	224,563,682	123	454,729	253,929,002
전체	1,284	522,183	349,302,197	1,244	215,659	284,131,285	2,528	371,346	353,766,169

* 자료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내부전산자료(2007년 12월말 기준)

33) 현재 지역규모의 구분 기준은 광역시는 대도시, 일반시는 중소도시, 군 단위는 농어촌임. 그러나 본 자료에서 주유원 및 경비원 사업을 운영하는 농어촌 지역은 광역시 소재 군단위로 해석에 유의할 필요 있음.

V. 기타 실무자 견해





V 기타 실무자 견해

1. 노인일자리사업 필요성

노인일자리사업 필요성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분석한 결과, 5점 만점에 지자체는 평균 3.89, 민간 수행기관은 평균 4.33으로, 지자체는 응답기관의 71.8%가, 민간 수행기관은 90.2%가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표 5-1>. 현 노인일자리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인식과는 별개로 일자리 욕구가 높은 노인층의 증가로 인해 실제 현장에서 갖고 있는 일자리 사업의 당위성은 매우 높으며, 실제 사업참여에 따른 노인 개인의 높은 만족도 또한 사업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보임.

〈표 5-1〉 노인일자리사업 필요성 인식

		지자체		민간 수행기관	
		빈도	%	빈도	%
유효	매우 낮다	4	1.9	7	1.1
	낮은 편이다	5	2.4	2	.3
	보통이다	49	23.8	54	8.4
	높은 편이다	100	48.5	285	44.5
	매우 높다	48	23.3	293	45.7
	전체	206	100.0	641	100.0
	결측값	0		10	
	전체	206		651	



II 2. 사업량 증감 희망여부

2008년도 노인일자리사업 사업량의 증감 희망 여부에 대한 사업단별 응답결과는 아래 <표 5-2>와 같음. 전체 사업단의 약 63.5%는 현재 사업량을 적정수준이라 응답하여 대체로 현재 사업량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21.3%는 사업량 증가를, 10.7%는 사업량 축소를, 그리고 사업중단을 원하는 사업단도 4.5%인 것으로 나타남. 유형별로는 수요처 또는 판로의 확보 부담이 없는 공익형과 복지형이 사업량 증가를 희망하는 비율이 높은 반면, 시장형과 인력파견형이 사업량 축소 및 중단희망 비율이 높게 나타나, 자립지원형의 운영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대도시와 시니어클럽에서 사업량 축소 및 사업중단 희망 사업단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5-2〉 2008년 사업량 증감 희망여부

		현재 사업량 적정함	사업량 증가 희망	사업량 축소 희망	사업중단 희망	전체
지역규모	대도시	440	134	108	41	723
		60.9%	18.5%	14.9%	5.7%	100.0%
		35.2%	31.9%	51.2%	46.1%	36.7%
	중소도시	549	180	77	35	841
		65.3%	21.4%	9.2%	4.2%	100.0%
		43.9%	42.9%	36.5%	39.3%	42.7%
	농어촌	261	106	26	13	406
		64.3%	26.1%	6.4%	3.2%	100.0%
		20.9%	25.2%	12.3%	14.6%	20.6%
	전체	1,250	420	211	89	1,970
		63.5%	21.3%	10.7%	4.5%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사업유형	공익형	292	121	24	14	451
		64.7%	26.8%	5.3%	3.1%	100.0%
		23.4%	28.8%	11.4%	15.7%	22.9%
	교육형	279	78	36	11	404
		69.1%	19.3%	8.9%	2.7%	100.0%
		22.3%	18.6%	17.1%	12.4%	20.5%
	복지형	426	167	71	26	690
		61.7%	24.2%	10.3%	3.8%	100.0%
		34.1%	39.8%	33.6%	29.2%	35.0%
	시장형	206	46	62	26	340
		60.6%	13.5%	18.2%	7.6%	100.0%
		16.5%	11.0%	29.4%	29.2%	17.3%
	인력파견형	47	8	18	12	85
		55.3%	9.4%	21.2%	14.1%	100.0%
		3.8%	1.9%	8.5%	13.5%	4.3%
	전체	1,250	420	211	89	1,970
		63.5%	21.3%	10.7%	4.5%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행기관	지자체	213	81	24	16	334
		63.8%	24.3%	7.2%	4.8%	100.0%
		17.0%	19.3%	11.4%	18.0%	17.0%
	노인복지관	322	81	62	27	492
		65.4%	16.5%	12.6%	5.5%	100.0%
		25.8%	19.3%	29.4%	30.3%	25.0%
	사회복지관	139	37	33	8	217
		64.1%	17.1%	15.2%	3.7%	100.0%
		11.1%	8.8%	15.6%	9.0%	11.0%
	시니어클럽	228	41	46	22	337
		67.7%	12.2%	13.6%	6.5%	100.0%
		18.2%	9.8%	21.8%	24.7%	17.1%
	대한노인회	170	90	22	4	286
		59.4%	31.5%	7.7%	1.4%	100.0%
		13.6%	21.4%	10.4%	4.5%	14.5%
	노인복지센터	76	29	14	4	123
		61.8%	23.6%	11.4%	3.3%	100.0%
		6.1%	6.9%	6.6%	4.5%	6.2%
	기타	102	61	10	8	181
		56.4%	33.7%	5.5%	4.4%	100.0%
		8.2%	14.5%	4.7%	9.0%	9.2%
전체	1,250	420	211	89	1,970	
	63.5%	21.3%	10.7%	4.5%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한편 사업중단 희망사업단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단에서 실무자가 제시한 적정 희망 사업량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 5-3>~<표 5-4>와 같음. 공익형은 평균 89.3명, 교육형은 28.4명, 복지형 37.5명, 시장형은 20.2명, 인력파견형은 32.1명으로, 지역규모별 편차가 크게 나타나는 유형은 교육형과 인력파견형으로 각각 10명에서 20명 사이 정도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수행기관별로 살펴보면 공익형의 경우, 읍면동으로 나뉘어 사업이 수행되는 지자체가 제시하는 사업량의 비중에 타 기관에 비해 월등히 높았고, 교육형은 관련 자원과 경력이 풍부한 노인복지관이 타 기관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5-3> 지역규모별 적정 사업량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시장형	인력파견형	전체
대도시	사례수	150	153	237	108	30	678
	평균	88.2	31.6	38.7	21.5	38.2	45.3
중소도시	사례수	181	170	278	138	38	805
	평균	94.4	29.4	36.0	18.7	29.3	44.4
농어촌	사례수	104	67	143	64	4	382
	평균	82.1	18.8	38.6	21.4	14.0	43.9
전체	사례수	435	390	658	310	72	1865
	평균	89.3	28.4	37.5	20.2	32.1	44.6

<표 5-4> 수행기관별 적정 사업량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시장형	인력파견형	전체
지자체	사례수	184	28	74	21	3	310
	평균	125.5	22.6	47.5	24.8	16.7	89.7
노인복지관	사례수	59	163	163	52	24	461
	평균	61.8	32.5	36.3	15.6	33.3	35.8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사례수	33	43	103	26	3	208
	평균	45.2	20.5	28.7	18.5	13.7	27.9
시니어클럽	사례수	34	55	63	140	22	314
	평균	71.9	34.7	37.5	20.1	36.0	32.9
대한노인회	사례수	80	52	93	41	15	281
	평균	66.7	24.0	51.7	15.0	31.1	45.8
노인복지센터	사례수	5	5	100	9	5	119
	평균	76.8	24.0	30.4	12.7	33.0	30.8
기타	사례수	40	44	62	21	72	172
	평균	61.8	22.8	34.6	23.8	32.1	36.5
전체	사례수	435	390	658	310		1,865
	평균	89.3	28.4	37.5	20.2		44.6

한편, 응답 내용에 따라 제시하는 적정 사업량에는 차이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사업량 증가 희망 사업단이 현 사업량을 적정하다고 응답한 사업단보다, 그리고 사업량 축소 희망 사업단이 사업량 증가 희망 사업단보다 적정사업량이 약 5명~20명 정도 높게 나타나고 있음. 여러 가지 변수가 작용할 수 있으나, 사업량 증가를 희망하는 사업단의 경우, 농어촌 지역 대한노인회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점 등 여러 사안들을 고려해보면, 지역 노인들의 높은 일자리 욕구와 수행기관의 사업의지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사업량 축소 사업단의 경우, 사업목표량 자체가 타 응답 사업단에 비해 매우 높았던 것으로 나타남<표 5-5>.

〈표 5-5〉 응답별 적정 사업량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시장형	인력파견형	전체
사업량 적정함	대도시	사례수	103	112	141	66	18	440
		평균	75.1	28.9	35.5	23.0	37.1	41.3
	중소도시	사례수	121	121	190	91	26	549
		평균	83.3	28.1	30.2	19.8	31.1	39.8
	농어촌	사례수	68	46	95	49	3	261
		평균	63.2	16.4	29.3	16.4	15.3	33.3
전체	사례수	292	279	426	206	47	1,250	
	평균	75.7	26.5	31.8	20.0	32.4	39.0	
사업량 증가희망	대도시	사례수	34	22	61	11	6	134
		평균	89.4	37.0	36.7	26.0	40.2	49.4
	중소도시	사례수	52	38	63	25	2	180
		평균	86.9	23.5	33.2	13.4	17.5	43.8
	농어촌	사례수	35	18	43	10	0	106
		평균	88.1	14.1	34.3	27.6	0	48.0
전체	사례수	121	78	167	46	8	420	
	평균	88.0	25.1	34.7	19.5	34.5	46.6	
사업량 축소희망	대도시	사례수	13	20	36	32	7	108
		평균	99.2	45.4	57.4	25.2	53.1	50.4
	중소도시	사례수	8	11	26	22	10	77
		평균	133.7	52.6	64.4	22.5	52.4	56.4
	농어촌	사례수	3	5	9	8	1	26
		평균	133.0	18.4	38.6	33.8	17.0	43.3
저체	사례수	24	36	71	62	18	211	
	평균	114.9	43.8	57.6	25.3	50.7	51.7	



III 3. 노인일자리사업 수행 시 지역적 장단점

〈표 5-6〉~〈표 5-7〉은 노인일자리사업 수행 시 소속 지역이 갖는 장점에 대해 110개 지자체 응답 내용을 재분류한 총 125개 응답, 416개 민간 수행기관 응답 내용을 재분류한 총 499개 응답을 분석한 결과임. 지자체와 민간수행기관 모두에서 지역규모의 차이를 불문하고 노인들의 높은 참여욕구(일자리 수요가 많음)가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사실상 뚜렷한 장점이 없다는 것으로도 해석 가능함. 이 문항을 제외하면, 대도시와 중소도시는 주로 사업 인프라 및 지역자원의 풍부함과 교통의 편리함을 장점이라 응답한 반면, 농어촌 지역은 공원, 휴양지 관리 등 공익형 사업 운영이 가능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거나(지자체), 지역 공동체성이 높다는 점(민간 수행기관) 등이 비교적 타 요인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을 뿐, 전반적으로 지역이 갖는 장점을 뚜렷하게 인식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임. 사업 인프라 및 지역자원 풍부함과 관련, 지자체는 주로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이 많다는 의미로 전문적 인프라 또는 다양한 인프라 확보로 노인일자리사업 수행에 어려움이 없다고 응답하였고, 민간은 주로 협력가능 기관 및 수요처가 많다는 의미로, 교육형 및 복지형 사업 추진이 용이하다고 응답함. 한편 지역 공동체성의 경우, 수혜자와의 거리감 감소로 복지형 사업 수행이 용이하고, 인맥을 통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점 등이 포함되어 있음.

〈표 5-6〉 노인일자리사업 수행 시 지역적 장점(지자체 응답)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전체
일자리사업 수요 많음	9	21	25	55
	16.4	38.2	45.5	100.0
	20.9	48.8	64.1	44.0
노인 인적 자원 풍부	3	5	2	10
	30.0	50.0	20.0	100.0
	7.0	11.6	5.1	8.0
사업 인프라 및 지역자원 풍부	7	7	0	14
	50.0	50.0	0.0	100.0
	16.3	16.3	0.0	11.2
지자체 및 지역사회의 관심	3	0	0	3
	100.0	0.0	0.0	100.0
	7.0	0.0	0.0	2.4
교통편리 또는 지역밀집으로 사업관리에 효과적	8	2	1	11
	72.7	18.2	9.1	100.0
	18.6	4.7	2.6	8.8
수요처 및 판로, 자원 풍부	2	2	3	7
	28.6	28.6	42.9	100.0
	4.7	4.7	7.7	5.6
공익형 아이템 수요 있음	7	3	6	16
	43.8	18.8	37.5	100.0
	16.3	7.0	15.4	12.8
지역 공동체성 높음	0	0	1	1
	0.0	0.0	100.0	100.0
	0.0	0.0	2.6	0.8
기타	4	3	1	8
	50.0	37.5	12.5	100.0
	9.3	7.0	2.6	6.4
전체	43	43	39	125
	34.4	34.4	31.2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5-7〉 노인일자리사업 수행 시 지역적 장점(민간 수행기관 응답)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전체
일자리사업 수요 많음	71	50	34	155
	45.8	32.3	21.9	100.0
	35.3	27.3	36.6	31.1
노인 인적 자원 풍부	16	2	3	43
	37.2	4.7	7.0	100.0
	8.0	1.1	3.2	8.6
사업 인프라 및 지역자원 풍부	20	19	3	42
	47.6	45.2	7.1	100.0
	10.0	10.4	3.2	8.4
지자체 및 지역사회의 관심	8	22	3	33
	24.2	66.7	9.1	100.0
	4.0	12.0	3.2	6.6
교통편리 또는 지역밀집으로 사업관리에 효과적	36	28	8	72
	50.0	38.9	11.1	100.0
	17.9	15.3	8.6	14.4
수요처 및 판로, 자원 풍부	7	9	1	17
	41.2	52.9	5.9	100.0
	3.5	4.9	1.1	3.4
공익형 아이템 수요 있음	11	10	5	26
	42.3	38.5	19.2	100.0
	5.5	5.5	5.4	5.2
지역 공동체성 높음	7	17	15	39
	17.9	43.6	38.5	100.0
	3.5	9.3	16.1	7.8
기타	25	26	21	72
	34.7	36.1	29.2	100.0
	12.4	14.2	22.6	14.4
전체	201	183	93	499
	40.3	36.7	18.6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5-8〉~〈표 5-9〉는 노인일자리사업 수행 시 소속 지역이 갖는 애로사항에 대한 134개 지자체 응답 내용을 재분류한 총 170개 응답, 406개 민간 수행기관 응답 내용을 재분류한 총 495개 응답을 분석한 결과로, 지역규모를 불문하고 대체로 자립지원형의 운영 어려움과 다수 노인 인구층의 능력 열약과 이동거리(교통 불편) 문제 등이 높게 나타남. 자립지원형의 경우, 인력파견 수요처 부족, 시장형 판로·자원 부족 등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이동거리 문제는 교통비

부족, 원거리 거주자 참여 불가, 교통사고 위험 등을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일부 지역 노인만 참여하게 된다는 점에서 형평성의 문제를 낳고 있음. 마지막으로 다수 노인인구층의 능력 열악은 빈곤, 학력, 건강, 의식 측면 모두와 관련된 것으로, 결과적으로 참여자 선정의 어려움, 기여도 높은 사업 창출 불가능, 안전사고 노출 및 잦은 중도 포기자 발생에 따른 사업운영의 문제 등을 낳고 있음. 기타 내용으로는 도심지역 교통혼잡으로 인한 안전사고, 강사수급 어려움 등이 있음.

〈표 5-8〉 노인일자리사업 수행 시 지역적 단점(지자체 응답)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전체
자립지원형 운영 어려움	8	11	16	35
	22.9	31.4	45.7	100.0
	20.0	18.0	23.2	20.6
이동거리 문제	3	9	12	24
	12.5	37.5	50.0	100.0
	7.5	14.8	17.4	14.1
다수 노인 인구층의 능력 열악	7	10	10	27
	25.9	37.0	37.0	100.0
	17.5	16.4	14.5	15.9
사업장 확보 어려움	1	1	1	3
	33.3	33.3	33.3	100.0
	2.5	1.6	1.4	1.8
지역 내 편차로 인한 사업수행 어려움	2	5	0	7
	28.6	71.4	0.0	100.0
	5.0	8.2	0.0	4.1
지역특성상 노인 적합 일자리 창출 어려움	1	8	11	20
	5.0	40.0	55.0	100.0
	2.5	13.1	15.9	11.8
수혜자 및 수요처 부족	0	1	3	4
	0.0	25.0	75.0	100.0
	0.0	1.6	4.3	2.4
농번기 참여인력 수급 어려움	0	1	4	5
	0.0	20.0	80.0	100.0
	0.0	1.6	5.8	2.9
사업 인프라 부족	2	1	5	8
	25.0	12.5	62.5	100.0
	5.0	1.6	7.2	4.7
지자체 예산부족	8	0	2	10
	80.0	0.0	20.0	100.0
	20.0	0.0	2.9	5.9
공급량 대비 수요 과잉	5	5	2	12
	41.7	41.7	16.7	100.0
	12.5	8.2	2.9	7.1
지역사회 의식부족 및 홍보부족	0	2	0	2
	0.0	100.0	0.0	100.0
	0.0	3.3	0.0	1.2
다수기관 사업참여로 인한 사업중복	2	2	0	4
	50.0	50.0	0.0	100.0
	5.0	3.3	0.0	2.4
노인의 사업참여기피 및 불만	1	0	0	1
	100.0	0.0	0.0	100.0
	2.5	0.0	0.0	0.6
기타	0	5	3	8
	0.0	62.5	37.5	100.0
	0.0	8.2	4.3	4.7
전체	40	61	69	170
	23.5	35.9	40.6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5-9〉 노인일자리사업 수행 시 지역적 단점(민간 수행기관 응답)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전체
자립지원형 운영 어려움	13	25	16	54
	24.1	46.3	29.6	100.0
	7.9	11.9	13.2	10.9
이동거리 문제	39	65	47	151
	25.8	43.0	31.1	100.0
	23.8	31.0	38.8	30.5
다수 노인인구층의 능력 열악	37	38	18	93
	39.8	40.9	19.4	100.0
	22.6	18.1	14.9	18.8
사업장확보 어려움	8	2	1	11
	72.7	18.2	9.1	100.0
	4.9	1.0	0.8	2.2
지역 내 편차로 인한 사업수행 어려움	3	4	1	8
	37.5	50.0	12.5	100.0
	1.8	1.9	0.8	1.6
지역특성상 노인 적합 일자리 창출 어려움	4	14	5	23
	17.4	60.9	21.7	100.0
	2.4	6.7	4.1	4.6
수혜자 및 수요처 부족	11	10	5	26
	42.3	38.5	19.2	100.0
	6.7	4.8	4.1	5.3
농번기 참여인력 수급 어려움	0	4	9	13
	0.0	30.8	69.2	100.0
	0.0	1.9	7.4	2.6
사업 인프라 부족	1	3	1	5
	20.0	60.0	20.0	100.0
	0.6	1.4	0.8	1.0
지자체 예산부족	3	2	4	9
	33.3	22.2	44.4	100.0
	1.8	1.0	3.3	1.8
공급량 대비 수요 과잉	17	8	2	27
	63.0	29.6	7.4	100.0
	10.4	3.8	1.7	5.5
지역사회 의식부족 및 홍보부족	5	9	3	17
	29.4	52.9	17.6	100.0
	3.0	4.3	2.5	3.4
다수기관 사업참여로 인한 사업중복	14	10	2	26
	53.8	38.5	7.7	100.0
	8.5	4.8	1.7	5.3
노인의 사업참여 기피 및 불만	1	4	1	6
	16.7	66.7	16.7	100.0
	0.6	1.9	0.8	1.2
기타	8	12	6	26
	30.8	46.2	23.1	100.0
	4.9	5.7	5.0	5.3
전체	164	210	121	495
	33.1	42.4	24.4	100.0
	100.0	100.0	100.0	100.0

■ 4. 개선 및 지원 요구사항

1) 지자체 노인일자리사업 개선 요구사항³⁴⁾

노인일자리사업 개선 요구사항에 대한 67개 지자체 응답 내용을 재분류한 총 93개 응답 분석 결과는 아래 <표 5-10>과 같음. 자립지원형 운영의 어려움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응답한 만큼 지역실정에 맞는 탄력적 사업운영이 19.4%로 가장 높고, 사업의 내실화도 14.0%의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후자와 관련하여, 자칫 다수의 공익형 사업이 인건비 지급으로 끝나기 쉽다는 우려와 함께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신규 아이템의 개발과 보급 확대를 통해 사업 내실화가 시급하다는 견해가 다수 제기됨. 한편 기타 내용으로는 부대경비 사용 자율화(예 : 교통비), 사업비 지원 및 복지형 사업기간 연장, 안전사고 대비한 산재보험료 완화, 민간수행기관 주도 사업 운영, 공공영역에서의 노인채용 지원을 위한 중앙부처간 협의 등이 있음.

<표 5-10> 노인일자리사업 개선 요구사항(지자체)

	빈도	%
지역실정에 맞는 탄력적 사업운영	18	19.4
참여자 교육체계 강화	8	8.6
실무자 역량강화 및 사기진작	8	8.6
사업 내실화	13	14.0
전담인력 지원 현실화	7	7.5
참여자 선정기준 합리화	4	4.3
기타	35	37.6
전체	93	100.0

2) 노인일자리사업 교육 요구사항

<표 5-11>~<표 5-12>은 노인일자리사업 교육관련 문항에 대해 직접사업 수행 160개 지자체 중 138개 지자체 응답내용과 641개 민간기관의 중복응답 포함,

34) 민간 수행기관은 유형별 개선 요구사항으로 대신함.



총 667개 응답내용을 분석한 결과임. 먼저 현장에서 우선적으로 필요로 하는 교육은 지자체가 노인의 인적자원 개발교육을, 민간기관은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교육이라 응답하여, 지자체가 좀 더 거시적 안목에서 고령인력의 능력을 끌어내기 위한 교육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교육관련 구체적인 지원요구사항에 있어서는 지자체와 민간 수행기관 모두에서 교육내용의 기획(커리큘럼 구성)과 외부 전문강사의 섭외를 우선순위로 꼽았고, 지역별 통합교육체계 마련도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5-11〉 노인일자리사업 교육 우선순위(지자체)

		1순위		2순위	
		빈도	%	빈도	%
유 호	참여자교육	40	29,0	27	21,4
	실무자교육	41	29,7	37	29,4
	노인인적자원개발 교육	44	31,9	31	24,6
	노년기 준비교육	10	7,2	27	21,4
	기타	3	2,2	4	3,2
	전체	138	100,0	126	100,0
결측값		22		34	
전체		160			

〈표 5-12〉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교육 요구사항(지자체)

		빈도	%
유 호	교육내용기획	43	31,6
	전문 외부강사 섭외	42	30,9
	교육장 등 교육환경 확보	3	2,2
	지역별 통합교육체계 마련	35	25,7
	교육예산 증액	8	5,9
	기타	5	3,7
	전체	136	100,0
결측값		24	
전체		160	

〈표 5-13〉 노인일자리사업 교육 우선순위(민간 수행기관)

		1순위		2순위	
		빈도	%	빈도	%
유 호	참여자교육	273	42.6	123	19.2
	실무자교육	196	30.6	216	33.8
	노인인적자원개발 교육	121	18.9	180	28.1
	노년기 준비교육	46	7.2	102	15.9
	기타	5	.8	11	1.7
	전체	641	100.0	640	100.0
	결측값	10		11	
	전체	651			

〈표 5-14〉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교육 요구사항(민간 수행기관)

	빈도	%
교육내용 기획	175	26.2
외부 전문강사 섭외	171	25.6
교육장 등 교육환경 확보	79	11.8
지역별 통합교육체제 마련	126	18.9
교육예산 증액	108	16.2
기타	8	1.2
전체	667	100.0

현재 개발원에서는 노인인적자원개발 교육의 일환으로 은퇴전후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은퇴 후 생애설계서비스」와 공공(사회복지 포함) 및 민간에서 인력관리를 주로 담당하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생애경력조언자 양성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실시하고 있음. 특히 「노인생애경력조언자 양성교육 과정」은 궁극적으로 향후 국가공인자격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체계적인 과정 개발을 통해 노인인적자원개발을 위한 교육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어야 할 것임. 그 동안 특정교육(비즈니스 스쿨, 조직관리전문가양성교육 등) 위주로 실시해 왔던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실무자교육은 교육대상(실무자, 중간관리자, 기관장 등)이나 노인일자리사업별 특성을 고려한 교육지원체계의 재구조화가 필요함.



한편 노인일자리교육센터 확충과 사업유형별 참여자 기본교육 재검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음. 노인일자리사업 질적 향상의 최우선과제는 사업별 직무에 적합한 참여자 교육의 체계화라 할 수 있는데, 현재 각 사업유형마다 필수 교육이수 시간이 책정되어 있지만, 교육시간의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았으며, 교육내용도 해당 사업수행기관에서 자율적인 판단으로 운영하고 있음. 이번 조사 결과에서도 사업수행기관에서는 교육내용기획, 외부 전문강사 확보, 통합교육체계구축 등에 대한 요구가 있었는데, 이는 구조화된 참여자 교육과 교육을 위한 인프라 확보를 요구하는 것이나, 900여개의 수행기관과 2,500여개의 사업에 대해 개발원이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역부족임. 따라서 지역 내에서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하여 지원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이에 따라 '07년도 2개 지역(광주 및 부산)에서 시범 운영된 지역 내 「노인일자리교육센터」의 확충이 효과적일 것임.

VI. 정책 건의사항





VI

정책 건의사항

1. 유형별 노인일자리사업 정책 건의사항

공익형 사업은 지역사회의 수요가 있고, 관리가 충실히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사업의 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으나 일부의 사업은 취로사업 또는 공공근로 사업과 다를 바 없다는 부정적 인식을 면치 못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저학력 미숙련 노인이 참여할 수 있는 분야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불가피한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사회적 배려가 필요하며, 향후 5~10년간은 계속 현재와 같은 비율을 유지하거나 상향조정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함. 그러나 위와 같은 비판을 완화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 또한 병행될 필요가 있는데, 무엇보다 관리와 참여자 교육 강화를 통해 일자리사업의 차별성을 확보하고, 현장의 공익형 신규 프로그램 개발을 유도하여 전국적으로 확대·보급할 필요 있음.

비교적 고학력 저연령의 노인이 참여하고 있고 사회적 유용성을 검증받은 교육형의 경우, 일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강사로 지급을 통한 자립형으로의 전환은 시기상조로 보이며 현재 노인인구 특성상 참여자 확보에도 어려움을 보이고 있음. 때문에 수요처의 강사로 지급 문제는 인성교육 측면에서 노인 교사 활용이 갖는 효과성 검증과 함께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 있으며, 민간 수행기관의 개별적 접근보다는 중앙정부차원에서의 접근이 바람직함. 또한 타 유형에 비해 참여노인의 교육이 성과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유형인만큼, 실무자의 업무부담 감소와 참여노인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지역통합교육 체계 등을 통해 기본교육 이외의 전문교육 또한 지원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함.



현재 복지형 사업의 다수는 재가 노노케어사업이 차지하고 있으나 기존 서비스와의 중복 문제,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참여자의 능력 문제, 참여자 관리 문제 등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무엇보다 불필요한 중복서비스 제공 방지를 위해 지역사회 내의 통합적 서비스제공 체계 내에 편입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있으며, 동시에 동년배에 의한 정서적 지지에 대한 가치 측정을 통해 노노케어 사업의 효과성을 검증해볼 필요 있음. 한편 현장조사 결과, 관리 및 욕구 차원에서 보육 및 복지시설의 케어 또는 업무보조 사업이 높은 지역사회의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중지원의 문제가 제기되고는 있으나 노인일자리에 대한 지역사회의 별다른 수요가 있지 않는 상황에서 욕구가 있는 곳에 노인인력을 투입하는 것은 바람직함.

시장형 사업의 경우, 목표에 부합하는 현실적 지원이 부재하여 이윤창출에 대한 동기부여가 미약하고 타 유형과의 형평성 결여로 근로의욕 또한 저하되고 있는 실정임. 때문에 현재와 같은 예산지원 구조에서는 초기투자비용이 높고, 그에 비해 창출되는 일자리와 급여수준이 높지 않으며, 노동강도가 높은 공동창업방식보다는 인력파견식 사업 위주로 통합,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공동작업장은 단순히 수익성을 떠나 투입되는 근로시간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자립형보다는 후기 고령자의 사회참여형으로 운영하여 예산지원 또한 인건비가 아닌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비에 한해 지원 될 필요 있음.

인력파견형 사업의 경우, 고령자 채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부재하고, 현 노인인구층의 능력이 열악한 상황에서 활성화되기 어려운 사업으로 현재 개발원의 방침대로 중앙 단위의 수요처 개발을 통해 현장에 보급하는 방식이 적합하며, 단순취업보다는 관리와 교육이 용이한, 인력풀 구성을 통한 사업 운영이 바람직함. 한편 인력파견형은 공익, 교육, 복지, 시장형과는 여러 면에서 차별성을 갖는 유형으로 일자리사업에 대한 이해에 혼동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므로 향후 인건비가 지급되는 예산 노인일자리사업에서 분리하여 비예산 민간일자리에 편입시켜 운영할 필요 있음.

II 2. 노인일자리사업 수행환경 개선

1) 인프라 확충 및 지원

현재 노인일자리사업의 양적확대에 따라 다양한 인프라가 수행기관으로 참여하고 있으나 사업내용과 관리 차원에서 볼 때, 기관 간 수준 차이는 크게 나타나고 있음. 그러나 상대적으로 유사사업 관련경험이 있거나 조직 내 사업연계 또는 인력동원이 가능하여 일자리사업을 노인복지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접근하는 조직과 그렇지 않은 1인 중심의 기관에게 같은 수준의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우며, 계속해서 양적목표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당부분 불가피한 문제임. 현재로서는 중앙차원에서 효과적인 표준 아이템 발굴과 보급, 실무자의 교육 및 기관 간 교류 확대를 통해 기관 간 편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과 함께 ‘전문복지 기관’의 참여확대와 신규확충 노력 등이 병행되어야 할 것임.

2) 지역특성 고려한 사업운영 : 농어촌 지역 사업운영 체계 및 방식 재편

현재 노인일자리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농어촌 지역이 갖는 문제는 다음과 같음. 첫째, 광범위한 지역분포와 교통수단 부족에 따른 원거리 이동문제가 기본적인 한계로 참여자 및 수혜자 선정이 제한적이고 이동시간으로 인해 서비스 효율성 떨어짐. 둘째, 고연령, 높은 문맹률 등 참여자 능력이 저조하고, 셋째, 복지기관 및 보교육 기관의 부족으로 일자리사업 참여 인프라(수행기관 및 수요처)가 부족하며, 마지막으로 인력채용 업체 부족, 시장발달 미약 등으로 자립지원형의 성공기반이 부족함.

때문에 농어촌 지역은 참여자 및 수혜자 모두가 참여하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가능한 모든 면단위에 최소한의 거점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의 활용과 작업장의 분산 배치, 유사사업 경험이 풍부한 자활후견기관의 사업참여가 효율적임. 비록 활용자원은 적으나, 적은 인프라의 결집으로 시너지 효과를 가질 수 있고 공공, 민간의 서비스 공급자



부족으로 오히려 고령자의 서비스 제공이 용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다음으로는 공익복지형 확대와 자립지원형의 축소가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하며, 고령화, 농업사양화, 조손가정, 해외이주여성 등 농촌지역사회문제 해결을 중심으로 하는 아이템 개발 노력이 필요함. 특히 영농사업의 경우, 현재와 같은 수익형을 목표로 시도할 경우, 성공가능성이 매우 낮으며, 복지형 또는 교육형 아이টে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함. 마지막으로 농어촌 지역의 경우, 비교적 고른 양상을 보이는 도시와 달리 인구수, 대도시 근접여부, 기관장 및 법인의 인지도, 산업체 유무 등에 따른 편차가 크게 나타나므로 일괄적 규정보다는 최소한의 가이드라인 속에서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

3) 관리 및 평가시스템 재정비

현재 노인일자리사업은 참여하는 기관의 특성과 사업유형의 차이로 인해 복지 프로그램적인 성격과 함께, 근로에 따른 인건비 지급에 중점을 두는 공공근로적 성격이 혼재되어 있으나 현 평가시스템은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년1회 일괄적인 방식의 평가를 진행하고 있음. 이러한 형식적인 평가는 그 목표설정과 지표구성에 있어 많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고, 평가결과의 적실성과 이에 대한 현장의 수용성도 의문시될 수밖에 없으며 평가결과에 따른 보상과 처벌 또한 미약하여 평가가 의도하는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없음.

근본적으로는 다양한 목표와 성격이 혼재되어 있는 2,000여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연 1회, 일정기간동안 임시 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비현실적임. 그러므로 현 상황에서는 무엇보다 일자리사업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를 통해 최소한의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지원하고, 이와 동시에 우수사례 공모 또는 별도의 제한적인 평가체계 마련으로 효과적인 일자리사업 아이টে 및 사업 운영 방식 등을 발굴·보급하는데 주력하고 우수기관에 대한 현실적인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일자리사업의 상향평준화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함.

4) 실무자 및 참여자 교육 강화

체계적인 노인일자리사업 교육 시스템을 마련하여 실무자와 참여자의 사업수행력을 높이고, 직무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은 노인일자리사업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필수 요건이며, 현재 개발원에서는 「노인일자리교육센터」 확충을 통해 노인일자리사업 교육 강화를 도모하고 있음. 참여노인의 교육 강화는 노인일자리사업과 기존 유사사업을 차별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전략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더 중요한 의미를 지님. 교육복지형의 경우, 사업특성상 전문성 및 인성 함양을 위한 기본 소양교육과 전문 직무교육 강화로 노인의 인적자원개발 측면에서 유용하다고 본다면, 공익형의 경우, 참여노인층의 특성상 교육 또는 문화, 복지 등의 서비스에서 소외되어 있던 계층인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일종의 서비스 제공 차원으로 확대하여 단계적으로 접근한다면 노인일자리사업이 갖는 가치는 일자리 제공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임. 물론 이를 위해서는 지역통합교육체계 확충 및 내실화를 통해 소속 참여기관의 여건과 무관하게 동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제공이 필요하며, 직무에 필요한 기본교육이 우선적으로 충실히 이뤄져야 할 것임.

5) 참여자 모집·선정의 공정성 및 합리성 확보 방안 마련

공개모집과 합리적이고 투명한 선정과정을 통해 자격을 갖춘 모든 노인이 일자리사업 참여기회를 보장받는 것은 일자리사업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제1의 필수요건임.

참여자 모집은 그 지역여건에 적합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식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되, 공개성 원칙의 준수여부에 대한 지도점검 차원의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나, 앞서 언급되었듯이, 유형특성상 기존노인의 지속적인 참여로 서비스 효과성을 높이는 문제와 상대적으로 더 빈곤한 노인의 지속적 참여 보장 문제 등에 있어서는 그 범위와 비율 등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제시가 필요할 수 있음. 또한 교육형을 제외하면 경제수준이 우선적 선발요건으로 적용됨에 따라 많은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저소득 기준이 명확치 않고 선발기준표상 재산세 납부금액, 자동차보유여부, 의료보험 납부금액 등을 재산상황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어 실질적 재산상황을 고려하지 못하는 현실이며, 특히 재산세 조회 절차가 까다롭고 재산가액기준을 배우자나 자녀를 제외한 순수 참여자 본인에 한정하고 있는 관계로 객관적인 경제상황을 반영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그러나 생계형 빈곤노인의 보충적 소득보장 기능을 일자리사업의 한 효과로서 제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 상태와 관련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 마련은 실무자의 업무부담 감소뿐만 아니라 일자리사업 의 대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이므로 이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와 방안 마련이 필요함.

■ 3. 노년기 노동의 가치발견을 통한 노인일자리사업의 성과 제시

‘일자리’의 기본 속성을 일의 지속성과 급여수준이라는 점에서 본다면, 연간 7개월 참여 월 20만원 수준의 노인일자리사업은 현재 일반적인 사회적일자리 관련 논의에서 유용한 일자리로 인식될 수 없고 사실상 현재 다수 참여자의 인식 속에서도 완전한 ‘일자리’로 자리 잡고 있지 못함. 그러나 노년기의 노동과 일자리의 개념은 타 연령층의 그것과 다른 측면에서 평가되어야 함. 즉, 노년기에 수반되는 역할상실, 고독, 외로움의 문제 등을 일자리사업 참여를 통해 사회 구성원 일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행사함으로써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단순히 금전적인 측면으로 따질 수 없는 큰 의미가 있음. 결론적으로 기존의 일반적인 일자리에 대한 관념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노년기 ‘일’에 대한 새로운 가치 정립을 통해 여타의 사회적일자리와는 다른 노인일자리사업의 의미와 성과를 제시함으로써 노인일자리사업을 활성화시킬 필요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노년기 노동의 의미, 가치와 효과 등에 대한 연구와 다각적 홍보 노력이 필요함.

■ 4. 노인일자리사업 중장기 전략 마련

현재 노인일자리사업에는 생계비 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빈곤노인이 약 50% 정도 참여하고 있음. 이들 중 다수는 연령, 건강, 학력 등의 근로능력이 상대적으로 열악하여 일반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한 계층으로, 현재는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를 통해 소득을 일부보전 받고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노동’이 아닌 사회보장체계 구축을 통해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임. 그러나 사회안전망이 제 기능을 갖추기 전까지 이러한 저학력 미숙련 노인층 일부가 공익형 사업으로 다수 흡수될 수밖에 없고, 부가적으로 소득의 욕구가 높고 건강하나 일반노동시장과 일자리사업 참여 모두로부터 배제된 노인을 위해 적정 임금이 보장되는 민간 일자리 개발도 요구되고 있어 현재 노인일자리사업의 정책목표는 매우 다원화 되어 있음. 따라서 향후 노인인구층의 변화, 고령화시대에 대비한 다양한 노동시장정책의 변화, 그리고 노후보장체계의 확충 등의 환경변화에 따른 노인 일자리사업의 목표를 정립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환경분석에 따른 세부적인 노인일자리사업의 단기, 중장기 전략 마련 및 그 객관적 근거와 효율적 추진방안 제시를 위해서는 조사연구 기능이 좀 더 강화 될 필요 있음.

부록 1.
노인일자리사업 유형별 실태조사
설문지(지자체용)



시·도명		지자체명	
작성책임자		연락처	
작성책임자	노인일자리사업 종사기간(8월말 기준)		()년 ()개월

I. 기관 및 인력현황

1. 노인일자리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 관련 문항입니다. 해당번호에 모두 표 하고 괄호 안에 명수를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노인일자리사업 담당 실무자 : ()명

② 사업수행기관 전담인력 : ()명

(※ 관할지역 내 민간수행기관에 지원되는 전담인력을 포함하지 않는, 시군구에 지원되는 전담인력만 기입)

2. 현재 귀 부서(담당 계)의 전체 업무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이 실제 차지하는 업무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실제 투입되는 시간을 기준으로 기입하여 주십시오.

	%
--	---

3. 귀 지자체는 2007년 기관별 사업유형 및 사업량을 어떠한 방식으로 조정 또는 결정하십니까?

① 시군구의 일자리사업 담당 공무원 및 사업수행기관 실무자의 회의를 통해 결정

② 수행기관이 원하는 유형별 사업량을 시군구에 제출한 뒤 조정 작업 거쳐 결정

③ 시군구에서 각 수행기관별 사업량을 선 배정한 뒤 수행기관과 조정 작업 거쳐 결정

④ 기타(구체적으로 :)

⑤ 당시 담당 실무자의 이직 또는 인사이동으로 알 수 없음



4. 귀 지자체는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또는 유관기관들과의 협의체계를 갖추고 계십니까?

- ① 노인일자리사업 지역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4-1, 4-2로 가시오)
- ② 노인일자리사업 지역협의체는 구성하지 않았으나, 관련 기관들과의 간담회 형식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4-1, 4-2로 가시오)
- ③ 노인일자리 지역협의체가 별도로 구성되지 않았으나, 지역복지 협의체 내에서 지자체 및 관련 기관들이 노인일자리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4-1, 4-2로 가시오)
- ④ 노인일자리사업 지역협의체가 구성되었으나, 운영되지 않고 있다.
- ⑤ 협의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다.

4-1. 협의 구조의 개최 방식은 어떠하십니까?

- ①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② 현안 발생 시 수시로 개최한다.
- ③ 위 ①, ②번 모두 해당

4-2. 귀 지자체는 노인일자리사업과 관련하여 협의체 또는 간담회를 올해 8월말 기준으로(2007. 1 ~ 2007. 8월말까지) 총 몇 회 개최하셨습니다까?

_____회

5. 귀 지자체는 올해 주어진 목표사업량 이외에 사업기간 연장 또는 사업량 확대를 위해 추가로 지자체 별도예산을 지원하고 있거나, 지원계획이 있으십니까? 해당번호에 모두 √표하고 금액을 적어주십시오.

- ① 년초 별도예산 확보(별도 투입 총예산 : 원)
- ② 1차 추경 금액(원)
- ③ 추경예정 금액(원)
- ④ 별도 추가 예산 지원실적 또는 지원계획 없음



II. 사업일반 현황(지자체가 수행기관으로 등록되어 있는 직접수행사업에 한함)

1. 사업일반에 관한 문항입니다. 2007년 노인일자리사업을 모두 적고 해당 질문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 ※ 최초 시행년도 : 사업이 최초로 시행된 년도. 사업명과 내용이 일부 변경되었어도, 유사사업인 경우 동일사업으로 간주함
- ※ 신청자수 : 참여자 모집 공고 이후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인원수를 대략적으로 기입함.
- ※ 참여자수 : 2007년 8월말 기준 실인원(종료된 사업은 종료월을 기준으로 기입). 단 중도 탈락자가 발생하여 새로 총원된 경우 중도탈락자수는 포함시키지 않고, 중도 탈락자가 발생하였으나 총원되지 않은 경우에는 중도탈락자 수를 포함시킴. **인력파견형**은 인력풀 구성원 수를 기입함.

사업단명 ※ 종료된 사업을 포함하여 사업계획서 상에 올려져 있는 사업 모두 기입 ※ 관내 모든 사업이 아닌, 지자체가 직접 사업수행기관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업만 기입	1)사업유형	2) 최초 시행년도	3) 사업 목표량	4) 사업 신청자수	5) 참여자수	6)목표량 미달 사유 (※목표량 80% 미만사업에 한함)
	① 공익형 ② 교육형 ③ 복지형 ④ 시장형 ⑤ 인력파견형 ⑥ 통합형					① 예산이 지급되지 않음 ② 신청자 부족으로 참여자 모집 안됨 ③ 사업에 적합한 참여자를 발굴하지 못함 ④ 수요처 또는 수혜자를 발굴하지 못함 ⑤ 판로 미확보로 수익 저조 ⑥ 기타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2. 귀하의 사업운영방식에 관한 문항입니다. 사업단별로 각 업무의 주요 수행 주체를 선택하여 해당번호를 기입하여 주십시오.

※ 유형 특성상 해당되는 않는 업무단계는 공란으로 둘 것

※ 수요처 : 어르신들이 활동하고 있는 기관 및 시설

업무내용 사업단명	1)아이템 발굴 및 사업계획	2)참여자 모집	3)참여자 선정	4)참여자 교육	5)수요처,수혜자 발굴및판로확보	6)참여자 출결점검 포함 기타 사업진행 및 관리	7)급여지급	8)전산입력
	① 시군구 ② 읍면동 ③ 경로당 ④ 수요처 ⑤ 기타	① 시군구 ② 읍면동 ③ 경로당 ④ 수요처 ⑤ 기타	① 시군구 ② 읍면동 ③ 경로당 ④ 수요처 ⑤ 기타	① 시군구 ② 읍면동 ③ 경로당 ④ 수요처 ⑤ 기타	① 시군구 ② 읍면동 ③ 경로당 ④ 수요처 ⑤ 기타	① 시군구 ② 읍면동 ③ 경로당 ④ 수요처 ⑤ 기타	① 시군구 ② 읍면동 ③ 경로당 ④ 수요처 ⑤ 기타	① 시군구 ② 읍면동 ③ 경로당 ④ 수요처 ⑤ 기타



3. 다음은 참여자 모집 및 선정, 운영상 애로사항, 효과성 인식 등에 관한 문항입니다.

※ 사업 효과성 : 실무자가 인식하는 사업의 효과성으로, 공익·교육·복지형은 참여자 만족도를 제외한 수요처(수혜자) 및 지역사회의 반응만을 고려하여 기입하고, 시장형은 수익성과 참여자 만족도 모두, 인력파견형은 취업실적과 참여자 만족도 모두를 고려하여 기입함.

사업단명	1)참여자 모집방식	2)참여자 선정기준(택 2)		2)-1 소득수준파악방식	3)사업운영상애로사항	4)사업효과성	
	①시군구 홈페이지 ②시군구청 게시판 ③지역소식지/구정신문 ④관내 노인관련기관 및 단체에 모집안내 공문 ⑤현수막 ⑥방송매체(TV/라디오) ⑦설명회 ⑧기타 ※ 해당번호 모두 기입	①경제(소득)수준 (※ 2)-1로 가시오) ②자격증 유무 ③기준 참여자 우선 ④신규 참여자 우선 ⑤자원봉사경력 ⑥활동장소 접근성(교통편의) ⑦기타 ※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기준 두 가지를 우선순위로 기입하여 주십시오. ※ 건강 및 연령은 기본중요조건으로 고려하여 제외함			①재산세조회(의뢰) ②건강보험료조회(의뢰) ③국민연금조회(의뢰) ④자동차세조회(의뢰) ⑤신청서상에 기재한 소득수준 ⑥신청자 면담 ⑦기타 ※ 해당번호 모두 기입	①아이템 개발 ②참여자 모집 ③-1 적정 참여자 발굴 ③-2 참여자 선정 ④참여자 교육 ⑤수혜자 발굴 및 관리 ⑥수요처(관료) 확보 및 관리 ⑦참여자 관리 ⑧사업비 부족 ⑨행정 및 전산업무 ⑩교통문제(참여자 이동) ⑪기타	①매우 낮다 ②낮은 편이다 ③보통이다 ④높은 편이다 ⑤매우 높다 ※ 위의 기입요령 참고할 것.
		1순위	2순위		1순위	2순위	
		1순위	2순위		1순위	2순위	
		1순위	2순위		1순위	2순위	
		1순위	2순위		1순위	2순위	
		1순위	2순위		1순위	2순위	
		1순위	2순위		1순위	2순위	
		1순위	2순위		1순위	2순위	
		1순위	2순위		1순위	2순위	
		1순위	2순위		1순위	2순위	
		1순위	2순위		1순위	2순위	



Ⅲ. 유형별 현황

※ 2007년 사업 모두에 대해 **유형별로**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형 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는 생략합니다(‘06년 기 실시)**

① 공익형

1. 다음은 공익형 사업에 대한 문항입니다. 해당번호를 모두 기입해 주십시오.

	1) 주요 사업내용
사업단명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div style="width: 48%;">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거리, 도로변, 마을, 골목, 등의 환경관리 ② 산, 강, 하천, 계곡, 바다 등의 환경관리 ③ 학교주변 및 골목 순찰 ④ 노점상 정비 및 쓰레기 불법투기단속 ⑤ 공영주차장 관리 ⑥ 공원 및 놀이터 환경관리 ⑦ 공공기관 환경관리(학교, 도서관 등) ⑧ 공공기관 업무지원(학교, 도서관 등) ⑨ 교통질서 및 주차차 단속계도 ⑩ 지하철 이용질서 계도 </div> <div style="width: 48%;">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⑪ 보육(교육)시설 환경관리 및 급식보조 ⑫ 사회복지시설 환경관리(경로당 포함) ⑬ 문화재 및 문화시설 관리 ⑭ 재활용 ⑮ 산불예방 및 감시 ⑯ 기타(꽃길조성, 장묘조사, 지역조사, 방역, 소독 등) <p>※ 지역아동센터(방과 후 교실, 공부방)은 사회복지시설에 해당 ※ 해당번호 모두 기입 ※ 기타의 경우, 사업내용 구체적으로 기입할 것.</p> </div> </div>



3. 현재 수요처의 강사로 지급 관련 문항입니다. 해당번호와 개수를 기입하여 주십시오.

사업단명	1) 수요처 강사로 지급 추진 사항	1)-1 강사로 활용방식	1)-2 강사로 지급 수요처 개수																		
	①시기상조라 생각되어 수요처에 요청하지 않았다. ②비예산기간동안의 예산이 확보되어 수요처에 요청하지 않았다. ③수요처에 요청하였으나 확답을 듣지 못했다. ④비예산기간에만 받기로 하였다. ⑤현재 일정 금액을 수요처로부터 지급받고 있다 (※ 1)-1, 1)-2로 기시오) ⑥ 기타	①사업운영비로 활용 ②적립하여 비예산기간에 인건비로 지급 예정 ③해당 어르신 강사의 급여 보충 ④기타	※ 현재 강사로 또는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는 수요처의 개수를 기입해 주십시오.																		
			어린이 집	유치원	공부방 방과후 교실	지역 아동 센터	초등 학교	경로 대학	경로당	복지관 및 복지시설	숲	문화재 및 문화시설	기타								

※ 4번 문항은 해설사 사업관련 문항입니다. 해설사 사업단만 응답하여 주십시오.

4. 귀 사업단의 운영방식은 어떠하십니까? 해당번호에 모두 √표 하고 ①번 해당자의 경우, 총 의뢰건수를 기입하여 주십시오.

- ① 수요처로부터 해설의뢰 또는 요청을 받아 수요가 확보된 경우에 해설 제공함 : 총 의뢰·해설 건수 _____ 건
(2007년 사업시작 ~ 2007년 8월말 기준)
- ② 숲(수목원), 또는 문화(재) 시설 측과의 협약 및 계약 체결로 활동장소에 대기 하고 있다가 수요 발생시 해설 제공함
- ③ 활동장소측과 별도의 협약 없이 대기하고 있다가 수요 발생시 해설 제공함
- ④ 기타(구체적으로: _____)

③ 복지형

1. 다음은 복지형 사업 내용 및 제공 서비스에 관한 문항입니다.

- ※ 노인에 대한 일반적 수발과 함께 기타 서비스가 부가적으로 제공되는 경우에는 노노케어로 분류. 주력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와 간헐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를 구분하되, 여러 유형의 서비스가 동등하게 제공될 경우에는 모두 주력서비스로 기입함.
- ※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에 대한 수발은 시설노인 노노케어, 경로당의 프로그램 진행 지원 및 환경관리는 기타노인복지지원에 해당됨
- ※ 노인에 대한 일반적 수발 없는 단순 도시락 배달, 수혜기관의 단순 급식보조 및 건강 서비스 제공 등도 기타노인복지지원에 해당됨

사업단명	1) 주요 사업내용	* 분류예시	2) 제공 서비스				
		①재가노인 노노케어 ②시설노인 노노케어 (거주 및 이용 모두 포함) ③주거환경개선 ④기타노인복지지원 ⑤아동청소년보호 ⑥문화복지지원 ⑦기타 ※ 분류예시 참고	①재가노인 노노케어 : 1:1 재가방문을 통한 케어 ②시설거주/이용 노인 노노케어 : 병원 단기보호 또는 주간보호시설이나 경로당 내 거동 불편 노인의 케어 ④기타노인복지지원 :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도우미(침, 뜸, 안마 등), 무선페이징, 노인상담 및 확대예방, 복지관 및 경로당 등의 프로그램 이용지원, 도시락 배달 및 급식지원, 이미용 서비스, 장례 서비스, 장수복 제작 지원 등 ⑤아동청소년보호 : 재가 또는 시설에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일반아동 및 장애아 보육교육 지원 순찰 및 계도, 상담 멘토링 결식아동 지원 등 ⑥문화복지지원 : 실버악단 및 극단공연, 문화체험 지원 문화해설 및 문화재 관리 등 ⑦기타 : 장애인 지원, 해외이주여성 및 새터민 지원, 교통안전 지킴이 등	①단순 안전지킴이 활동 (안부전화 및 방문확인, 요구르트 배달) ②단순 도시락 배달 또는 급식보조 ③가사지원(청소, 세탁, 반찬 만들기 등) ④정서지원(말벗, 상담 등) ⑤위생지원(세면, 세발, 목욕 등) ⑥행정업무 지원 및 병원동행 ⑦치료지원(투약관리, 욕창방지, 재활치료 등) ⑧치매예방 서비스 ⑨취마 여가교육 지원 및 프로그램 진행 보조 ⑩도배, 장판 또는 보일러 등 주거환경 개선 ⑪문화공연 및 문화체험지원(아동극, 음악, 풍물 등) ⑫건강 서비스(쑥, 뜸, 침, 체조, 안마 등) ⑬무선페이징 관리 ⑭전문상담 및 멘토링 ⑮보육 및 교육 지원 ⑯순찰 및 계도 ⑰기타 (※ 해당번호 모두 기입)			
			주력서비스		부가서비스		
			주력서비스		부가서비스		
			주력서비스		부가서비스		
			주력서비스		부가서비스		
			주력서비스		부가서비스		



2. 다음은 복지형 사업의 수혜자 규모에 대한 문항입니다. 수혜자수 또는 수혜기관 수를 기입하여 주십시오.

※ 서비스 제공 단위에 따라 수혜자 수 또는 수혜기관 수를 적어주십시오. 기관으로 파견되는 경우에는 그 기관에서 케어하는 수혜자의 수가 아닌, 파견되는 기관수만 기입해 주십시오.

사업단명	1) 수혜자 수 (수혜가구 수)		2) 수혜기관 수										
	※ 2007년 8월말 기준으로 적어 주십시오.		경로당	요양원	주간/단기 보호시설	병원	어린이집	공부방 방과후교실	지역 아동센터	기타 복지시설	보건소	기타	
	실인원	연인원											
	실인원	연인원											
	실인원	연인원											
	실인원	연인원											
	실인원	연인원											
	실인원	연인원											
	실인원	연인원											
	실인원	연인원											

3. 귀 기관의 복지형 사업단에는 타 유형 성격의 사업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 타 유형 사업의 성격이란 **케어나 서비스 제공**이 아닌 사업 등을 의미함

- ① 예(☞ 3-1로 가시오) ② 아니오

3-1. 어떠한 내용의 사업을 함께 운영하고 계십니까?

- ① 환경관리(청소) ② 텃밭 가꾸기(영농)
 ③ 기타(구체적으로 :)

※ 4번 및 5번은 재가 노노케어 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단에 해당하는 문항입니다.

※ 4번은 재가 노노케어에 대한 문항입니다. 해당 사업단만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 현재 서비스를 제공받는 수혜자의 특성은 어떠합니까? 해당사항의 구성 비율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_____ %	차상위	_____ %	일반	_____ %	합계	100%
---------------	---------	-----	---------	----	---------	----	------

4-2. 수혜자 발굴 시에 동일 서비스를 중복으로 제공받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계십니까?

- ① 예 (☞4-2-1로 가시오) ② 아니오

4-2-1. 수혜자 선정 시에 동일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경우, 노노케어 수혜자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계십니까?

- ① 중복서비스 수혜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수혜자로 선정한다.
 ② 추가적인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혜자로 선정한다.
 ③ 전적으로 수혜 대상에서 제외시킨다.

4-3.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실시되는 노노케어 사업이 갖는 가장 큰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동년배를 통한 서비스 제공으로 정서적 안정 및 지지 도모
 ② 기존 대상자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양적 보충
 ③ 복지 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인 노인들에 대한 케어 제공
 ④ 없다.
 ⑤ 기타(구체적으로 : _____)



※ 5번은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대한 문항입니다. 해당 사업단만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 어떤 사업을 주력으로 하고 계십니까(택 2)?

- ① 도배장판 ② 지붕개량 ③ 보일러 ④ 형광등 교체
- ⑤ 방충망 교체 ⑥ 전기 ⑦ 벽체 ⑧ 기타

5-2. 귀 사업단은 부대경비 이외의 다른 재원으로 재료비를 충당하고 계십니까?

- ① 예(☞5-2-1로 가시오) ② 아니오

5-2-1. 어떠한 재원으로 충당하고 계십니까? 해당번호에 모두 √표하여 주십시오.

- ① 개발원(로또공익재단) 기금
- ② 일부 수혜가구에게 실비로 서비스 제공
- ③ 지자체 지원
- ④ 모법인 지원 또는 후원금
- ⑤ 기타 외부기금(구체적으로 : _____)
- ⑥ 기타(구체적으로 : _____)

5-3. 재료 운반 및 참여자 이동은 주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① 기관 차량 이용 ② 실무자 차량 이용 ③ 참여자 차량 이용
- ④ 자원봉사 차량 이용 ⑤ 기타(구체적으로 : _____)

4 인력파견형

1. 인력파견형 사업의 일반현황에 관한 문항입니다.

사업단명	1) 파견내용	2) 취업자수		3) 주요 사업운영 방식
		실인원	연인원	
	①주유원 ⑧주례사 ②시험감독관 ⑨농가인력지원 ③물품배달원 ⑩경비원 ④주차원 ⑪도우미(가사/간병/ ⑤세차원 베이비시터) ⑥무가지 배포원 ⑫건물청소/미화원 ⑦관리원 ⑬일반파견종합 (골프장, 정원 등) ⑭기타 ※ 해당번호 모두 기입	※ 한 번이라도 본 기 관을 통해 취직 또는 파 견된 노인 수 ※ 8월말 기준	※ 총 파견횟수 또는 재취업 횟수 ※ 8월말 기준	①취업알선 - 용역업체 연계 ②취업알선 - 기관 독자 ③인력파견 - 기관독자 ④인력파견 - 개발원 연계 ⑤기타 ※ 기관의 독자적 취업알선의 경우, 수요처를 직접 발굴하여 구직노인과 연결하는 방식 의미 ※ 인력파견은 특정 업종의 인력 풀을 구성 하여 교육 후 파견하며, 계속해서 회원관리가 이뤄지는 방식 의미
		___명	___명	
		___명	___명	
		___명	___명	
		___명	___명	
		___명	___명	

※ 일반파견종합은 단일 업종 특화 없이 도우미, 청소, 경비 등의 일반 인력파견을 종합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의미함

※ 연인원 기입 시, 파견형태 업종은 총 파견횟수를, 고용(취업)형태 업종은 재취업 건수를 기입함. 베이비시터 또는 간병사와 같이 1회성 파견이 아닌, 일정기간 파견이 지속되는 업종의 경우, 활동한 수요처를 기준으로 기입함

예) 한 명의 어르신이 두 가정에 1주씩 파견되어 베이비시터 활동을 하였다면, 실인원은 1명, 연인원은 2명으로 기입



(인력파견형 문항 계속)

사업단명	4) 사후관리 실시여부	4)-1 사후관리방식	4)-2 사후관리 주기			
	① 실시한다 (☞ 4)-1, 2 로 가시오) ② 실시하지 않는다 ※ 재취업 의뢰로 찾는 경우는 사후관리에 해당 안됨	① 수요처(업체) 방문 ② 수요처에 전화 ③ 참여자에게 전화 ④ 기타 ※ 해당번호 모두 기입	수요처 방문	수요처에 전화	참여자에게 전화	기타
			① 월1회 ② 월2회 ③ 년1회 ④ 년2회 ⑤ 년4회 ⑥ 기 타	① 월1회 ② 월2회 ③ 년1회 ④ 년2회 ⑤ 년4회 ⑥ 기 타	① 월1회 ② 월2회 ③ 년1회 ④ 년2회 ⑤ 년4회 ⑥ 기 타	① 월1회 ② 월2회 ③ 년1회 ④ 년2회 ⑤ 년4회 ⑥ 기 타

VI. 기타

1. 2007년 사업종료 이후의 사업지속 여부 계획 및 사업량 증감 희망 여부에 대한 문항입니다. 연장방식의 경우, 해당번호를 모두 기입하여 주시고 희망 사업량은 현재의 사업수행여건을 기준으로 기입하여 주십시오.

사업단명	1) 사업연장 계획여부	1)-1 연장방식	2) 사업량 증감 희망여부	2)-1 희망사업량	2)-2 사업량 축소 및 사업중단 희망 이유(택1)
	①있다 (☞ 1)-1로 가시오) ②없다 ※ 중도탈락자 발생으로 사업 종료가 지연되 는 경우는 제 외함	①무급 자원봉사로 연속 참여 ②비예산 기간에 수요처에서 임금 지급 ③비예산 기간에 발생하는 매출로 임금 지급(시장형) ④현재 수요처에서 지급해 주는 강사료(인건비)를 적립해 두고 있음 ⑤사업 매출 및 인건비 예산의 일부를 적립해 두고 있음 ⑥기관자체 예산 또는 외부기금으로 인건비 지원하기로 함 ⑦지자체에서 별도 예산 지원 하기로 함 ⑧기타 ※ 해당번호 모두 기입	①현재 사업량 적정함 ②사업량 증가 원함 (☞2)-1로 가시오) ③사업량 축소 원함 (☞2)-1, 2)-2로 가시오) ④사업중단을 원함 (☞2)-2로 가시오)	※ 사업량 증가 또는 축소를 원하는 사업단만 기입함	①지역여건상 사업운영 어려움 ②지원예산(사업비) 부족으로 사업운영 어려움 ③실무자의 업무과중 ④지역사회에 불필요한 사업이라서(지역사회 기여도 낮음) ⑤기관 고유사업에 충실하기 위해서 ⑥기타 (구체적으로:)
				— HO	
				— HO	
				— HO	
				— HO	
				— HO	
				— HO	
				— HO	
				— HO	
				— HO	
				— HO	



2. 노인일자리사업과 관련하여, 개발원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교육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		2순위	
-----	--	-----	--

- ①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소양 및 직무교육
- ②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실무자 직무능력개발교육
- ③ 노인 인적자원 개발 교육
- ④ 노년기 준비 교육
- ⑤ 기타

3.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교육을 추진하면서 가장 지원을 필요로 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 ① 교육내용 기획(교육 커리큘럼 구성)
- ② 전문 외부강사 섭외(강사풀 지원)
- ③ 교육장 등 교육환경 확보
- ④ 지역별 통합교육체계 마련
- ⑤ 교육예산 증액
- ⑥ 기타

4. 노인일자리사업 전반(또는 유형별 사업)에 대한 개선방안 및 지원요구사항이 있으시면 적어 주십시오.

※ 긴 시간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록 2.
노인일자리사업 유형별 실태조사
설문지(민간 수행기관용)



소재지		기관명	
작성책임자		직 위	
		연락처	
작성책임자 노인일자리사업 종사기간(8월말 기준)		()년 ()개월	

I. 기관 및 인력현황

1. 현재 귀 기관의 전체 업무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이 실제 차지하는 업무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노인일자리사업에 투입되는 인력 또는 시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략적으로 기입하여 주십시오.

※ 노인일자리사업은 참여자의 인건비가 정부예산으로 지급되는 예산사업에 한합니다.

	%
--	---

2. 귀 기관은 어떠한 방식으로 예산을 교부받고 계십니까?

- | | |
|----------------|----------|
| ① 년초에 일괄 교부 | ② 반기별 교부 |
| ③ 분기별 교부 | ④ 월별 교부 |
| ⑤ 비정기적으로 교부 | |
| ⑥ 기타(구체적으로 :) | |

3. 현재 귀 기관은 모법인 또는 지자체로부터 추가적으로 어떤 지원을 받고 계십니까? 해당사항에 모두 √표해 주십시오.

※ 사업비 지원 : 일자리사업 예산 이외에 추가로 지원되는 인건비, 자재 구입비, 교육비 등

※ 교육지원 : 강사진 제공, 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

지원내용	주체	모법인	지자체
① 사업비 지원			
② 사무실 또는 작업장 무상임대			
③ 수요처 또는 판로 확보 협조			
④ 교육지원			
⑤ 기타 (구체적으로 :)			
⑥ 지원없음			



4. 현재 노인일자리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복지부 이외의 타 부처 일자리사업 또는 외부기금을 활용하고 계십니까?

- ① 예(☑ 4-1로 가시오) ② 아니오

4-1. 지원인력 또는 예산의 출처와 현재 도움을 받고 있는 노인일자리사업명, 그리고 지원액 또는 지원 인원수를 있는 대로 모두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일자리사업 수행을 위한 지자체의 예산 지원 또는 지자체의 추가 지원은 제외

- * 노인일자리사업명 : 현재 예산 또는 인력이 투입되는 노인일자리사업명
- * 지원처 : 예산 또는 인력을 지원하는 기관 및 사업
- * 지원액(인원) : 예산지원인 경우에는 금액을, 인력을 지원하는 타 부처의 일자리 관련 사업인 경우, 지원인원 명수를 기입

예시)

노인일자리사업명	지원처	지원액(인원)	지원금 활용처
실버 택배사업단	노동부사회적일자리사업	10명	사업인력지원
가사간병사업단	사회복지공동모금회	2,000,000원	교육비

노인일자리사업명	지원처	지원액(인원)	지원금 활용처

5. 귀 기관이 소재하는 지역은 지자체 및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또는 유관 기관들과의 협의체계를 갖추고 계십니까?

① 노인일자리사업 지역협의체가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 5-1, 5-2로 가시오)

② 노인일자리사업 지역협의체는 구성되지 않았으나, 지자체 및 관련 기관들과의 간담회 형식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 5-1, 5-2로 가시오)

③ 노인일자리 지역협의체가 별도로 구성되지 않았으나, 지역복지 협의체 내에서 지자체 및 관련 기관들이 노인일자리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 5-1, 5-2로 가시오)

④ 노인일자리사업 지역협의체가 구성되었으나, 운영되지 않고 있다.

⑤ 협의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다.

5-1. 협의 구조의 개최 방식은 어떠하십니까?

①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② 현안 발생 시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 ①, ②번 모두 해당

5-2. 귀 지역에서는 노인일자리사업과 관련하여 협의체 또는 간담회가 올해 8월말 기준으로(2007년 1월~2007년 8월말 까지) 총 몇 회 개최 되었습니까? _____ 회



※ 다음은 기관별 인력운용현황에 관한 문항입니다. 해당기관 질문에 응답하신 후, II. 사업일반현황 질문에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니어클럽만 응답해 주십시오.

6. 기관 고유사업 및 노인일자리사업 인력현황에 관한 문항입니다. 직원별로 직위 및 업무분야 해당번호를 기입한 후, 담당 사업단 수를 기입하여 주십시오.

※ 두 명의 기관 직원이 한 사업단의 업무를 비교적 동등하게(업무량 기준) 수행하는 경우에는 각 0.5개로 기입함.

※ 수행기관 전담인력은 사업 전담자인 경우를 제외하면 모두 업무보조로 표기함.

	1) 직위 ① 관장 ② 실장 ③ 실무자(팀장 포함) ④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전담인력	2) 업무분야 ① 사업총괄지원 ② 사업단 담당 (※ 2-1로 기함) ③ 업무보조 ④ 행정 및 회계	2-1 담당 사업단 수						
			유형 영역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시장형	인력 파견형	통합형
직원 A			고유사업	__개	__개	__개	__개	__개	__개
			노인일자리	__개	__개	__개	__개	__개	__개
직원 B			고유사업	__개	__개	__개	__개	__개	__개
			노인일자리	__개	__개	__개	__개	__개	__개
직원 C			고유사업	__개	__개	__개	__개	__개	__개
			노인일자리	__개	__개	__개	__개	__개	__개
직원 D			고유사업	__개	__개	__개	__개	__개	__개
			노인일자리	__개	__개	__개	__개	__개	__개
직원 E			고유사업	__개	__개	__개	__개	__개	__개
			노인일자리	__개	__개	__개	__개	__개	__개
직원 F			고유사업	__개	__개	__개	__개	__개	__개
			노인일자리	__개	__개	__개	__개	__개	__개
직원 G			고유사업	__개	__개	__개	__개	__개	__개
			노인일자리	__개	__개	__개	__개	__개	__개
직원 H			고유사업	__개	__개	__개	__개	__개	__개
			노인일자리	__개	__개	__개	__개	__개	__개
직원 I			고유사업	__개	__개	__개	__개	__개	__개
			노인일자리	__개	__개	__개	__개	__개	__개
직원 J			고유사업	__개	__개	__개	__개	__개	__개
			노인일자리	__개	__개	__개	__개	__개	__개
직원 K			고유사업	__개	__개	__개	__개	__개	__개
			노인일자리	__개	__개	__개	__개	__개	__개
사업단 총 개수			고유사업	__개	__개	__개	__개	__개	__개
			노인일자리	__개	__개	__개	__개	__개	__개

☞ II. 사업일반 현황 문항으로 가 주십시오.

◎ 노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만 응답해 주십시오.

6. 현재 노인일자리사업은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고 계십니까?

노인일자리사업 담당부서명	
------------------	--

7. 귀 기관은 노인일자리사업 운영과 관련하여(취업, 교육, 수혜자 및 수요처 발굴 및 관리 등) 기관 내 타 부서와 연계하고 계십니까?

※ 가정봉사원파견센터 및 주간·단기보호시설을 복지관 내에서 함께 운영하고 있는 경우, 기관 내 부서로 간주함

- ① 예(☞ 7-1로 가시오) ② 아니오

7-1. 어느 부서와 연계하고 계십니까?

노인일자리사업 연계부서명	
------------------	--

8. 노인일자리사업 담당 실무자에 관한 문항입니다. 인력형태 및 업무분야의 해당번호를 기입하고, 사업단 담당인 경우, 담당 사업단 수를 기입해 주십시오.

- ※ 노인일자리사업 전담직원은 타 업무 겸직 아닌, 정부예산 지원 노인일자리사업만 전담하는 직원을 의미함.
- ※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전담인력을 제외한 기관 직원은 실제 사업단을 담당하는 경우만 포함할 것(타 팀 인력 중 부서 간 업무협조 차원에서 일자리사업을 일부 보조하는 경우는 제외)
- ※ 두 명의 기관 직원이 한 사업단의 업무를 동등하게(업무량 기준) 수행하는 경우에는 각 0.5개로 기입함.
- ※ 수행기관 전담인력은 사업단 전담자인 경우를 제외하면 모두 업무보조로 표기함.

	1) 인력형태 ① 노인일자리사업 전담 직원 ② 타 업무 겸직, 노인일자리사업 담당 직원 ③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전담인력	2) 업무분야 ① 사업단 담당 (☞ 2-1로 가시오) ② 업무보조	2-1 담당 사업단 수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시장형	인력 파견형	통합형	
직원 A			__개	__개	__개	__개	__개	__개	
직원 B			__개	__개	__개	__개	__개	__개	
직원 C			__개	__개	__개	__개	__개	__개	
직원 D			__개	__개	__개	__개	__개	__개	
직원 E			__개	__개	__개	__개	__개	__개	
직원 F			__개	__개	__개	__개	__개	__개	
직원 G			__개	__개	__개	__개	__개	__개	
직원 H			__개	__개	__개	__개	__개	__개	
직원 I			__개	__개	__개	__개	__개	__개	

☞ II. 사업일반 현황 문항으로 가 주십시오.



◎ 노인복지센터(가정봉사원파견센터, 주간 및 단기 보호시설)만 응답해 주십시오.

6. 귀 기관이 실시하는 재가노인복지업무에 대한 문항입니다. 운영여부에 따라 해당번호를 기입해 주십시오.

운영여부	사업내용	가정봉사원파견사업	주간보호사업	단기보호사업
	① 예 ② 아니오			
① 예 ② 아니오				

7. 노인일자리사업 담당 실무자에 관한 문항입니다. 인력형태 및 업무분야의 해당 번호를 기입하고, 사업단 담당인 경우, 담당 사업단 수를 기입해 주십시오.

- ※ 노인일자리사업 전담직원은 타 업무 겸직 아닌, 정부예산 지원 노인일자리사업만 전담하는 직원을 의미함.
- ※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전담인력을 제외한 기관 직원은 실제 사업단을 담당하는 경우만 포함할 것(타 팀 인력 중 부서 간 업무협조 차원에서 일자리사업을 일부 보조하는 경우는 제외)
- ※ 두 명의 기관 직원이 한 사업단의 업무를 동등하게(업무량 기준) 수행하는 경우에는 각 0.5개로 기입함.
- ※ 수행기관 전담인력은 사업 전담자인 경우를 제외하면 모두 업무보조로 표기함.

	1) 인력형태	2) 업무분야	2)-1 담당 사업단 수					
	① 노인일자리사업 전담 직원 ② 타 업무 겸직, 노인일자리사업 담당 직원 ③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전담인력	① 사업단 담당 (☞ 2-1로 기재) ② 업무보조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시장형	인력 파견형	통합형
			___개	___개	___개	___개	___개	___개
직원 A			___개	___개	___개	___개	___개	___개
직원 B			___개	___개	___개	___개	___개	___개
직원 C			___개	___개	___개	___개	___개	___개
직원 D			___개	___개	___개	___개	___개	___개
직원 E			___개	___개	___개	___개	___개	___개
직원 F			___개	___개	___개	___개	___개	___개
직원 G			___개	___개	___개	___개	___개	___개
직원 H			___개	___개	___개	___개	___개	___개
직원 I			___개	___개	___개	___개	___개	___개

☞ II. 사업일반 현황 문항으로 가 주십시오.

◎ 대한노인회 및 기타 기관들만 응답해 주십시오.

6. 노인일자리사업 담당 실무자에 관한 문항입니다. 직원별 인력형태 및 업무 분야의 해당번호를 기입하고, 사업단 담당인 경우, 담당 사업단 수를 기입해 주십시오.

- ※ 노인일자리사업 전담직원은 타 업무 겸직 아닌, 정부예산 지원 노인일자리사업만 전담하는 직원을 의미함.
- ※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전담인력을 제외한 기관 직원은 실제 사업단을 담당하는 경우만 포함할 것(타 팀 인력 중 부서 간 업무협조 차원에서 일자리사업을 일부 보조하는 경우는 제외)
- ※ 두 명의 기관 직원이 한 사업단의 업무를 동등하게(업무량 기준) 수행하는 경우에는 각 0.5개로 기입함.
- ※ 수행기관 전담인력은 사업 전담자인 경우를 제외하면 모두 업무보조로 표기함.

	1) 인력형태	2) 업무분야	2)-1 담당 사업단 수					
	① 노인일자리사업 전담 직원 ② 타 업무 겸직, 노인일자리사업 담당 직원 ③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전담인력	① 사업단 담당 (☞ 2-1로 기입) ② 업무보조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시장형	인력 파견형	통합형
직원 A			__개	__개	__개	__개	__개	__개
직원 B			__개	__개	__개	__개	__개	__개
직원 C			__개	__개	__개	__개	__개	__개
직원 D			__개	__개	__개	__개	__개	__개
직원 E			__개	__개	__개	__개	__개	__개
직원 F			__개	__개	__개	__개	__개	__개
직원 G			__개	__개	__개	__개	__개	__개
직원 H			__개	__개	__개	__개	__개	__개
직원 I			__개	__개	__개	__개	__개	__개

☞ II. 사업일반 현황 문항으로 가 주십시오.



II. 사업일반 현황

1. 사업일반에 관한 문항입니다. 2007년 노인일자리사업을 모두 적고 해당 질문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 ※ 최초 시행년도 : 사업이 최초로 시행된 년도. 사업명과 내용이 일부 변경되었어도, 유사사업인 경우 동일사업으로 간주함. 시니어클럽은 고유사업이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전환된 경우, 고유사업으로 시행된 최초 시행년도 기입할 것.
- ※ 신청자수 : 참여자 모집 공고 이후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인원수를 대략적으로 기입함.
- ※ 참여자수 : 2007년 8월말 기준 실인원(종료된 사업은 종료월을 기준으로 기입). 단 중도탈락자가 발생하여 새로 총원된 경우, 중도탈락자수는 포함시키지 않고, 중도탈락자가 발생하였으나 총원되지 않은 경우에는 중도탈락자 수를 포함시킴. 인력파견형은 인력풀 구성원 수를 기입함.

사업단명 ※ 종료된 사업을 포함하여 사업계획서상에 올려져 있는 사업 모두 기입	1)사업유형	2) 최초 시행년도	3) 사업 목표량	4) 사업 신청자수	5) 참여자수	6)목표량 미달 사유 (※목표량 80% 미만사업에 한함)
	①공익형 ②교육형 ③복지형 ④시장형 ⑤인력파견형 ⑥통합형	※ 시니어클럽은 위의 기입 방식 참고				①예산이 지급되지 않음 ②신청자 부족으로 참여자 모집 안됨 ③사업에 적합한 참여자를 발굴하지 못함 ④수요처 또는 수혜자를 발굴하지 못함 ⑤판로 미확보로 수익 저조 ⑥기타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2. 다음은 참여자 모집 및 선정, 운영상 애로사항, 효과성 인식 등에 관한 문항입니다.

※ 사업 효과성 : 실무자가 인식하는 사업의 효과성으로, 공익·교육·복지형은 참여자 만족도를 제외한 수요처(수혜자) 및 지역사회의 반응만을 고려하여 기입하고, 시장형은 수익성과 참여자 만족도 모두, 인력파견형은 취업실적과 참여자 만족도 모두를 고려하여 기입함.

사업단명	1) 참여자 모집방식	2) 참여자 선정기준 (택 2)			2)-1 소득수준 파악방식	3) 사업운영상 애로사항			4)사업 효과성	
	①시군구 홈페이지 ②시군구청 게시판 ③지역소식지/구정신문 ④관내 노인관련기관 및 단체에 모집안내 공문 ⑤현수막 ⑥방송매체(TV/라디오) ⑦설명회 ⑧기타 ※ 해당번호 모두 기입	①경제(소득)수준 (※ 2)-1로 가시오) ②자격증 유무 ③기존 참여자 우선 ④신규 참여자 우선 ⑤자원봉사경력 ⑥활동장소 접근성(교통편의) ⑦기타 ※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기준 두 가지를 우선순위로 기입하여 주십시오. ※ 건강 및 연령은 기본충족 요건으로 고려하여 제외함				①재산세 조회(의뢰) ②건강보험료 조회(의뢰) ③국민연금 조회(의뢰) ④자동차세 조회(의뢰) ⑤신청서상에 기재한 소득수준 ⑥신청자 면담 ⑦기타 ※ 해당번호 모두 기입	①아이템 개발 ②참여자 모집 ③-1 적정 참여자 발굴 ③-2 참여자 선정 ④참여자 교육 ⑤수혜자 발굴 및 관리 ⑥수요처(판로) 확보 및 관리 ⑦참여자 관리 ⑧사업비 부족 ⑨행정 및 전산업무 ⑩교통문제(참여자 이동) ⑪기타	①매우 낮다 ②낮은 편이다 ③보통이다 ④높은 편이다 ⑤매우 높다 ※ 위의 기입요령 참고할 것.		
		1순위	2순위			1순위	2순위			
		1순위	2순위			1순위	2순위			
		1순위	2순위			1순위	2순위			
		1순위	2순위			1순위	2순위			
		1순위	2순위			1순위	2순위			
		1순위	2순위			1순위	2순위			
		1순위	2순위			1순위	2순위			
		1순위	2순위			1순위	2순위			
		1순위	2순위			1순위	2순위			



3. 다음은 사업의 지속성에 관한 문항입니다. 2006년에도 동 사업을 실시했었던 2년차 이상 사업단에 대해서만 기입해 주십시오.

3)-1. 2년차 이상 사업단 중, 2006년 노인일자리사업 예산 종료 이후 추가적으로 기간을 연장하여 운영한 사업단이 있습니까?

※ 중도탈락자 발생으로 사업종료가 지연되어, 기본개월 이상으로 연장되는 경우는 제외함

① 예(☑ 3)-2로 가시오) ② 아니오

3)-2. 2006년 사업 종료 후 ~ 2007년 사업시작 이전까지의 운영현황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 인력파견형은 제외하며, 시장형 사업은 5개월 진행 이후부터를 연장 개월 수로 계산하여 기입함

※ 사업연장 개월 수 : 사업운영 개월 수가 아닌, 연장된 개월 수를 기입함. 연장방식 또는 참여자별로 참여개월이 다양한 경우 사업단의 전체적인 운영 개월 수를 기입함

예시) 자원봉사료 1개월, 수요처 인건비로 1개월 연장했다면, 사업연장 개월 수는 2개월

※ 비예산기간은 2006년 사업종료 이후~2007년 사업 시작 이전까지의 기간을 의미함

사업단명	1) 사업연장 개월수	2) 사업연장방식	2006년 예산기간 참여인원 (월평균)	2006년 비예산기간 참여인원 (월평균)
		① 무급 자원봉사 ② 수요처에서 강사료(또는 임금) 지급 ③ 지자체에서 별도 예산 지원 ④ 사업매출로 인건비 지급 ⑤ 사업매출, 수요처 강사료, 인건비 예산 등을 적립하여 비예산기간에 지급 ⑥ 기타 ※ 해당사항 모두 기입		
	___개월		___명	___명
	___개월		___명	___명
	___개월		___명	___명
	___개월		___명	___명
	___개월		___명	___명
	___개월		___명	___명
	___개월		___명	___명

4. 2007년 사업종료 이후의 사업지속 여부 계획 및 사업량 증감 희망 여부에 대한 문항입니다. 연장방식의 경우, 해당번호를 모두 기입하여 주시고, 희망 사업량은 현재의 사업수행여건을 기준으로 기입하여 주십시오.

사업단명	1) 사업연장 계획여부	1)-1 연장방식	2) 사업량 증감 희망여부	2)-1 희망사업량	2)-2 사업량 축소 및 사업중단 희망 이유(택1)
	①있다 (※ 1)-1로 가시오) ②없다 ※ 중도탈락자 발생으로 사업 종료가 지연되는 경우는 제외함	①무급 자원봉사로 연속 참여 ②비예산 기간에 수요처에서 임금 지급 ③비예산 기간에 발생하는 매출로 임금 지급시 ④현재 수요처에서 지급해 주는 강사료(인건비)를 적립해 두고 있음 ⑤사업 매출 및 인건비 예산의 일부를 적립해 두고 있음 ⑥기관차체 예산 또는 외부기금으로 인건비 지원하기로 함 ⑦자자체에서 별도 예산 지원하기로 함 ⑧기타	①현재 사업량 적정함 ②사업량 증가 원함 (※ 2)-1로 가시오) ③사업량 축소 원함 (※ 2)-1, 2)-2로 가시오) ④사업중단을 원함 (※ 2)-2로 가시오)	※ 사업량 증가 또는 축소를 원하는 사업단만 기입함	①지역여건상 사업운영 어려움 ②자원예산(사업비) 부족으로 사업운영 어려움 ③실무자의 업무과중 ④지역사회에 불필요한 사업이라서 (지역사회 기여도 낮음) ⑤기관 고유사업에 충실하기 위해서 ⑥기타 (구체적으로 :)
				— 0명	
				— 0명	
				— 0명	
				— 0명	
				— 0명	
				— 0명	
				— 0명	
				— 0명	
				— 0명	
				— 0명	
				— 0명	
				— 0명	
				— 0명	
				— 0명	
				— 0명	
				— 0명	
				— 0명	



Ⅲ. 유형별 현황

※ 2007년 사업 모두에 대해 유형별로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형 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는 생략합니다('06년 기 실시)

① 공익형

1. 다음은 공익형 사업에 관한 문항입니다. 해당번호를 모두 기입하여 주십시오.

사업단명	1) 주요 사업내용	2) 사업관리 방식	
	①거리, 도로변, 마을, 골목, 등의 환경관리 ②산, 강, 하천, 계곡, 바다 등의 환경관리 ③학교주변 및 골목 순찰 ④노점상 정비 및 쓰레기 불법투기단속 ⑤공영주차장 관리 ⑥공원 및 놀이터 환경관리 ⑦공공기관 환경관리(학교, 도서관 등) ⑧공공기관 업무지원(학교, 도서관 등) ⑨교통질서 및 주정차 단속계도 ⑩지하철 이용질서 계도	⑪보육(교육)시설 환경관리 및 급식보조 ⑫사회복지시설 환경관리(경로당 포함) ⑬문화재 및 문화시설 관리 ⑭재활용 ⑮산불예방 및 감시 ⑯기타(꽃길조성, 장묘조사, 지역조사, 방역, 소독 등) ※ 지역아동센터(방과 후 교실, 공부방)은 사회복지시설에 해당 ※ 해당번호 모두 기입 ※ 기타의 경우, 사업내용 구체적으로 기입할 것	①담당 실무자의 조회 (또는 종례) ②참여자 활동일지 점검 ③활동장소(수요처) 담당 자에게 일임 ④사업단 내 팀장 ⑤현장방문 ⑥기타 ※ 해당번호 모두 기입

2. 노인일자리 공익형 사업의 발전을 위해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나 지원요구 사항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2 교육형

1. 다음은 교육형 사업의 일반현황에 관한 항목입니다. 해당번호와 개수를 적어주십시오.

※ 해설사 사업의 수요처 기입 시, 숲(수목원) 또는 문화재(시설) 등은 시설 측과 협약 또는 계약이 체결된 경우만 수요처로 인정함

사업단명	1) 주요 사업내용	2) 서비스 대상	3) 파견 수요처 및 개수										
		①전문해설제공(해설사) ②학습지도(한글, 한문, 영어, 독서 등) ③전통문화 및 예절지도 ④여가활동 및 건강활동 지도 ⑤ 홍보활동 ⑥ 동화구연 및 아동극 ⑦ 기타 ※ 해당번호 모두 기입	①아동 ②노인 ③청소년 ④장애인 ⑤기타 소외계층 (해외)주여성, 새터민 등) ⑥일반인 ※ 해당번호 모두 기입	※ 어른신이 파견되고 있는 수요처에 관한 문항입니다. 해당 수요기관의 개수를 적어 주십시오.									
			어린이 집	유치원	지역 아동 센터	공부방 방과후 교실	초등학교	경로 대학	경로당	복지관 및 복지시설	숲	문화재 및 문화시설	기타

2. 귀 기관의 교육형 사업단에 타 유형 성격의 사업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 타 유형 사업의 성격이란 강의 및 해설이 아닌 사업을 의미함

① 예(☞ 2-1로 가시오)

② 아니오

2-1. 어떠한 내용의 사업을 함께 운영하고 계십니까?

① 환경관리(청소)

② 업무지원(급식보조 등)

③ 텃밭 가꾸기(영농)

④ 기타(구체적으로 :



3. 현재 수요처의 강사로 지급 관련 문항입니다. 해당번호와 개수를 기입하여 주십시오.

사업단명	1) 수요처 강사로 지급 추진 사항	1)-1 강사로 활용방식	1)-2 강사로 지급 수요처 개수										
	①시기상조라 생각되어 수요처에 요청하지 않았다. ②비예산기간동안의 예산이 확보 되어 수요처에 요청하지 않았다. ③수요처에 요청하였으나 응답을 듣지 못했다. ④비예산 기간에만 받기로 하였다. ⑤현재 일정 금액을 수요처로부터 지급받고 있다 (※ 1)-1, 1)-2로 가시오) ⑥기타	①사업운영비로 활용 ②적립하여 비예산 기간에 인건비로 지급 예정 ③해당 어르신 강사의 급여 보충 ④기타	※ 현재 강사로 또는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는 수요처의 개수를 기입해 주십시오.										
			어린이 집	유치원	지역 아동 센터	공부방 방과후 교실	초등학교	경로대학	경로당	복지관 및 복지시설	숲	문화재 및 문화시설	기타

※ 4번 문항은 해설사 사업관련 문항입니다. 해설사 이외 사업단은 5번 문항으로 가 주십시오.

4. 귀 사업단의 운영방식은 어떠하십니까? 해당번호에 모두 √표 하고 ①번 해당자의 경우, 총 의뢰건수를 기입하여 주십시오.

- ① 수요처로부터 해설의뢰 또는 요청을 받아 수요가 확보된 경우에 해설 제공함 : 총 의뢰해설 건수 _____ 건(2007년 사업시작 ~ 2007년 8월말 기준)
- ② 숲(수목원), 또는 문화(재) 시설 측과의 협약 및 계약 체결로 활동장소에 대기하고 있다가 수요 발생시 해설 제공함
- ③ 활동장소측과 별도의 협약 없이 대기하고 있다가 수요 발생시 해설 제공함
- ④ 기타(구체적으로 : _____)

5. 노인일자리 교육형 사업의 발전을 위해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나 지원요구 사항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③ 복지형

1. 현재 운영중인 복지형 사업 일반에 관한 문항입니다.

- ※ 노인에 대한 일반적 수발과 함께 기타 서비스가 부가적으로 제공되는 경우에는 노노케어로 분류 주력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와 간헐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를 구분하되, 여러 유형의 서비스가 동등하게 제공될 경우에는 모두 주력서비스로 기입함.
- ※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에 대한 수발은 시설노인 노노케어, 경로당의 프로그램 진행 지원 및 환경관리는 기타노인복지지원에 해당됨
- ※ 노인에 대한 일반적 수발 없는 단순 도시락 배달, 수혜기관의 단순 급식보조 및 건강서비스 제공 등도 기타노인복지지원에 해당됨

	1) 주요 사업내용	2) 제공 서비스		3) 수혜자 발굴 방식	4) 사업관리 방식
사업단명	①재가노인 노노케어 ②시설노인 노노케어 (거주 및 이용 모두 포함) ③주거환경개선 ④기타노인복지지원 ⑤아동청소년보호 ⑥문화복지지원 ⑦기타	①단순 안전지킴이 활동 (안부전화 및 방문확인, 요구르트 배달) ②단순 도시락 배달 또는 급식보조 ③가사지원(청소, 세탁, 반찬 만들기 등) ④정서지원(말벗, 상담 등) ⑤위생지원(세면, 세발, 목욕 등) ⑥행정업무 지원 및 병원동행 ⑦치료지원(투약관리, 욕창방지, 재활 치료 등) ⑧치매예방 서비스 ⑨취미·여가교육 지원 및 프로그램 진행 보조 ⑩도배, 장판 또는 보일러 등 주거환경 개선 ⑪문화공연 및 문화체험지원(아동극, 음악, 풍물 등) ⑫건강 서비스(숙, 뜸, 침, 체조, 안마 등) ⑬무선페이징 관리 ⑭전문상담 및 멘토링 ⑮보육 및 교육 지원 ⑯순찰 및 계도 ⑰기타		①기관 내 타 부서의 협조 ②읍면동 사무소의 협조 ③보건소 협조 ④지역 내 복지기관의 협조 ⑤지역민 추천 ⑥참여자가 직접 발굴 ⑦타(구체적으로:)	①담당 실무자의 조회 (또는 종례) ②참여자 활동일지 ③수혜자 관리카드 ④수혜자에게 전화, 또는 방문 ⑤사업단 내 팀장 ⑥수요기관 및 수혜기관 담당자 ⑦월례회의, 간담회 ⑧연계부서 또는 연계기관 시스템 활용(가정봉사원 또는 자활간병인력 등) ⑨기타 ※ 참여자 출결점검 포함 기타 사업진행 관리 전반에 관한 문항임
	※ 분류예시 참고	※ 해당번호 모두 기입		※ 해당번호 모두 기입	※ 해당번호 모두 기입
		주력서비스	부가서비스		
		주력서비스	부가서비스		
		주력서비스	부가서비스		



※ 분류예시

- ① 재가노인 노노케어 : 1:1 재가방문을 통한 케어
- ② 시설거주/이용 노인 노노케어 : 병원, 단기보호 또는 주간보호시설이나 경로당 내 거동 불편 노인의 케어
- ③ 기타노인복지지원 :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도우미(침, 뜸, 안마 등), 무선페이징, 노인 상담 및 학대예방, 복지관 및 경로당 등의 프로그램 이용지원, 도시락 배달 및 급식지원, 이미용 서비스, 장례 서비스, 장수복 제작 지원 등
- ④ 아동청소년보호 : 재가 또는 시설에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일반아동 및 장애아 보교육 지원, 순찰 및 계도, 상담, 멘토링, 결식아동 지원 등
- ⑤ 문화복지지원 : 실버악단 및 극단공연, 문화체험 지원, 문화해설 및 문화재 관리 등
- ⑦ 기타 : 장애인 지원, 해외이주여성 및 새터민 지원, 교통안전 지킴이 등

2. 현재 복지형 사업의 수혜자 규모에 대한 문항입니다. 수혜자수 또는 수혜기관 수를 기입하여 주십시오.

※ 서비스 제공 단위에 따라 수혜자 수 또는 수혜기관 수를 적어주십시오. 기관으로 파견되는 경우에는 그 기관에서 케어하는 수혜자의 수가 아닌, 파견되는 기관수만 기입해 주십시오.

사업단명	1) 수혜자수 (수혜가구 수)		2) 수혜기관 수									
	※ 2007년 8월말 기준으로 적어 주십시오.		경로당	요양원	주간/단기 보호시설	병원	어린이 집	공부방 방과후교실	지역 아동센터	기타 복지시설	보건소	기타
	실인원	연인원										
	실인원	연인원										
	실인원	연인원										
	실인원	연인원										
	실인원	연인원										
	실인원	연인원										



※ 4번은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대한 문항입니다. 해당 사업단만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 어떤 사업을 주력으로 하고 계십니까(택 2)?

- ① 도배장판 ② 지붕개량 ③ 보일러 ④ 형광등 교체
- ⑤ 방충망 교체 ⑥ 전기 ⑦ 벽체 ⑧ 기타

4-2. 귀 사업단은 부대경비 이외의 다른 재원으로 재료비를 충당하고 계십니까?

- ① 예(☞4-2-1로 가시오) ② 아니오

4-2-1. 어떠한 재원으로 충당하고 계십니까? 해당번호에 모두 √표하여 주십시오.

- ① 개발원(로또공익재단) 기금
- ② 일부 수혜가구에게 실비로 서비스 제공
- ③ 지자체 지원
- ④ 모법인 지원 또는 후원금
- ⑤ 기타 외부기금(구체적으로 : _____)
- ⑥ 기타(구체적으로 : _____)

4-3. 재료 운반 및 참여자 이동은 주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① 기관 차량 이용 ② 실무자 차량 이용 ③ 참여자 차량 이용
- ④ 자원봉사 차량 이용 ⑤ 기타(구체적으로 : _____)

5. 귀 기관의 복지형 사업단에는 타 유형 성격의 사업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 타 유형 사업의 성격이란 케어나 서비스 제공이 아닌 사업 등을 의미함

- ① 예(☑ 5-1로 가시오) ② 아니오

5-1. 어떠한 내용의 사업을 함께 운영하고 계십니까?

- ① 환경관리(청소) ② 텃밭 가꾸기(영농)
③ 기타(구체적으로 :)

6. 노인일자리 복지형 사업의 발전을 위해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나 지원요구 사항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5 인력파견형

1. 인력파견형 사업의 일반현황에 관한 문항입니다.

사업단명	1) 파견내용	2) 취업자수		3) 주요 사업운영 방식
		실인원	연인원	
	① 주유원 ⑨ 농가인력지원 ② 시험감독관 ⑩ 주례사 ③ 물품배달원 ⑪ 도우미 ④ 주차원 ⑫ 건물청소/미화원 ⑤ 세차원 ⑬ 일반파견종합 ⑥ 무가지 배포원 ⑭ 기타 ⑦ 관리원 (골프장, 정원 등) * 도우미 : 베이비시터, ⑧ 경비원 가사, 간병 * 해당번호 모두 기입	* 한 번이라도 본 기관을 통해 취직 또는 파견된 노인 수 * 8월말 기준	* 총 파견횟수 또는 재취업 횟수 * 8월말 기준	① 취업알선 - 용역업체 연계 ② 취업알선 - 기관 독자 ③ 인력파견 -기관독자 ④ 인력파견 - 개발원 연계 ⑤ 기타 * 기관의 독자적 취업알선의 경우, 수요처를 직접 발굴하여 구직노인과 연결하는 방식 의미 * 인력파견은 특정 업종의 인력풀을 구성하여 교육 후 파견하며, 계속해서 회원관리가 이뤄지는 방식 의미
		___명	___명	
		___명	___명	
		___명	___명	
		___명	___명	

* 일반파견종합은 단일 업종 특화 없이 도우미, 청소, 경비 등의 일반 인력파견을 종합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의미함

* 연인원 기입 시, 파견형태 업종은 총 파견횟수를, 고용(취업)형태 업종은 재취업 건수를 기입함. 베이비시터 또는 간병사와 같이 1회성 파견이 아닌, 일정기간 파견이 지속되는 업종의 경우, 활동한 수요처를 기준으로 기입함.

예) 한 명의 어르신이 두 가정에 1주씩 파견되어 베이비시터 활동을 하였다면, 실인원은 1명, 연인원은 2명으로 기입.

(인력파견형 문항 계속)

사업단명	4) 사후관리 실시여부	4)-1 사후관리방식	4)-2 사후관리 주기			
	① 실시한다 (※ 4-1, 2 로 가시오) ② 실시하지 않는다 ※ 재취업 의뢰로 찾는 경우는 사후관리에 해당 안됨	① 수요처(업체) 방문 ② 수요처에 전화 ③ 참여자에게 전화 ④ 기타 ※ 해당번호 모두 기입	수요처 방문	수요처에 전화	참여자에게 전화	기타
			① 월1회 ② 월2회 ③ 년1회 ④ 년2회 ⑤ 년4회 ⑥ 기타	① 월1회 ② 월2회 ③ 년1회 ④ 년2회 ⑤ 년4회 ⑥ 기타	① 월1회 ② 월2회 ③ 년1회 ④ 년2회 ⑤ 년4회 ⑥ 기타	① 월1회 ② 월2회 ③ 년1회 ④ 년2회 ⑤ 년4회 ⑥ 기타



VI. 기타

1. 귀하는 노인일자리사업의 필요성을 어느 정도로 인식하고 계십니까?

- ① 매우 낮다 ② 낮은 편이다 ③ 보통이다
- ④ 높은 편이다 ⑤ 매우 높다

2. 귀 기관은 2007년 사업유형별 사업량을 어떤 방식으로 결정하셨습니다?

- ① 시군구의 일자리사업 담당 공무원 및 사업수행기관 실무자의 회의를 통해 결정
- ② 해당기관이 원하는 유형별 사업량을 시군구에 제출한 뒤 조정작업 거쳐 결정 (☞2-1로 가시오)
- ③ 시군구에서 각 수행기관별 전년도 사업량을 참조하여 임의대로 사업량 선 배정한 뒤 조정작업 거쳐 결정(☞2-1로 가시오)
- ④ 기타(구체적으로 : _____)
- ⑤ 당시 담당 실무자의 이직 또는 인사이동으로 알 수 없음

2-1. 귀 기관은 조정 결과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3. 노인일자리사업과 관련하여, 개발원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교육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		2순위	
-----	--	-----	--

- ①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소양 및 직무교육
- ②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실무자 직무능력개발교육
- ③ 노인 인적자원 개발 교육
- ④ 노년기 준비 교육
- ⑤ 기타

4.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교육을 추진하면서 가장 지원을 필요로 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 ① 교육내용 기획(교육 커리큘럼 구성)
 - ② 전문 외부강사 섭외(강사풀 지원)
 - ③ 교육장 등 교육환경 확보
 - ④ 지역별 통합교육체계 마련
 - ⑤ 교육예산 증액
 - ⑥ 기타
5. 귀하가 판단하시기에 귀 기관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의(기초 지자체) 특성은 어떠합니까?
- ① 도시지역 ② 도시중심 도농복합지역
 - ③ 농어촌중심 도농복합지역 ④ 농어촌 지역
6. 노인일자리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귀 지역의 지역특성이 갖는 장단점을 적어 주십시오.

장점	
단점	

※ 긴 시간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